

월간
재정포럼 1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7년 11월호 제137호

- 현안분석** • 소득분배 및 재분배 구조/ 성명재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전병목
- 특집** • 제도설계이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 정책흐름**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외
-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권두칼럼</p>	<p>02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 · 유일호</p>
<p>현안분석</p>	<p>06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성명재 23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 김승래 51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 전병목</p>
<p>특집</p>	<p>70 제도설계이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 김 진</p>
<p>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p>	<p>74 美-EU, 에탄올 면세 브라질案 거부</p>
<p>정책흐름</p>	<p>86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89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91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97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확대로 지난 5년간 세부담 변화 미미 100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발굴 103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105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106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108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p>
<p>재정통계</p>	<p>11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외</p>
<p>이런의견 저런생각</p>	<p>123 국민연금 은 세금이 아니다 외</p>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8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의 의미는 경제시스템을 아무리 변형시켜 보아도 그 사회(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그 사회의 상위 20% 그룹이고 나머지 80%는 그저 따라가게 된다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파레토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근래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제시되곤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 특히 세계화가 진척되면 이런 경향이 고착되어 소수의 잘 사는 계층과 다수의 못 사는 계층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다시 말해 세계화는 반드시 소득 분배의 악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자들의 거대한 음모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매우 중요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근거는 대단히 미약하다.

사실 세계화의 직접적 효과인지 또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 또는 ‘신경제’의 효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선진국과 신흥발전국들에서 소득분배의 악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를 계측하는 계수들의 변화는 예외 없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양극화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양극화는 아니고 소득분배의 악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분명한 것은 인류 전체의 소득분배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빈곤 상태에 있던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발전국 민중들 대부분의 소득수준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국가 내의 소득분배는 비록 악화되더라도 전 세계적인 소득분배는 개선된다는 역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분명히 세계화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세계화가 대다수 민중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주장은 좋게 보아도 실증적 기반이 없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FTA 등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세계화가 우리에게 선택이라기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

세계화가 대다수 민중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주장은 좋게 보아도 실증적 기반이 없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FTA 등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세계화가 우리에게 선택이라기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

아울러 FTA 체결 같은 세계화의 정책적 구현이 신자유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식의 논리는 진실과는 한참 먼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이러한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 신자유주의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가 아닐지라도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경제학자는 드물다. 주류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자유무역이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성공할 이상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느냐에 따라 자유무역, 나아가 세계화의 정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서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의 뒤에는 사실상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 내지는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에 대한 이해 없이 그것이 곧 시장경제의 궁극적인 귀결이며 불평등의 심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앞날에 대한 암울한 전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 자동화, 성력화(省力化) 등에 의해 제조업의 성장이 과거와 같이 대폭적인 고용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 또는 발전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고 (물론 그 소수가 성장에도 제일 공헌을 하긴 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하는 의문이 저절로 생길 법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비약적인 성장이 그 자체에만 그치고 아무런 파급효과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는 것이다.

즉,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산업이 고용을 선도했던 때에 비해 현재 얼마나 많은 새로운 업종들이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다.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전통산업이 생산성 향상(고용의 감소 내지는 정체를 수반하여)에 의해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한정되어 있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거에는 거의 소멸되지 않던 변리사, 각종 컨설턴트 등 전문직뿐 아니라 덜 전문적인 서비스업(예를 들어 요식업)의 신규 고용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란 것이

.....

세계화에 의한 성장의 촉진 자체가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만, 막연한 불안과 비관,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도적인 비난 등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한 측면만을 본 관찰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의 창출 양상이 달라진 것뿐이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마다 과거의 기계 파괴 운동이 생각난다. 그러나 고용의 절대적 감소를 가져오고 자본가 계급만 살찌울 것이라던 기계가 그 이후 비약적인 생산량 증가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고용의 증대까지 가져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과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주장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 희생된 계층이 존재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한 길고도 어려운 노력이 필요했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앞날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을 늘어놓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다시 말해 세계화에 의한 성장의 촉진 자체가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막연한 불안과 비관,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도적인 비난 등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분배나 빈곤의 문제 같이 논리보다 감성에 호소하기 쉬운 분야에서 이러한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현안분석 |

-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sung@kipf.re.kr)

I. 서론

1)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논란이 있다. 연구논문마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가 다를 뿐 아니라 실측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연구방법이나 지니계수 산출공식의 차이에 따라 연구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자료의 구축방법이나 주된 표본계층의 포괄범위 등이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무시하고 지니계수 추정치를 직접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판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보면, 최소한 시장소득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필자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 원시자료(2인 이상 도시가계 기준)를 가공하여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1996년 0.247이던 총소득 지니계수는 1998년 0.311로 급상승하였다가 1999년에 0.267로 하락한 다음,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 현재 0.291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조사자료의 포괄범위 변화를 감안하여 놓여진 지역 및 인가구를 포함한 2006년 현재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0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격차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Gottschalk and Smeeding(1997)과 Jacobs(2000)의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분석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조세·재정정책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인 시장소득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격차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¹⁾. 그런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상 단일혈통의 비중이 대단히 높아 인종적으로 동질성이 높으며, 지극히 낮은 문맹률, 최근 노인인구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다는 점,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전통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 및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 분배격차의 확대 추세는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에 따라 전통부문과, 높은 과학기술 및 정보력에 기초한 신흥부문 간의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전문인력(skilled workers)과 비숙련노동자(unskilled workers) 간의 임금·소득격차의 확대도 작금의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계층별 상대소득격차의 확대는 단순

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배율 차이만을 확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율도 함께 상승시키는 추세로 전개되고 있다³⁾.

정부는 조세(각종 부담금 포함)수입을 근간으로 재정지출을 수행하는데, 그 결과로서 소득분배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분배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전환점은 199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1980년대 이래 소득분배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상승추세로 반전되었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주된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분배동향에 비견할 수 있을 만한 선진국에서의 상대소득격차 확대 반전 현상은 19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진국 가운데에는 영국이 비교적 그 시기가 빨라서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부그림 1 참조),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분배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부그림 2 참조). 지니계수 상승 반전의 원인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나름대로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기술진보, 세계화, 정보력 격차 등으로 집약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런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여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소득분배격차의 확대를 경험하였던 영국을 대상으로 각 소득단계별 소득분배구조와 조세·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사례는 영국 통계청의 연구결과인 Jones(2007)의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II. 영국의 소득계층별 소득분배구조

1. 소득단계별⁴⁾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영국에서는 1980년대를 통틀어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경험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1980년 0.44에서 1993/94년에는 0.54에 이를 정도로, 시장소득 지니가 단시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시장소득 지니는 0.5 초반대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에 각종 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을 총소득이라고 한다. 총소득 지니 역시 시장소득 지니와 마찬가지로 1980년 0.30에서 2001/02년에 0.39에 이를

우리나라에서 소득분배격차는 1980년대 이래 축소되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상승추세로 반전되었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주된 결론이다.

3) 필자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은 1996년 1.02%에서, 2000년 3.94%, 2003년 4.25%, 2006년 7.41%로 추정된다(성명재(2007) 참조)

4) 영국 통계청에서는 소득을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최종소득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을 시장소득이라고 한다. 이전소득을 합산하면 총소득, 직접세와 간접세를 차감하면 각각 가처분소득과 세후소득, 최종적으로 현물급여를 합산하여 최종소득으로 정의한다(자세한 내용은 Jones(2007) 참조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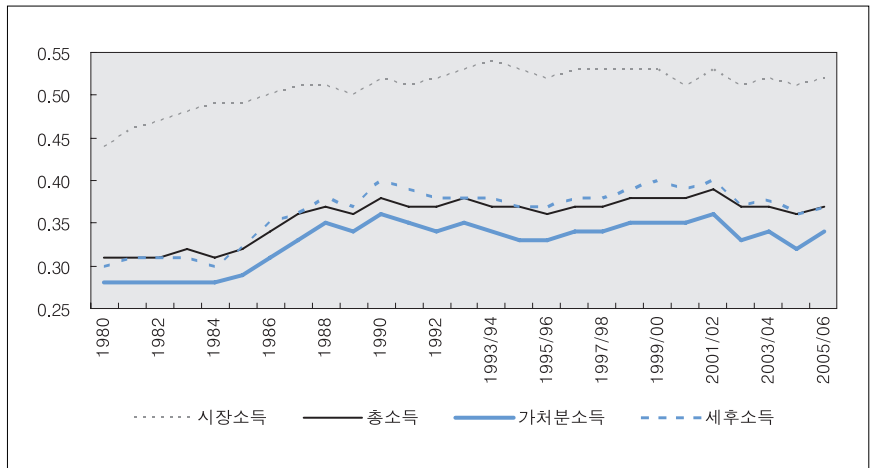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은
각종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혜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것 못지않게
수혜계층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도로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소득 지니와 총소득 지니의 차이는 0.1~0.15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이는 영국에서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은 각종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혜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것 못지않게 수혜계층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⁵⁾⁶⁾.

[그림 1]에서 보듯이 총소득 지니와 가처분소득 지니는 평행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 세후소득 지니도 이와 비슷하다. 직접세 부과를 통해 지니계수 값이 상당 정도 작아지지만 간접세 부과를 통해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국에서 직접세 부담이 누진적인 반면 간접세는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각기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세를 통한 지니계수 하락 효과는 간접세 부과를 통한 지니계수 상승 효과에 의해 거의 대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에서 조세(단,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포함)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순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⁷⁾. 그러므로 영국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소득이전 및 현물급여를 통한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5) 이전소득의 규모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소득 지니의 절대수준이 크면 클수록 소득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도 함께 높아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명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가능성만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6)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 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정비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의 수혜계층 범위가 좁다는 점에도 요인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7)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세의 주종을 이루는 소비세 부과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미미하여 사실상 0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성명재(2006) 참조). 따라서 간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영국 사례와 우리나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영국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자료: Jones(2007).

2. 소득계층별 수혜·부담 분포

시장소득 단계에서 최종소득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가계는 현금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제공받으며, 소득세, 소비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 각종의 조세부담을 진다. 수혜금 또는 부담금의 형태와 종류별로 수혜·부담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각종 공적연금과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 생계보전을 위한 지원금 등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이전소득은 저소득층일수록 절대금액이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절대금액이 작아지는 분포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로 시장소득이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공급대가로서 주어지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주로 시장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주된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⁸⁾. 소득 5분위로 분류하였을 경우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 대응한 최고소득층인 5분위의 이전소득 상대비는 약 1/4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계층별 분포 차이가 뚜렷하다. 1분위 대비 5분위의 시장소득 상대비는 16.2배인데 저소득층에 집중된 현금급여로 인해 총소득의 상대비는 6.6배 수준으로 차이가 크게 둔화되었다.

직접세의 경우에는 부담비중이 약 3/4에 이를 정도로 소득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소득공제와 누진세율 체계로 대표되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해 직접세 부담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세만을 놓고 볼 때 5분위 중 1분위의 실효세부담률은 2.8%인 반면 5분위의 경우에는 18.3%에 이르는 등 상대적인 세부담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직접세 전체를 볼 때, 최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에는 부담률이 무려 총소득 대비 24.7%에 이르러 소득의 약 1/4을 소득세 등 각종 직접세로 부담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실효세부담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분위와 5분위의 직접세 상대비는 17.1배로 시장소득보다도 상대격차가 더 크다. 따라서 총소득에서 직접세 부담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상대비를 산출해 보면 5.5배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간접세 분포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부담의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가처분 소득에 대비한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져 역진적인 세부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1분위의 실효세부담률은 총소득 대비 10.5%인데 5분위의 경우에는 5.0%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 밖에 주세와 담배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보다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낮지만 세부담의 역진구조는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간접세를 차감한 후의 세후소득 상대비는 6.7

직접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누진세율 체계로 대표되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해 직접세 부담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8) 현재 시점에서의 경상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더라도 생애 소득 또는 항상소득의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저소득층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간접세 분포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부담의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가처분소득에
대비한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져 역진적인 세부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배로 가처분소득의 경우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각종 서비스 형태로 주어지는 현물급여 역시 저소득층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급여 상대비가 0.6 수준으로 현금급여에 비해서는 높지만 저소득층의 수혜액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큰 만큼 정(+)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현물급여를 합산한 최종소득의 상대비는 3.7로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조세·재정지출 귀착 효과(2005/06회계연도 기준)

(단위 : 파운드, 배)

	동등화소득 순위 기준 5분위 중 분위						5분위/ 1분위 상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시장소득	4,230	10,760	21,630	35,790	68,700	28,220	16.2
+ 현금급여	6,500	6,830	4,830	2,910	1,710	4,560	0.26
총소득	10,740	17,590	26,460	38,700	70,420	32,780	6.6
- 직접세(employees' NIC 포함)	1,020	2,300	4,760	8,220	17,400	6,740	17.1
가처분소득	9,720	15,290	21,700	30,470	53,020	26,040	5.5
- 간접세	2,890	3,360	4,390	5,580	7,600	4,760	2.6
세후소득	6,830	11,930	17,310	24,900	45,420	21,280	6.7
+ 현물급여	6,660	6,140	5,570	4,960	3,900	5,450	0.59
최종소득	13,490	18,080	22,870	29,860	49,320	26,720	3.7

주: 보다 상세한 내역은 〈부표 2〉 참조.
자료: Jones(2007).

〈표 2〉 영국의 총소득 ·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률(2005/06회계연도)

(단위 : %)

	동등화소득 순위 기준 5분위 중 분위					전체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a) 총소득 대비 비율						
소득세	2.8	6.3	10.2	13.2	18.3	13.5
Employees' NIC	1.5	2.9	4.6	5.4	4.7	4.4
Council tax & Northern Ireland rates	5.2	3.9	3.2	2.7	1.7	2.7
직접세 계	9.5	13.1	18.0	21.2	24.7	20.6
부가가치세	10.5	7.8	6.9	6.3	5.0	6.3
주세	1.4	1.1	1.1	0.9	0.6	0.9
담배세	2.9	1.8	1.3	0.8	0.3	0.9
석유류세, 자동차소비세	2.9	2.1	2.1	2.0	1.3	1.8
기타 간접세	9.2	6.3	5.2	4.5	3.5	4.7
간접세 계	26.9	19.1	16.6	14.4	10.8	14.5
총세부담	36.4	32.1	34.6	35.7	35.5	35.1
(b)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부가가치세	11.6	8.9	8.4	8.0	6.7	7.9
주세	1.6	1.2	1.3	1.2	0.8	1.1
담배세	3.2	2.1	1.6	1.0	0.4	1.1
석유류세, 자동차소비세	3.2	2.4	2.6	2.5	1.7	2.3
기타 간접세	10.2	7.3	6.4	5.7	4.7	5.9
총간접세	29.7	22.0	20.2	18.3	14.3	18.3
(c) 소비지출 대비 비율						
부가가치세	7.8	8.1	7.8	7.8	7.2	7.7
주세	1.1	1.1	1.2	1.1	0.9	1.1
담배세	2.1	1.9	1.5	1.0	0.4	1.1
석유류세, 자동차소비세	2.1	2.2	2.4	2.5	1.9	2.2
기타 간접세	6.9	6.6	6.0	5.6	5.1	5.8
총간접세	20.1	19.9	18.9	18.1	15.5	17.8

자료: Jones(2007).

소득계층별로 보다 상세한 분포를 보기 위해 10분위로 세분류하여 보았을 때 1~5분위의 경우에는 급여총액이 차감총액보다 많아 순수혜가 양(+)의 값을 가지는 한편, 7~10분위에서는 순수혜가 음(-)의 값을 가져 수혜액보다 부담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단계에서 최종소득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금 및 현금급여와 직·간접세를 계층별로 모아보면 [그림 2]를 얻을 수 있다. 현금 및 현금급여는 합산항목인 만큼 횡축 위로 표시되고 직·간접세 부담은 차감항목이므로 가로축 아래로 표시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다 상세한 분포를 보기 위해 10분위로 세분류하여 보았을 때 6분위의 경우에는 합산항목 및 차감항목의 크기가 서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1~5분위의 경우에는 급여총액이 차감총액보다 많아 순수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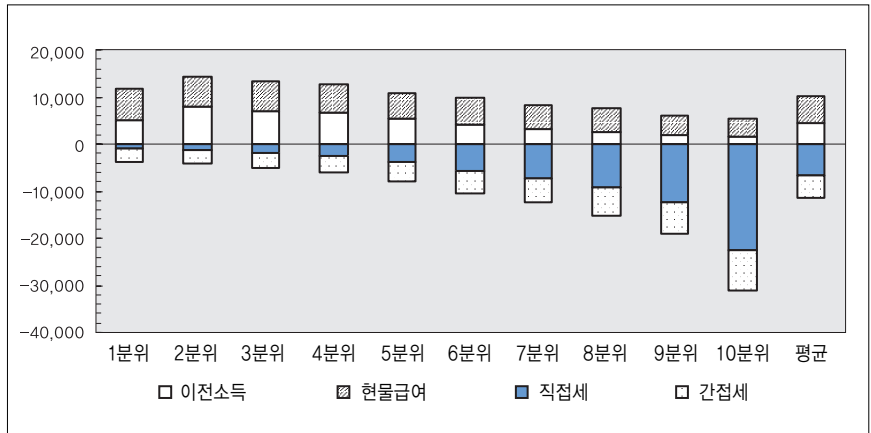


2005/6년 현재 영국의
현금급여와 직접세,
간접세를 아우른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 변화율을 기준으로
28.8%로 추정된다.

양(+)
의 값을 가지는 한편, 7~10분위에서는 순수혜가 음(-)
의 값을 가져 수혜액보다 부담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영국의 소득계층별 순수혜(동등화소득 순위, 2005/06년)

(단위 : 천원)



3. 소득재분배 효과

현금·현물급여 합산 및 직·간접세 차감을 통한 소득계층별 소득점유비의 변화방향은 비대칭적이다. 2005/06년 현재 하위 약 40%에 해당되는 소득5분위(quintiles) 중 1~2분위에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순수혜가 양(+)
의 값을 가짐에 따라 간접세를 차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점유비가 상승한다. 3~4분위의 경우에는 소득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매우 소폭인 반면 최고소득층인 5분위에서는 소득비중이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지니계수를 산출해보면 2005/06년 현재 영국의 시장소득 단계~세후소득 단계 지니계수는 각각 0.52, 0.37, 0.34, 0.37이다. 따라서 현금급여와 직접세, 간접세를 아우른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 변화율을 기준으로 28.8%로 추정된다.

〈표 3〉 소득분위별 소득점유비 및 소득단계별 지니계수(동등화소득 순위, 2005/06회계연도 기준)

(단위 : %)

	동등화소득 순위 기준 소득점유비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5분위 중 분위				
1분위	3.0	6.6	7.5	6.4
2분위	7.6	10.7	11.7	11.2
3분위	15.3	16.1	16.7	16.3
4분위	25.4	23.6	23.4	23.4
5분위	48.7	43.0	40.7	42.7
계	100	100	100	100
10분위 중 분위				
1분위	1	3	3	2
10분위	33	28	26	28
지니계수	0.52	0.37	0.34	0.37

주: 1. 5분위 소득점유비는 〈표 2〉를 기준으로 계산

2. 영국 통계청에서는 최종소득 분포에 대해서는 추정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최종소득 지니계수는 보고하지 않아 답을 수 없었음.

자료: Jones (2007).

만약 이전소득, 현물급여, 직접세, 간접세 각 항목을 차감 또는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도 지니계수 추정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각종 급여·부담항목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점검해 볼 수 있다.

Ⅲ. 영국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중심으로

1. 분석방법과 분석결과

Jones(2007)의 연구에서는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최종소득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지니계수 추정치를 보고하고 있다. 만약 이전소득, 현물 급여, 직접세, 간접세 각 항목을 차감 또는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도 지니계수 추정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각종 급여·부담항목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이나 원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분석할 수 없다. 다행히도 그는 소득 10분위별로 분포표(〈부표 1〉)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10분위별 자료로부터 간접적으로 지니계수를 추정하여 항목별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각 항목별로 10개의 분위별 자료값이 존재하므로 마치 표본의 크기가 10이고 각각의 표본가중치가 0.1이라는 가상적인 전제하에서 각 항목별로 급여 합산 또는 부담 차감후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추정하여 아래의 〈표 4〉에 정리하



원자료로부터 직접
지니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소득단계에
대응한 지니계수 추정치는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Jones(2007)의
추정치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였다⁹⁾. 각 항목별로 급여액 또는 부담액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니계수의 변화율로 표현되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대적 유효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항목별 부담액·급여액 비중도 함께 비교하였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로란(column, A/C로 표시)에는 수혜 또는 세부담 1파운드당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나타내었고, 마지막 세로란(B/D)에는 해당 급여 또는 부담총액에 대응한 지니계수 변화율 총액 대비 개별 항목의 변화율 비중을, 개별 항목의 부담·급여총액의 비중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여 기재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값이 클수록 조세부담 또는 재정지출 1파운드당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또는 강도, 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그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 개별 항목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해당 급여 또는 부담항목 전체에 대해 평균 수준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평균보다 효과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원자료로부터 직접 지니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소득단계에 대응한 지니계수 추정치는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Jones(2007)의 추정치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9) 10개의 분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 10개 그룹으로 구성된 분할(partition)을 구성하기 때문에 10개의 분위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니계수는 그룹 간 지니계수에 해당한다.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니계수는 지니계수의 Pyatt 분해 등에서 보듯이 그룹 간 지니, 그룹 내 지니, 기타 항목(또는 중복도)의 세 가지 항의 합과 같으므로 위의 수치는 개별자료에 의한 지니계수의 구성요소 중 일부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4〉 영국의 각 소득단계별 지니계수에 대한 모의실험 추정결과(2005/06회계연도)

(단위 : %[변화율], 파운드, %/파운드, 배)

소득종류	지니	지니 변화율(A)	비중(B)	역수 평균(C)	비중(D)	A/C	B/D
시장소득	0.45648 (0.52)						
시장소득+연금	0.41546	-9.0	42.6	1962	43.1	-0.0046	0.9900
시장소득+실업급여	0.4542	-0.5	2.4	60	1.3	-0.0083	1.7995
시장소득+출산급여	0.45647	0.0	0.0	50	1.1	0.0000	0.0095
시장소득+소득보조· 아동·주택보조	0.42298	-7.3	34.8	1260	27.7	-0.0058	1.2590
시장소득+장애인보조	0.45081	-1.2	5.9	274	6.0	-0.0045	0.9799
시장소득+학생보조	0.45517	-0.3	1.4	78	1.7	-0.0037	0.7953
시장소득+총이전소득	0.36029	-21.1	100	4555	100	-0.0046	
총소득	0.36028 (0.37)						
총소득-소득세	0.33182	-6.2	91.2	4561	67.7	-0.0014	1.3480
총소득-사회보험료	0.35642	-0.8	12.4	1445	21.4	-0.0006	0.5771
총소득-총직접세	0.32908	-6.8	100	6740	100	-0.0010	
가처분소득	0.32908 (0.34)						
가처분소득-부가가치세	0.33679	1.7	27.6	2053	43.1	0.0008	0.6394
가처분소득-담배세	0.33351	1.0	15.8	295	6.2	0.0033	2.5567
가처분소득-주세	0.33035	0.3	4.5	281	5.9	0.0010	0.7695
가처분소득-유류세	0.33167	0.6	9.3	622	13.1	0.0009	0.7089
가처분소득-주택구입 인지세	0.32865	-0.1	-1.5	152	3.2	-0.0006	-0.4816
가처분소득-총간접세	0.35705	6.1	100	4762	100	0.0013	
세후소득	0.35706 (0.37)						
세후소득+교육급여	0.31481	-9.3	45.3	1963	36.0	-0.0047	1.2580
세후소득+건강보험	0.29839	-12.9	63.0	3343	61.4	-0.0038	1.0258
세후소득+주택 관련 현물급여	0.35632	-0.2	0.8	20	0.4	-0.0081	2.1627
세후소득+버스철도교 통급여	0.35587	-0.3	1.3	95	1.7	-0.0027	0.7322
세후소득+학교급식급여	0.35597	-0.2	1.2	25	0.5	-0.0096	2.5484
세후소득+총현물급여	0.26387	-20.4	100	5447	100	-0.0037	
최종소득	0.26387						

주: 1. Jones(2007)의 (부표 1)을 기준으로 필자가 10개의 표본 수를 가진 가상의 가구자료로 환산하여 각 소득단계별 지니계수를 추정하였음. 따라서 각 단계별 지니계수가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Jones(2007)의 수치와 차이를 보임.

2. () 안은 Jones(2007)의 연구에서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지니계수임.

3. 비중(A)와 비중(B)는 이전소득, 직접세, 간접세 또는 현물급여 총액의 지니계수 변화율 또는 총액 대비 각 항목의 지니계수 변화율 또는 급여액·부담액 비중을 나타냄. 세부항목이 당해 급여 또는 부담항목 중 일부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항목의 힘이 항목별 총액값과 일치하지 않음.



이전소득 항목은 지니계수를 21.1% 낮추어 정(+)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별 항목의 절대규모면에서는
 연금과 소득보조·
 아동·주택보조 항목이
 이전소득 전체 효과의 77.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2.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현금형태로 가계에 주어지는 급여로 정의된다. <부표 1>에서 보듯이 이전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은 무수히 많다. 이 가운데 여섯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각각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이전소득 항목은 지니계수를 21.1% 낮추어 정(+)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별 항목의 절대규모면에서는 연금과 소득보조·
 아동·주택보조 항목이 이전소득 전체 효과의 77.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2005/06년 현재 가구당 평균 연간이전소득액은 4,555파운드인데 이 중 연금과 소득보조·
 아동·주택급여가 각각 1,962파운드와 1,260파운드로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데에는 급여규모가 크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급여규모를 감안한 단위당 지니계수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는 실업급여가 1.80, 소득보조·
 아동·주택급여가 1.26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출산급여는 재분배 효과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소득 1파운드당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이전소득 항목 가운데에는 단위당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현물급여 항목의 학교급식급여에 이어 1파운드당 개선효과가 두 번째로 높다.

3. 직접세

영국에서 직접세를 부과함에 따라 지니계수는 8.7% 하락(총소득 지니 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접세 부담의 거의 대부분(67.7%)은 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7.9%p,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여도는 91.2%에 이른다.

4. 간접세

영국의 경우 간접세를 통해 지니계수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추이는 주택구입시 납부하게 되는 인지세 부담을 제외하면 간접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간접세에 의한 지니계수 상승효과는 총 6.1%에 이른다. 그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1.7%p, 담배세, 주세, 유류세가 각각 1.0%p, 0.3%p, 0.6%p로 전체의 59.0%=(1.7+1.0+0.3+0.6)/6.1)를 차

지하여 소비세의 지니계수 상승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담액 단위당 효과를 보면 담배세의 경우만 2.56으로 세부담의 역진성 및 단위당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높은 것을 제외한다면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모두 단위당 효과를 나타내는 상대비가 0.64~0.77로 1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5. 현물급여

영국에서 현물급여는 거의 대부분 교육급여(36.0%)와 건강보험급여(61.4%)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물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기준 20.4%)도 거의 대부분 이들 항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교육급여와 건강보험급여를 통한 지니계수 하락률의 단순합을 구하면 22.9%로 전체효과를 상회한다. 그런데 이는 여타의 현물급여 항목이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에서는 세후소득에서 각종 현물급여 항목을 순차적·누차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세후소득에서 각 항목에 대한 급여액만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추정하여 세후소득 지니계수 대비 변화율을 산출한 만큼 각각의 합이 반드시 현물급여 전체를 합산한 소득 지니의 변화율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물급여 가운데 급여액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학교급식급여이다.

영국에서 현물급여는 거의 대부분 교육급여와 건강보험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물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의 대부분 이들 항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IV. 요약 및 맺음말

절대수준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의 지니계수는 0.23~0.25 수준으로, 분석대상과 분석단위, 분석방법 등이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중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부그림 11 참조). 1970년대 말 이후 영국의 지니계수는 상승하기 시작하여 20여년 간 상승추세를 지속하였다. 그 결과로서 최근에는 시장소득 지니가 0.5 이상, 총소득 지니가 0.3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Jones(2007)가 제공한 각 소득단계별·소득10분위별 소득구성 항목 분포표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시행해 본 결과, 영국에서는 현금급여, 직접세, 현물급



최근 각종 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라 조세·재정에 의한 재분배정책의 효과 증대는 상당히 고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 모두 상당히 큰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항목으로는 연금, 소득보조·아동·주택보조, 소득세, 교육급여, 건강보험급여의 소득재분배 기여도가 매우 크다. 반면에 간접세는 (전단계 소득 지니 대비) 지니계수를 8.5% 상승시킬 정도로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대규모 면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기여도가 높지만 부담액 1파운드당 기여도 측면에서는 담배세의 효과가 평균보다 2.5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경제구조와 인구구성 등이 본질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험이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난 10여년 간의 추세 변화를 놓고 보면 영국의 1980년대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일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복지제도가 이미 잘 갖추어진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제도 및 경제발전 단계, 소득수준 등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단선적으로 소득분배격차 확대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재분배 효과의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영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므로 당장 선진국 또는 영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재분배정책을 극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우며 타당하지도 않다. 양국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건 차이에 의한 효과 차이를 제거하였을 때 양국 간의 재분배 효과의 상대적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국가 간의 제반 여건 차이에 기인하는 효과 차이 부분을 제거하고 동일선상에서 정책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치(靜緻)한 모형설계·분석을 통한 모의실험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여건 차이를 감안한 순효과를 비교하여 복지제도의 적정 규모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직접 유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근 각종 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라 조세·재정에 의한 재분배정책의 효과 증대는 상당히 고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¹⁰⁾.

여건 차이에 의한 효과 차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작금의 우리나라 재분배 효과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작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현 상태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단번에 관련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만약 현재 상태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일치시킨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례로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 상승하여 만약 10년 후에 현재의 영국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미 영국 수준만큼의

10) 이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개입 전 단계의 소득 단계, 이를테면 민간소득 단계에서의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보다 우수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학자들도 있다.

재분배 효과를 얻고 있는 복지제도가 1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수혜계층이 계속 증가하면서 향후에 기대되는 효과가 이미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이라기보다는 과잉복지 및 그에 따른 초과재정부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격차의 지속적 확대 및 빈곤율의 상승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확충 속도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여건 차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을 찾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KI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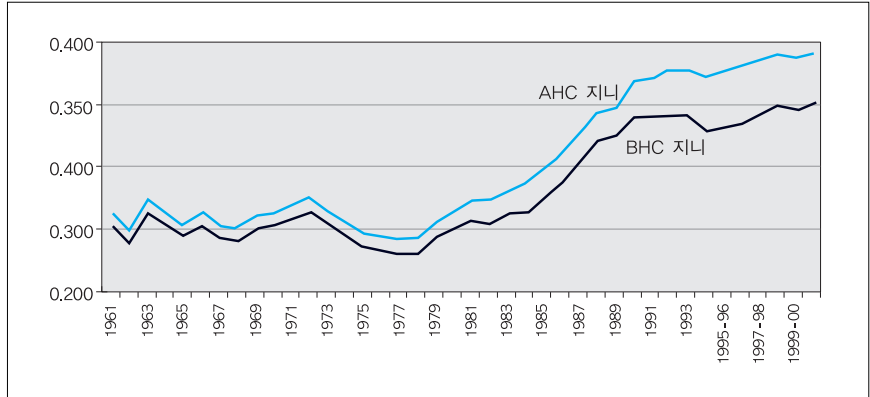
소득격차의 지속적 확대 및 빈곤율의 상승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성명재, 「소득계층별 조세·이전지출 분포와 소득재분배」,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2006, pp. 5 ~ 45.
- _____,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재정논집』, 제22집 제1호, 2007, pp. 61 ~ 88.
- Goodman, Alissa and Andrew Shepherd, *Inequality and Living Standards in Great Britain: Some Facts*, Briefing Note No. 19,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02.
- Gottschalk, P. and T. M. Smeeding, “Empirical Evidence on Income Inequality in Industrialised Countries,” mimeo, 1997.
- Jacobs, Didier, “Low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 An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Compared to Britai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0.
- Jones, Franci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5-0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7.
- Leicester, Andrew and Jonathan Shaw, *A Survey of the UK Benefit System*, Briefing Note No. 13,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03.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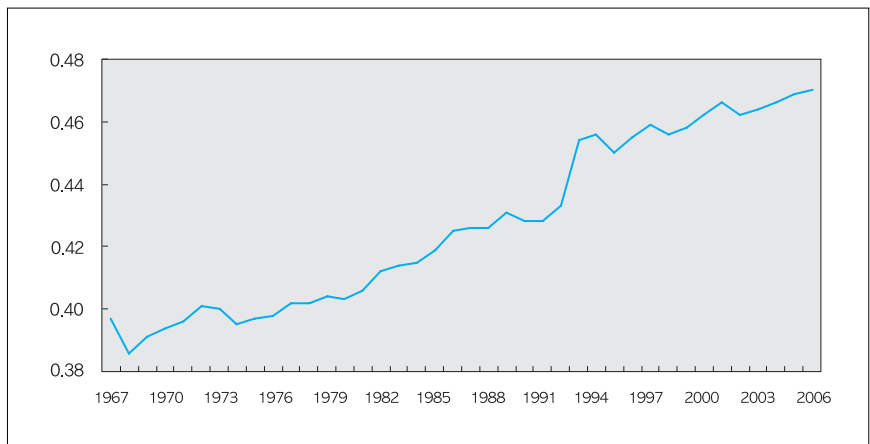
[부그림 1] 영국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주: AHC와 BHC는 after-housing-costs와 before-housing-costs의 약자이며, 각각 주거비용 차감 전후의 가구 소득 기준의 지니를 나타냄. 상기는 FES(Family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동일자료를 사용한 영국 통계청의 추정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연구자 및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함. 추세적으로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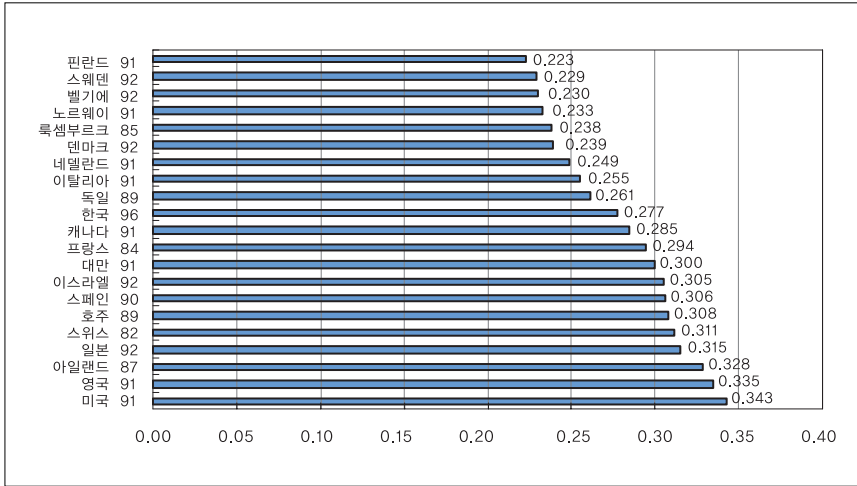
자료: Goodman and Shepherd(2002).

[부그림 2] 미국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자료: <http://www.census.gov/hhes/www/income/histinc/h04.html>(2007년 9월 12일 현재).

[부그림 3] 각국의 지니계수 비교



자료: Gottschalk and Smeeding(1997); Jacobs(2000).

〈부표 1〉 영국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세부담 및 편익분포(2005~06, 가처분균등화소득 기준)

(단위 : 파운드)

가처분균등화소득 분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평균
Wages and salaries	1,906	3,539	5,943	9,397	14,016	20,286	25,891	31,019	40,711	62,010	21,472
Imputed income from benefits in kind	7	25	12	39	78	264	250	493	753	1,615	354
Self-employment income	406	412	993	739	1,058	1,372	2,235	2,828	4,253	13,045	2,734
Occupational pensions, annuities	431	940	1,664	1,798	2,212	2,529	2,563	3,677	3,252	4,586	2,365
Investment income	260	263	284	326	445	550	638	1,073	1,502	4,809	1,015
Other income	175	105	134	197	210	243	278	630	244	629	284
Original income	3,184	5,284	9,029	12,495	18,019	25,244	31,856	39,720	50,715	86,694	28,224
Contributory											
Retirement pension	1,736	2,750	3,169	2,858	2,508	1,955	1,501	1,334	934	872	1,962
Job seeker's allowance (Contribution based)	72	31	19	27	10	8	7	1	-	0	18
Incapacity benefit	397	512	371	475	245	169	136	90	55	24	247
Widows' benefits	31	36	17	45	14	51	22	6	22	17	26
Statutory Maternity Pay/Allowance	8	10	1	22	17	67	94	75	48	156	50
Non-contributory											
Income support and pension credit	704	1,277	715	553	375	227	144	164	49	-	421
Child benefit	435	501	412	397	376	420	382	337	302	261	382
Housing benefit	616	1,126	844	841	484	324	168	97	69	-	457
Job seeker's allowance (Income based)	207	80	40	53	7	19	7	4	0	-	42
Carer's allowance	38	76	97	59	84	38	35	40	11	6	48
Attendance allowance	16	41	50	74	105	67	60	22	15	8	46
Disability living allowance	114	333	374	468	470	318	281	230	114	38	274
War pensions/War widows' pensions	-	-	22	22	34	31	12	14	23	19	18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4	43	32	57	54	55	18	41	3	-	31
Industrial injury disablement benefit	15	18	24	12	25	26	23	10	11	-	16
Student support	127	75	37	96	65	100	65	43	13	164	78
Government training schemes	8	9	14	8	1	3	4	11	1	0	6
Tax credits ¹	474	666	516	373	320	260	90	52	33	0	278
Other non-contributory benefits ²	182	236	242	218	183	140	92	106	80	74	155
Total cash benefits (+)	5,182	7,821	6,996	6,657	5,377	4,278	3,141	2,676	1,783	1,641	4,555
Gross income	8,366	13,105	16,026	19,153	23,396	29,522	34,997	42,396	52,498	88,334	32,779
Income tax	264	504	1,132	1,500	2,340	3,490	4,602	5,908	8,317	17,553	4,561
less: Tax credits ³	43	120	222	211	213	208	171	106	66	22	138
Employers' NI contributions	101	220	388	618	970	1,446	1,906	2,248	3,012	3,541	1,445
Council tax and Northern Ireland rates ⁴	842	899	907	921	922	976	1,011	1,104	1,114	1,365	1,006
less: Council tax benefit/Rates rebates	280	349	237	205	123	73	35	22	9	5	134
Total Direct taxes and Employers' NIC (-)	884	1,154	1,968	2,623	3,895	5,632	7,313	9,132	12,369	22,432	6,740
Disposable income	7,483	11,951	14,058	16,529	19,501	23,890	27,685	33,264	40,129	65,902	26,039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7,259	11,527	13,914	15,980	18,478	21,526	25,038	29,547	36,695	64,672	24,464
Taxes on final goods and services											
VAT	1,110	1,137	1,345	1,392	1,641	1,990	2,230	2,617	2,898	4,166	2,053
Duty on tobacco	264	351	292	340	328	349	310	303	275	138	295
Duty on beer and cider	60	70	73	90	106	144	149	176	185	142	119
Duty on wines & spirits	88	89	106	101	141	175	169	208	255	292	162
Duty on hydrocarbon oils	235	231	264	311	384	502	537	659	704	775	460
Vehicle excise duty	78	72	79	93	114	136	153	175	177	196	127
Television licences	93	93	90	95	97	101	112	112	116	118	103
Stamp duty on house purchase	63	51	59	60	94	123	152	186	229	500	152
Customs duties	19	19	21	22	24	28	30	34	38	52	29
Betting taxes	16	29	25	29	31	34	32	35	32	73	34
Insurance premium tax	21	23	28	29	35	44	50	61	64	87	44
Air passenger duty	8	7	15	14	20	22	26	40	46	55	25
Camelot National Lottery Fund	36	45	52	56	64	65	65	61	55	47	55
Other	8	10	17	11	12	7	14	41	31	43	19
Intermediate taxes											
Commercial and industrial rates	166	171	184	192	213	245	267	298	338	459	253
Employers' NI contributions	272	280	301	314	349	402	437	487	553	751	415
Duty on hydrocarbon oils	106	109	117	123	136	157	170	190	216	293	162
Vehicle excise duty	9	10	10	11	12	14	15	17	19	26	14
Other	158	162	175	182	202	233	254	283	321	436	240
Total indirect taxes (-)	2,811	2,960	3,254	3,464	4,006	4,772	5,172	5,983	6,550	8,647	4,762
Post-tax income	4,672	8,991	10,804	13,065	15,495	19,118	22,513	27,281	33,579	57,256	21,277
Education	3,044	2,466	1,999	2,140	1,953	2,040	1,859	1,739	1,439	949	1,963
National health service	3,475	3,931	4,044	3,804	3,491	3,419	3,148	2,978	2,592	2,549	3,343
Housing subsidy	42	41	32	22	31	17	14	3	2	0	20
Rail travel subsidy	14	8	18	15	25	22	32	38	64	99	33
Bus travel subsidy	68	73	78	71	58	57	49	49	59	53	62
School meals and welfare milk	59	95	38	25	14	7	8	1	0	0	25
Total Benefits in kind (+)	6,702	6,613	6,208	6,078	5,573	5,563	5,110	4,814	4,155	3,652	5,447
Final income	11,374	15,604	17,012	19,143	21,068	24,681	27,622	32,095	37,734	60,908	26,724

주: 1.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 Includes age-related payments.
 3. Including tax relief at source on life assurance premiums.
 4. Council tax and Northern Ireland rates after deducting discounts.

자료: Jones(2007).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srkim@kipf.re.kr)

I. 서론

최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명제 아래 환경보전과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세정책 관련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의 마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정식으로 발효되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2003년 기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차 의무이행 당사국에서는 제외되었으나, 2012년 이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2차 의무이행 당사국에서까지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비한 체계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이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세계개편 차원의 정책방향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북극 중심의 OECD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탄소세 등 환경관련 조세 및 재정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1991, 2001), 핀란드(1997, 1998), 영국(1999, 2001), 덴마크(1992, 1995, 1998), 독일(1998, 2003), 네덜란드(1996, 1998) 등 EU 주요 국가들은 일반세제와의 세수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인세,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인하하여 조세왜곡을 최소화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등 기존 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전환

우리나라는 아직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비한 체계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이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세계개편 차원의 정책방향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환경친화적 방향에서
세제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
마련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environmental tax reform; ETR)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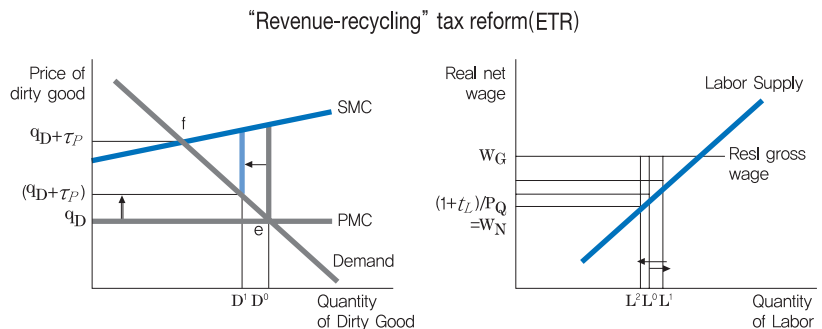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올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입안(2007. 8. 3)되어 법률 제8612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환경과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경제적 수단으로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Ⅱ장에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이론적 배경을, 제Ⅲ장에서 주요 선진국의 정책사례와 경험 그리고 그 의의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목표와 성과: 이론적 배경

환경친화적 방향에서 세제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집중과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용량 압력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 마련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 정부는 전반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환경보호 목표와 고용 촉진, 성장잠재력 확충 등 일반 경제정책적 목표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가령 [그림 1]에서와 같이 최근 유럽국가들의 소득관련 과세에서 환경관련 과세로의 전형적인 세제개편은 경제구조의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적 방향으로의 이행을 유도하고 고용, 투자 등 기타 일반 경제부문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 나가는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림 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예시



where environmental tax rate = t_p ,
labor tax rate = t_L ,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 = $t_p (=MED)$
(uncompensated) labor supply elasticity = ϵ^L

이러한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조세원칙은 <표 1>에서와 같이 각종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을 기타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시키고, 환경관련 세수의 효율적 재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동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 설정 및 재정운용 방식에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의 세율 설정 및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화이다.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조세원칙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을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시키고, 환경관련 세수의 효율적 재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의 세율 설정 및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화이다.

<표 1>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의 정책 목표

주요 측면	내용 예시
(1) 정책목표(policy objectives) 간의 조화가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환경보호/에너지소비절약 측면(environmental aspects): 부정적 외부성의 교정(CO₂, 대기/수질/폐기물 오염, 교통혼잡 및 사고, 에너지안보 등) - ii) 세부확보 및 재원조달 측면(fiscal aspects):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조세지원 및 보조금 재원, 기타 공공지출 및 투자 등 - iii) 특정정책적 측면(socio-political aspects): 특정부문 경쟁력 지원 및 소득재분배, 에너지소비용도별 세제 차등, 특정산업 및 저소득층 지원(감면/면제/환급, 재정지출)
(2) 세수(tax revenue) 활용방안(환류)의 방법이 중요	- 에너지원 간 조정, 정부의 일반 세입/세출 구조 조정(기타 노동 및 자본관련 세수경감, 일반 정부지출), 환경관련 R&D/교육 투자, 에너지 사업지원, 조세지출(mitigation) vs. 재정지출(compensation) 등
(3)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율 및 예산지원의 적정 수준(levels) 설정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측면의 세율 수준 및 세부담의 적정 배분(외부효과 내부화, 비효율성 제거, 사회적 형평성 제고 감안) - 세출측면의 예산지원 수준의 적정화(환경R&D,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신성장동력 확충, 환경산업육성, 신기술시장 등)

과거 에너지, 자동차, 기타 오염 물질이나 환경유해 행위 등에 부과되는 환경관련 세제(부담금 포함)는 특정의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단순히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환경관련 세제를 <표 1>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 경제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EU국가들에서 실시되어 온 노동관련 과세에서 환경관련 과세로 세부담을 이동시키는 전형적인 '환경친화적 세계개편(environmental tax reform)' 의 방안은 환경에 유해한 경제행위를 줄이고 일반경제 부문의 효율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세계개편으로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overall) 세 부담의 변화는 없다.

이러한 전형적인 환경관련 세제의 개편 방식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 이래 가장 핵심적인 쟁점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소위 환경관련 세제의 이중



기존의 이중배당가설에서는
차선의 경제에서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는
기존 조세체계를 더욱 왜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적정 환경세 수준도 대체로
피구비안 수준보다도
오히려 상당히(약 30% 정도)
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많은 문헌에서의 뜨거운 이론적·실증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문헌들은 이러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최근 문헌의 변천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환경관련 세제의 이중배당가설은 부분균형모형에서 환경관련세가 Pigou(1947)의 오염배출의 단위당 사회적 한계피해비용(marginal social damage)의 부(-)의 외부성을 단순히 내부화하는 수준(피구비안 수준)에서 결정되는 교정세적 성격으로 출발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전반적 조세체계 내에서 기존의 조세왜곡이 없는 이상적인 최선(first-best)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실제 현실과 같이 기존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등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pre-existing tax distortion)이 존재하는 차선(second-best)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신규 환경관련세 도입은 오염저감(1차배당효과)과 동시에 관련 환경세수 환류(tax revenue recycling)를 통해 기존 세제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전반적 조세체계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2차배당효과), 또한 차선의 경제에서 적정 환경세 수준은 그 피구비안 수준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Pearce, 1992).

그러나 이처럼 획기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환경관련 세제의 이중배당가설은 Bovenberg and de Mooij(1994) 등으로 대표되는 후속의 많은 일반균형 분석 논문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비판의 핵심은 차선의 경제에서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부분균형모형과는 달리 조세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세와 기존 조세 사이의 부정적 조세상관효과(tax interaction effect)가 환경세수의 세수환류효과(tax recycling effect)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기존 조세체계의 한계왜곡비용(marginal excess burden)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차선의 경제에서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는 기존 조세체계를 더욱 왜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적정 환경세 수준도 대체로 피구비안 수준보다도 오히려 상당히(약 30% 정도) 낮아야 한다는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Kim(2002), Ballard et al.(2005), West and Williams(2004, 2007) 등은 보다 일반화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소 비관적인 관점의 이중배당효과를 주장한 Bovenberg and de Mooij(1994)류의 선행 논문들에 대한 재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은 모형의 근본 가정에 강하게 의존한 것이며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여 모형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 2〉 환경보전과 고용의 '이중배당(double dividend)' 이론에 관한 최근 문헌

구분	주요 연구	특징
(i) Pigou의 최선의 상황 (고전적)	- Pigou(1947)	- 기존의 조세왜곡이 없는 이상적인 최선의 상황(first-best world)에서 신규 환경세의 적정 수준 t_D^* 은 과세재화의 한계피해비용(marginal environmental damage, τ_P)을 모두 단순히 내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 $t_D^* = \tau_P$
(ii) 차선의 상황에서 세수재활용을 통한 매우 낙관적 관점	- Tullock(1967), Terkla(1984), Lee & Misiolek(1986), Pearce(1991), Repetto et al.(1992), Nordhaus(1993) 등	- 환경세는 오염을 저감하는 동시에 세수의 환류(recycling)를 통하여 기존의 조세 t_L 의 왜곡(pre-existing tax distortions)을 완화하여 전반적 조세체계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소위, 이중배당가설, Pearce 1992) - 따라서 차선의 환경세 수준은 피구비안 수준(MED) 이상이 필요할 수 있음 $t_D^* >> \tau_P$
(iii) 차선의 상황에서 조세상충효과로 다소 비관적 관점	- Bovenberg and de Mooij(1994), Goulder(1995), Parry(1995), Oats(1995), Fullerton(1997) 외 다수	- 신규 환경세는 통상적으로 기존의 조세왜곡(가령 세율 t_L 과 탄력성 ϵ^U)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M > 0$ 인 차선의 경제에서 적정수준은 전통적 피구비안 수준(MED)보다 낮아야 함 - 이러한 경우 기존의 조세왜곡의 크기가 중요하며, 특히 조세상충효과(tax interaction effect)의 부정적 효과가 세수환류효과(tax recycling effect)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함(Bovenberg and de Mooij, 1994; Parry, 1995) $t_D^* = \frac{\tau_P}{(1 + M)}$
(iv) 차선의 상황에서 일반화를 통한 다소 낙관적 관점	- Kim(2002), Goodstein(2004), Ballard et al.(2005), West and Williams(2004, 2007) 등	- Bovenberg and de Mooij(1994)의 결과는 모형의 가정에 강하게 의존하며, 기존 조세의 왜곡도 뿐만 아니라 노동과 오염재의 교차가격효과 ϕ , 오염재의 자기가격효과 ϵ_D 등의 상대적 크기에 크게 달라지며 대체로 긍정적 순효과가 더욱 큼 (Kim, 2002) $t_D^* = \frac{\tau_P}{1 + M \left(\frac{\epsilon_D - \phi}{\epsilon_D} \right)}$ - 기존의 연구는 본 연구들의 특별한 경우에 불과 (가령 $t_L=0$ 또는 $\phi=0$)

그러나 기존 이중배당가설의 가정을 완화하여 모형을 보다 현실적으로 일반화할 경우에 환경관련 세제 도입의 긍정적 파급 효과는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다.

주: 환경세 도입 이전에 기존의 노동과세에서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은 한계노동세율 t_L 과 노동공급 탄력성 ϵ^U 의 함수로서 $M = M(t_L, \epsilon^U) = [1 - [t_L / (1 - t_L)] \epsilon^U]^{-1} - 1$ 으로 표현 가능, 여기서 특히 위 (iii)의 문헌들은 오염재와 여가수요가 상대적으로 평균적 대체재라고 가정된 특별한 경우($\phi=0$)이며, 여기서 적정 환경세 수준에 관한 식의 분모항 $(1+M)$ 은 기존 조세체계 t_L 의 왜곡비용에 따른 '한계공적부담비용(marginal cost of public fund: MCPF)'을 의미,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유도과정은 Kim(2002) 참조.



**핀란드 탄소세의 특징은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환급제도가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화할 경우에 환경관련 세제 도입의 긍정적 파급 효과는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상의 환경친화적인 방향에서의 세제개편은 현실적으로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이 대체로 다음의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기존의 환경적으로 유해한 각종 보조금이나 면제조항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현행 조세시스템 개혁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 자본 및 기타 비환경관련 소비세 부과대상(개인소득세, 자본과세, 사회보장부담금, 또는 각종 비효율적 특소세)으로부터 환경친화관련 세원(각종 친환경상품세 신설, 탄소세 등)으로의 점진적인 조세부담 이동(tax burden shift)을 통하여 기존 조세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다¹⁾. 또한 정부예산 편성의 경우,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산업생산 구조로의 개편을 지원하고 각종 환경기술/산업관련 투자(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환경친화자동차 등)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Ⅲ. 주요 선진국의 정책사례

1. 외국사례

가. 핀란드

핀란드는 1990년 1월에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소득세 감면에 따른 소득세 수의 결손을 보전하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입은 일반예산으로 흡수되어, 부분적으로 소득세를 인하하고 노동비용을 낮추는 데 이용되어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 탄소세의 특징은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환급제도가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의 탄소세율은 1992년보다 1993년에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매년 연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핀란드의 전력회사들에도 적용되어 전기의 국내 생산량 하락과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조세개혁을 통해 에너지·탄소세율의 과세표준

1) 환경관련 유인제도(‘광의의’ 환경세 제)의 도입은 환경관련 조세의 신규 도입이라는 적극적인 세제개혁 방식과 기존 유인체계의 수정 및 보완이라는 소극적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최근 북유럽을 위시한 주요 EU 선진국가들의 사례는 이 중에서 적극적 방식으로서, 노동 및 자본관련 소득세제 중심의 조세체계는 근로의욕이나 투자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친 조세왜곡(tax distortions)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환경친화적인 조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하여 조세시스템의 왜곡을 완화시킨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을 탄소와 에너지의 함유량에 근거하도록 하여, 탄소세는 75%, 나머지 25%는 에너지세로 부과하였다.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에너지세 없이 탄소세를 100% 부과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전력발전용 에너지에는 에너지·탄소세 및 예비비축 비용을 면제해 주었고, 에너지관련 세제를 개편하면서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친환경 세계개편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노동과세 중심에서 에너지환경세에 법인이윤세를 추가하여 과세기준을 확대하였다. 그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액이 1998년 15억FIM, 1999년 35억FIM이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비석탄 고체에너지(non-coal solid fuels)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율은 22%로 책정하고 있다.

1998년에는 노동과세 중심에서 에너지환경세에 법인이윤세를 추가하여 과세기준을 확대하였다.

〈표 3〉 핀란드의 에너지관련 세제(2007년 2분기 기준)

유종	개별소비세 (excise tax)	특별세		환경오염부담금	
		환경손상세 ¹⁾	에너지/탄소세 ²⁾	예비비축비 ³⁾	석유공해세 ⁴⁾
저유황연료유	- ⁵⁾	-	56.8EUR/t (2003.1.1~)	2.86EUR/t (1997.1.1~)	0.37EUR/t (1990.1.1~)
경질연료유 ⁶⁾	0.0193EUR/ℓ (2003.1.1~)	-	0.0478EUR/ℓ (2003.1.1~)	0.00353EUR/ℓ (1997.1.1~)	0.00032EUR/ℓ (1990.1.1~)
수송용 경유	0.295EUR/ℓ ⁷⁾ (2003.1.1~)	-	0.048EUR/ℓ (2003.1.1~)	0.004EUR/ℓ (1997.1.1~)	0.00032EUR/ℓ (1990.1.1~)
휘발유 ⁸⁾	0.618EUR/ℓ (고급유연) 0.539EUR/ℓ (고급무연) (2003.1.1~)	-	0.0423EUR/ℓ (2003.1.1~)	0.007EUR/ℓ (1997.1.1~)	0.00029EUR/ℓ (1990.1.1~)
천연가스	-	-	0.0182EUR/m ³ (2003.1.1~)	0.001EUR/m ³ (1997.1.1~)	-
석탄	-	-	43.52EUR/t (2003.1.1~)	1.18EUR/t (2003.1.1~)	-
전기 및 지역난방	산업용	0.0044EUR/kWh (2003.1.1~)	-	0.0001EUR/kWh (1997.1.1~)	-
	가정용	0.0073EUR/kWh (2003.1.1~)	-	0.0001EUR/kWh (1997.1.1~)	-

주: 1) 환경손상세(Environmental Damage Tax)는 1993년 12월 31일 폐지
 2) 1998. 9. 1 ~ 현재까지 적용
 3) 1997. 1. 1 ~ 현재까지 적용
 4) 석유공해세(Oil Pollution Fee)는 1990. 1. 1~현재까지 적용
 5) 1996년 12월 31일 폐지
 6) 특성: 농도(density) 0.84t/ℓ
 7) 유황 함유량 0.00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유황 함유량이 0.005% 미만인 무유황 경유(sulphur free quality)는 개별소비세 0.268EUR/ℓ 의 세율이 적용됨
 8) 유연제품에만 과세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2nd Quarter, 2007.



스웨덴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세율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대기오염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되며, 에너지관련 세수는 세수중립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다.

나. 스웨덴

스웨덴은 최초로 소득세에서 에너지 및 환경오염세로의 조세체계 전환을 시도한 국가이다. 1988년에 환경부담금에 관한 스웨덴위원회를 조직·운영하여 세부담을 노동에서 환경오염으로 전환시키면서 환경세의 개혁을 일으켰다. 이어 1991년 의회를 통하여 탄소세, 유황세 및 질소세를 도입하여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세수를 이용,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인하하여 고용증진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1993년에 제조업 및 상업적 농업에 대한 CO₂세를 전반적인 수준의 25%로 감축하고, 제조업 및 상업적 원예업에 대해서는 원료 및 전력에 대한 에너지세를 폐지하는 새로운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탄소세나 유황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이산화탄소나 유황의 배출량 또는 함유량에 따라 결정하였다. 탄소세의 세율은 도입 당시 250SKR/tCO₂(1991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이후 1993년에 320SKR/tCO₂로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 상승하는 구조로 탄소세율이 개편되었고, 1997년에는 휘발유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에 대해 탄소세율이 인상되었다. 그리고 과세대상도 중유나 석탄 등 광범위한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1990년 3월 1일 이후 항공연료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1월 1일부터는 특정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세금과는 별도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출부과금의 수입은 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 부담자에게 재분배하고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선박운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선박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이렇듯 스웨덴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세율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대기오염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되며, 에너지관련 세수는 세수중립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2년에 에너지세율을 인상하여 유럽연합지침(EU Council Directives)의 최저한도 세율을 지킴으로써 EU의 조세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2001년 세계개편으로 2010년까지의 총 310억SKR(33억유로), 즉 GDP의 1.4%에 상응하는 세수가 환경세로 이동할 계획이나, 2003년(최초 3년

간)까지는 세수중립적인 세계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4〉 스웨덴의 에너지관련 세제(2007년 2분기 기준)

유종		에너지세	탄소세	유황세
저유황연료유		- ¹⁾	550.8SEK/kℓ (2006.1.1~)2)	28SEK/t (1991.1.1~)
가정용 경질연료유		590SEK/kℓ (1996.1.1~)	2.663SEK/ℓ (2007.1.1~)	-
수송용 경유 ²⁾³⁾	1급	1.057SEK/ℓ (2007.1.1~)	2.663SEK/ℓ (2007.1.1~)	-
	2급	1.306SEK/ℓ (2007.1.1~)	0.280SEK/ℓ (2007.1.1~)	-
	3급	1.663SEK/ℓ (2007.1.1~)	0.280SEK/ℓ (2007.1.1~)	-
휘발유 ⁴⁾		2.90(1급)SEK/ℓ (2007.1.1~)	2.16SEK/ℓ (2007.1.1~)	-
석탄	산업용	- ¹⁾	473SEK/t (2003.1.1~)	유황함유량 매 10% 당 30 SEK/t(1991.1.1~)
	전력발전 및 지역난방용	307SEK/t (2003.1.1~)	1892SEK/t (2003.1.1~)	유황함유량 매 10% 당 30 SEK/t(1993.1.1~)
전기	산업용	0.005SEK/kWh	-	
	가정 및 상업용	0.204~0.265SEK/kWh (2007.1.1~)	-	

주: 1) 1993. 1. 1 폐지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수송용 경유를 3가지로 분류
 3) 1987년 중반 이후, 수송용 경유의 유황함유량 비중이 연간 평균 0.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대부분의 경우 경유는 0.1%에도 못 미치는 유황함유량의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수송용 경유의 유황세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음.
 4) 휘발유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는 휘발유세(gasoline tax)라고 하며, 환경효과에 따라 차등화됨.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2nd Quarter, 2007.

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환경세(green tax)는 1988년 4월 1일 ‘일반환경보호법(General Environmental Provision Act)’ 에 일반연료부과금(general fuel charge)의 신설이라는 신규 조항이 추가 시행됨으로써 그 기초를 마련하였다. 환경세의 기초가 마련되기 이전의 과세체계는 자동차연료 등 동일한 세원에 각기 다른 명칭과 다른 목적의 부과금들이 중복 부과되었는데, 신규 조항의 추가로 중복 부과되던 과세를 통합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국기환

네덜란드의 환경세는 일반연료부과금의 신설이라는 신규 조항의 추가로 중복 부과되던 과세를 통합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에너지규제세로
 증가한 세수는 다른 세금의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재순환시켰으며,
 세수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의 사용자 부담분 인하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낮추는 데 사용하였다.

경정책계획(National Environment Policy Plan : NEPP) 을 발표하여, 2010
 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70~9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국가
 환경정책계획에서는 국가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필요한 지출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연료부과금의 요율을 인상하였고, 연료별 이산화탄소 함유
 량에 비례하여 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1990년 2월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일반연료세를 1.5배
 인상하여 연료세 전체를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고 1991년에
 는 연료세의 일반환경세 부문과 탄소세 부문을 같이 인상하였다. 그리고 1992
 년에는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일반연료부과금을 보통세인 일반연료(general
 fuel tax)로 전환하고 연료세의 50%를 이산화탄소 함유량에 따라, 나머지 50%
 를 발열량에 따라 과세하는 EC안을 채택하였다. 이 개정으로 탄소세 부분이 대
 폭 강화되었고, 에너지세와 환경세가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되어 재정의 효율성
 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6년부터는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세인 ‘에너지규제세
 (Regulatory Tax on Energy)’가 신설되어 가정, 소규모 사업장, 사무실 건물
 의 에너지 사용에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절약을 유
 도하였다. 에너지규제세로 증가한 세수는 다른 세금의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
 로 세수를 재순환시켰으며, 세수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사용자
 부담분 인하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낮추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1996
 년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증가한 세수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0.19% 감소시키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이용하였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득자와 고령자 면
 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정용과 비상업용 모든 에너지원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
 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의 부가
 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용·수송용 경유와 산업 및 전력발전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특별소비세
 로 가정용 경질유, 경유, 휘발유 등에 의무비축비(Compulsory Storage Fee)를
 부과하여 에너지 가격에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용 중질유에 대해서는 2001년 4
 월 이후부터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환경보호세에 에너지세(ECO tax)가 새로 추가되어 환경보호세 및 에너
 지세가 부과된다. 즉, 천연가스 일정한도(연간 1천만^m) 사용량에 대해 세금을
 차등부과하고 800^m 미만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표 5〉 네덜란드의 에너지관련 세제(2007년 2분기 기준)

유종	개별소비세(excise tax)	특별세
		환경보호세 및 에너지세(ECO tax)
산업용 저유황연료유	32.11EUR/ℓ (2005.1.1~)	
가정용 경질연료유 ¹⁾	0.21767EUR/ℓ (2007.1.1~)	
수송용 경유 ²⁾	0.377EUR/ℓ (2007.10.1~)	
휘발유 ³⁾	0.686EUR/ℓ (2007.10.1~)	
천연가스 ⁴⁾	11.70EUR/107kcal (2004.1.1~)	7.8~153.1EUR/m ³ (2007)
석탄	-	-
전기 ⁵⁾	-	0.0005~0.0716EUR/kWh (2007)

주: 1) 특성 ①농도: 0.84t/kℓ ②발열량: 10,100kcal/kg
 2) 특성 ①농도: 0.83t/kℓ
 3) 특성 ①농도: 0.74t/kℓ ②납함유량: 0.4g/ℓ, 유연휘발유는 1996년까지 시판됨.
 4) 천연가스의 에너지세(Eco-tax)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특히 일정한도(연간 1천만m³)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세율이 차등부과되며, 800m³ 미만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5) 전기에는 에너지세(Eco-tax)가 부과되며 전기사용량에 따라 세율이 차등화됨.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2nd Quarter, 2007.

덴마크의 에너지관련 세제를 살펴보면, 에너지세와 유탄세, 탄소세로 구성되어 있다.

라. 덴마크

덴마크는 1987년 국제연합에 설치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Our Common Future'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1988년 발표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계획」 가운데, 에너지, 운수, 농업 등과 관련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각 담당부서는 에너지, 운수, 삼림, 농업, 수자원, 폐기물에 대해 부문별 대책 계획을 책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반드시 지구온난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획에 의해 GHGs 삭감도 행해졌다고 덴마크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덴마크의 에너지관련 세제를 살펴보면, 에너지세와 유탄세, 탄소세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세는 1990년 4월 발표한 '에너지 2000'이라는 보고서를 계기로 1992년 에너지 소비 감소와 이산화탄소 저감을 목표로 도입하였으며 휘발유, 천연가스, 바이오연료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CO₂ 배출원에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1992년 5월부터 산업용 연료를 제외한 가정 및 공공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탄소 1톤당 100DKK(덴마크 크로네)를 탄소세로 부과하였으며, 1993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등록 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탄소 톤당 50DKK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환경세의 적용분야가 매



에너지세 확대로 인해 증대된 세수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와 소규모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이용되고 있다.

우 광범위하였다. 반면 에너지세는 탄소세에 비해 좀 더 차등화되어 있는데, 각각의 에너지제품과 에너지제품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에 대해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전기발전용 연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덴마크에서 탄소세 도입 이전의 에너지관련 세제는 산업용 연료를 제외한 수송용 연료와 경유, 중유, LPG, 등유, 석탄, 천연가스, 전력에 대해 부과되는 에너지세와 CFCs와 할론에 대한 환경세가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었으나, 1993년의 세계개혁에 의해 환경관련 간접세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다.

덴마크는 1995년의 세계개편으로 에너지세가 확대되고 천연가스와 CO₂를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에너지세 확대로 인해 증대된 세수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와 소규모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원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2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25%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산업 및 전력발전용 에너지원과 상업용·수송용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준다. 이러한 에너지관련 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의 질은 많은 개선 효과를 보았으나, 세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다. 즉, SO₂세로 인해 황 함유량은 상당히 감축되었으며(약 40~50% 감소), 부수적으로 CO₂ 발생량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고유황연료에서 저유황연료, 또는 천연가스의 사용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SO₂ 1kg당 10DKK의 세금을 부과하는 유황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유황세의 경우, 연료의 황함유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기세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에 과세하는 형태(즉, 소비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는 비과세되며 총수입의 40%에 해당하는 CO₂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오존파괴 물질과 가솔린의 납 함유에 대해서도 환경세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표 6〉 덴마크의 에너지관련 세제(2007년 2분기 기준)

유종		개별소비세	특별세	
			탄소세	유황세
자유항 연료유 ¹⁾²⁾	세울	-	288DDK/t (2005.1.1~)	100DDK/t (2000.1.1~)
	환급 ⁴⁾	-	10% (2000.1.1~)	-
경질 연료유 ³⁾	세울	1,857DDK/ℓ (2005.1.1~)	243DDK/ℓ (2005.1.1~)	-
	환급	산업용은 전액 환급	산업용 및 가정용에 대해 10% (1998.1.1~)	-
수송용 경유		2.487DDK/ℓ (2005.1.1~)	0.243DDK/ℓ (2005.1.1~)	-
무연휘발유		3.81DDK/ℓ (2005.1.1~)	0.22DDK/ℓ (2005.1.1~)	-
천연가스 ⁵⁾		2.020DDK/m ³ (2002.1.1~)	0.220EUR/m ³ (1996.1.1~)	-
석탄(coal)	세울	191EUR/t (2002.1.1~)	242DDK/t (1993.1.1~)	96DDK/kg sulphur (2002.1.1~)
	환급	산업용은 전액 환급	산업용에 대해 50% 환급 (1993.1.1~)	-
전기(electricity)		0.53DDK/kWh (2005.1.1~)	0.09DDK/kWh ⁶⁾ (2005.1.1~)	-

주: 1) 특상: ①황함유량: 0.5% ②점도: 3,500Ns/m² ③발량: 9,750cal/kg
 2) 유황함유량이 0.5%인 증질유 1kg당 0.1DDK 유황세율적용
 3) 특상: ①농도(density): 0.88t/kℓ ②발열량: 10,200cal/kg
 4)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종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로 환급체계 도입
 5) 가정용에만 적용
 6) 산업용은 2003년 1월 1일부터 40% 환급

자료: OECD, Energy Price and Taxes, 2nd Quarter, 2007.

영국에서 기후변화세를 통한 세수입은 고용자의 국민보험 분담금의 삭감이나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보조금, 에너지절약 정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환원되어 사용하였다.

마. 영국

영국은 일찍이 지구온난화 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후변동조약이 채택되기 이전인 1990년 9월에 발표된 환경백서(This Common Inheritance)에서 영국이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영국에서 경제적 수단인 기후변화세나 국내배출량 거래제도가 계속 도입된 것은 영국이 지향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03년,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백서 「에너지의 미래-저탄소 경제의 설립」(Our Energy Future Creating a Low Carbon Economy)²⁾을 발간하였다.

2) <http://www.dti.gov.uk/energy/whitepaper/ourenergyfuture.pdf>



에너지 사용기업이 정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주협정인 기후변화협정을 맺어 에너지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에 80%의 감세조치를 적용한다.

이렇게 지구온난화 대책에 앞장섰던 영국은 석탄, 가스 및 전력, LPG에 대해서 에너지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1996년 10월 쓰레기매입세, 2001년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를 도입하였다. 쓰레기매입세로 인한 추가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의 사용자 부담분을 0.2%포인트 낮추는 데 사용되고, 기후변화세를 통한 세수입은 고용자의 국민보험 분담금의 삭감이나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보조금, 에너지절약 정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환원되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새로 채취한 모래, 자갈과 바위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한 추가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의 사용자 부담분을 0.1%포인트 낮추는 데 이용하였다.

기후변화세는 2000년 3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발표된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me)을 통해 시행이 결정되었는데, 산업, 농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스부문 및 발전공급 등의 에너지 전환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은 제외되며, 가정부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사용량 이치를 사용해야 한다.

〈표 7〉 영국의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세율

연료	1999	2003	2007.4.1~	2008.4.1~
석탄	0.21pence/kWh	0.15pence/kWh	1.201pence/kWh	1.242pence/kWh
가스	0.21pence/kWh	0.15pence/kWh	0.154pence/kWh	0.159pence/kWh
전기	0.60pence/kWh	0.43pence/kWh	0.441pence/kWh	0.456pence/kWh
LPG*		0.07pence/kWh	0.985pence/kWh	1.018pence/kWh

주: * 차량용 제외
자료: UK HM Customs and Excise(2003·2007)

한편 기후변화세 관련 조항 중에는 국제경쟁력, 환경, 지역에 대한 영향을 배려해 주는 면제·경감조치가 있는데, 에너지 사용기업이 정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주협정인 기후변화협정을 맺어 에너지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에 80%의 감세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지역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파이프라인 계획이 진행중인 북부 아일랜드에서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해서는 5년간 비과세한다.

〈표 8〉 영국의 기후변화세 관련 조항

구분	1999	2000
면세	가계부문, 운송연료	가계부문, 운송연료, 새로운 재생에너지, 양질의 CHP ¹⁾ , 철도화물 견인용 전기
CCA에 합의한 에너지집중산업에 대한 공제	50%	80%
NIC ²⁾ 공제	0.5%	0.3%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기금	5천만	1억 5천만
기대세수입	17억 5천만(2001/2)	10억(2001/2)
CO ₂ 감소 기대치	1.5mtC(2010)	기후변화세부터 2mtC(2010) CCA로부터 2mtC
세율변화	인플레이션 범위 내에서 증가	인플레이션 범위 내에서 증가

주: 1)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2)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자료: UK HM Customs and Excise(2003)

노르웨이의 탄소세 도입은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까지 함께 고려된 에너지세제로 평가되고 있다.

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대부분의 전력을 거의 100%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CO₂ 배출량은 유럽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 강수량이 적으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금까지 수출 중심으로 운영하여 온 천연가스를 발전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르웨�포도 1991년 소득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강화하는 세계개편을 단행하면서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나, 당시의 탄소세는 탄소함유량에 비례하여 세율이 책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의 환급제도와 면세제도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탄소세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이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르웨이의 탄소세 도입은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까지 함께 고려된 에너지세제로 평가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에너지관련 조세정책은 모든 형태의 에너지원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excise tax)와 환경관련 특별세로 유탕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25%이며, 산업부문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상업목적으로 사



독일은 1999년 석유 및 전기에 대한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친환경 세계개편을 추진하였다.

용되는 수송용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해 준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의 경우에는 황합유량에 따라 0.05%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한다. 또한 산업 및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중질에너지유와 경질에너지유의 경우, 유향합유량 0.25%당 0.07NKR/ℓ의 유향세가 과세되나, 만일 최종 소비 전에 함유된 유향이 제거된다면(주로 산업용) 세금은 감면된다.

〈표 9〉 노르웨이의 에너지관련 세제(2007년 2분기 기준)

유종	개별소비세 (excise tax)	특별세	
		유향세	탄소세
중질연료유 ¹⁾	0NOK/kℓ(1993.1.1~)	70NOK/kℓ(1991.1.1~)	520NOK/kℓ(2005.1.1~)
저유향연료유 ²⁾	0NOK/kℓ(1995.1.1~)	70NOK/kℓ(1995.1.1~)	540NOK/kℓ(2007.1.1~)
경질연료유 ³⁾	0NOK/kℓ(1993.1.1~)	70NOK/kℓ(1991.1.1~)	520NOK/kℓ(2005.1.1~)
수송용 경유	3.5NOK/ℓ(2007.1.1~)	-	-
휘발유	4.17NOK/ℓ(2007.1.1~)	-	0.80NOK/ℓ (2007.1.1~)

주: 1) 특성: 유향합유량: 1994년 이후 1%, 추정농도: 0.98ℓ/kℓ

2) 특성: 유향합유량: 2001년 평균 0.09%이고 최대 0.2%, 농도: 0.82~0.86ℓ/kℓ

3) 특성: 농도: 0.85ℓ/kℓ (산업용), 0.83ℓ/kℓ (가정용), 유향합유량이 0.05% 미만인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자료: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2nd Quarter 2007.

사. 독일

독일은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온난화 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 6월에 각의 결정으로 환경장관의 감독하에 부처를 통합한 CO₂ 삭감작업 그룹을 설치하였다. 작업그룹은 기후보전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제언을 행하였으며, 연방의회의 기후변동 문제 검토위원회와 더불어 150개 이상의 삭감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장기적인 목표로서 2002년 9월에 발표한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³⁾에서,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침으로 GHGs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80%까지 삭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독일은 1999년 석유 및 전기에 대한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친환경 세계개편을 추진하였다. 모든 석유류 제품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19%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산업 및 전력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3) <http://www.umweltbundesamt.org/tpdk-k/2135.pdf>

그리고 독일은 에너지관련 특별세로서 1994년 4월부터 환경세(Eco Tax)를 도입하였고 석유류 제품에 긴급비축기금(Contribution to Emergency Storage Fund)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01년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에 의하여 환경관련 세를 기존 세제의 전환과 관련한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오염자부담원칙 차원을 넘어 세수기반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세수 중립적 환경세제 개편의 틀 속에서 기존의 소득관련세를 감면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42%에서 25%로, 개인소득세는 53%에서 42%로 각각 낮아졌다. 이를 통하여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형 자동차나 공공수송수단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환경오염을 오염자부담원칙 차원을 넘어 세수기반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세수중립적 환경세제 개편의 틀 속에서 기존의 소득관련세를 감면하였다.

〈표 10〉 독일의 에너지관련 세제(2007년 2분기)

유 종	개별소비세	긴급비축기금	환경세
고유황연료유	25EUR/t (2003.1.1~)	3.70EUR/t (2007.4.1~)	-
경질연료유	61.35EUR/kℓ (2002.1~)	3.50EUR/kℓ (2007.4.1~)	가정: 20.45EUR/kℓ 산업: 4.09EUR/kℓ (1999.4.1~)
수송용 경유	0.470EUR/ℓ (2003.1.1~)	0.0035EUR/ℓ (2003.4.1~)	0.1535EUR/ℓ (2003.1.1~)
휘발유	0.6545EUR/ℓ (2003.1.1~)	0.0042EUR/ℓ (2007.4.1~)	0.153EUR/ℓ (2003.1.1~)
천연가스	-	25.21EUR/107kcal (1999.4.1~)	가정: 19.03EUR/107kcal 산업: 3.81EUR/107kcal (1999.4.1~)

자료: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2nd quarter, 2007

아. 일본

일본은 1993년 「환경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2004년 11월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규 환경세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환경세의 구체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지구온난화 대책의 경제적 수단으로서 환경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다. 즉, 2002년 6월 경제재정회의가 발표한 「경제재정운영과 구조



일본에서 환경세의
구체안은 환경세 세수입을
에너지 절약기기의 보급 등
온난화 대책에 사용하는
외에 고용대책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를 통해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는 등 환경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환경성이 제출한 신규 환경세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2007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성의 「환경세의 구체안」에서의 과세대상은 모든 화석연료와 전기이며, 이를 다시 상류과세대상과 하류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휘발유·경유·등유·LPG는 상류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석유 정제회사로부터 매출단계 또는 제품 수입단계에 과세하고, 석탄·중유·천연가스·도시가스·전기·제트연료는 하류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비 시점에서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얻어진 환경세 세수입은 에너지 절약기기의 보급 등 온난화 대책에 사용하는 외에 고용대책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환경성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을 처음 주장한 2004년에는 탄소 1톤당 3,600엔을 과세함으로써 예상되는 세수입 1조엔을 온난화 대책에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경제 및 산업계의 반발로 과세액을 낮추기로 계획하고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삭감목표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06년 「환경세의 구체안」에는 탄소 1톤당 2,400엔으로 세율을 낮추었다. 이렇게 세율을 낮추어 도입될 경우 그 세수규모도 줄어 약 3,700억엔(산업 약 1,600억엔, 업무 및 기타 약 1,100억엔, 가정 약 1,000억엔)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표 11〉 일본의 에너지원별 환경세 도입안 (2006년)

(단위: 엔/단위량)

에너지원	단위	세율
석탄	kg	1.58
휘발유	ℓ	1.52
등유	ℓ	0.82 ¹⁾
경유	ℓ	1.72
제트연료	ℓ	1.61
중유	ℓ	1.80
천연가스	ℓ	1.76
LPG	kg	1.96
도시가스	m ³	1.38 ²⁾
전기	kWh	0.25 ^{2),3)}

주: 1) 등유에 대해서는 세율을 일률적으로 1/2로 경감

2) 도시가스, 전기에 대해서는 원 연료과세분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에 모두 전기된 경우의 세율에 상당하는 율

3) 전기관련 배출 계수는 총 전원 평균에 기초함.

자료: 環境省, 「環境税の具体案」, 2006. 10.

그리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1992년 지구세미나에서 「경단련 지구환경헌장」을 책정하고 환경문제의 인식이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요건이라는 기본이념을 정하여 환경보전을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경단련은 「환경행동지주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의 35개 업종의 CO₂ 배출량이 1990년 기준 5억 795만 t-CO₂로, 이것은 1990년도 일본 전체 CO₂ 배출량 11억 2,210만 t-CO₂의 약 45.3%에 상당한다. 따라서 경단련은 환경행동지주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2010년에 CO₂ 배출량이 5.9% 증가한 5억 3,795만 t-CO₂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1997~2002년도 6년간 평균 CO₂ 배출량은 5억 322만 t-CO₂로 1990년 대비 0.9% 감소하였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환경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환경가계부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환경가계부란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기록하여 배출한 CO₂를 점검하는 것이다.

〈표 12〉 산업계 전체(산업부문 및 에너지 전환부분)의 CO₂ 배출량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10
CO ₂ 배출량 (t-CO ₂)	5억 795만	5억 2423만	4억 9668만	5억 693만	5억 332만	4억 8964만	4억 9851만	1990년도 수준 이하
'90년도 대비 증가율(%)		3.2	▽2.2	▽0.2	▽0.9	▽3.6	▽1.9	

자료: 일본 환경성(<http://www.env.go.jp>)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환경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환경가계부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환경가계부란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가솔린 등)를 기록하여 배출한 CO₂를 점검하는 것이다. 환경가계부는 환경성(ECO family web site)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며, 가정에서의 CO₂배출량 10% 감소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현행 일본의 에너지관련 세제는 〈표 13〉과 같다. 가솔린에는 '휘발유세'와 '지방도로세'가, 대형 트럭 등이 이용하는 경유(디젤)에는 '경유거래세'가 택시 등이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는 '석유가스세'가 부과된다. 또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원유관세'(석유나 천연가스 수입에 과세), '석유석탄세'(석유·석탄·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입에 과세), '항공기연료세', '전원개발촉진세'(전력 판매에 과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에너지관련 세제는 OECD의 환경관련 세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는 에너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에너지의 이용을 줄여 환경악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관련 세금은 '에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의 도입은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지대책', '도로정비', '공항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표 13〉 일본의 환경관련 세제 (현행)

환경 관련세 조치	명 칭
자동차연료관계 기타 물품세 (부가가치 이외)	휘발유세 (가솔린) 지방도로세 (가솔린) 경유거래세 (경유) 석유가스세 (LPG)
기타 에너지제품 기타 물품세	원유 등 관세 석유석탄세 항공연료과세 전원개발촉진세
기타 에너지제품 유황함유량	공해건강피해보상을 위한 오염부하량 부과금
자동차관련세 판매/물품/등록세 (차종에 따라 차별화)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직접세규정 환경투자/촉진상각	다양한 환경관련 조세특별조치
항공수송소음	공항특별착륙료

2. 주요 선진국의 정책시사점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명시적으로 환경세를 도입·시행하였다.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기존의 에너지에 대한 과세 외에도 CO₂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하였다. 또한 영국은 최근 2001년부터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를 부과하여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NIC)의 부담을 완화시켰고, 일본 역시 탄소세 개념의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의 도입은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호주의 경우 1989년 탄소 톤당 3.5\$로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부과금(greenhouse levy)을 제안했으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이익을 감소시키고 국내 투자 계획을 변경할 우려가 있다는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일본 역시 호주와 유사한 이유

로 아직까지 환경세 도입이 경제산업성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국가들은 향후 환경 및 에너지정책의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련 조세의 과세구조를 일반소비세 외에 에너지세, 환경세, 유향세, 탄소세로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명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시행한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효율개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협정 수단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환경세가 목적세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통세의 형식으로 운용되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활용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및 투자의 증대를 유인하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세수중립적(revenue-neutral) 세제개편 차원에서 비환경관련 세제에서 환경관련 세제로 세부담을 이동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nvironmental tax reform, ETR)의 총규모는 최근 연간베이스 기준으로 약 250억유로로 매우 크다. 이들 국가는 <표 14> 및 <부표 1>에서와 같이 주로 소득세 부담(특히 노동)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진행하여 왔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의 연구 프로젝트(Cambridge Econometrics, 2007)인 유럽 주요국의 ETR 시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의 세제개편은 분석구간 1994~2012에 있어 실행 국가들 모두의 최종 에너지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고 동시에 고용과 경제성장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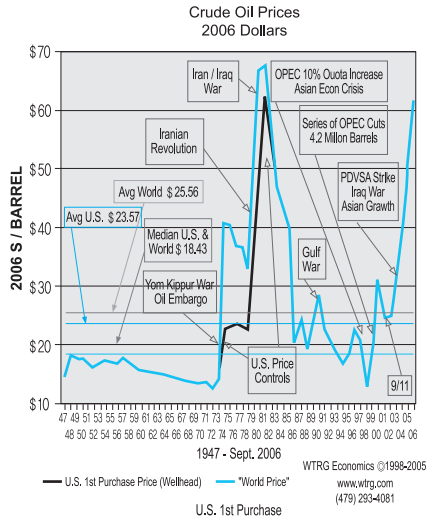
환경세가 목적세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통세의 형식으로 운용되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활용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및 투자의 증대를 유인하는 이중배당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표 14> 유럽의 주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nvironmental tax reform)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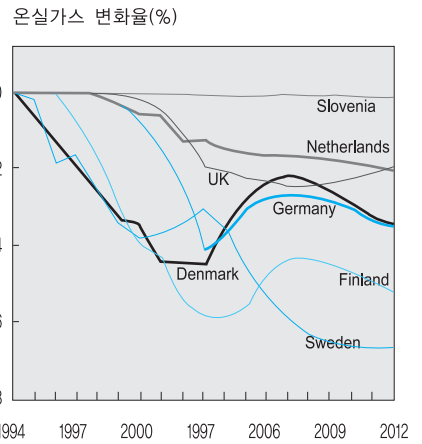
국가(연도)	내용
스웨덴(1990, 2001); 핀란드(1997, 1998)	피용자의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es, labor taxes)나 사회보장기여금 경감을 위해 명시적 에너지-환경세로 대체; 스웨덴은 최근 10년간 프로그램(2001-2010)으로 진행
영국(1999, 2001, 2002); 덴마크(1992, 1995, 1998)	영국의 경우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기후변화세/CO ₂ 세 등으로 이동; 덴마크는 사회보장기여금, 중서민층의 개인소득세를 인하를 에너지관련 세제 인상으로 대체
독일(1998, 2003); 네덜란드(1996, 1998)	다소 복합적임; 독일은 주로 피용자/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네덜란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개인소득, 법인소득에서 에너지나 CO ₂ , 수질, 폐기물로 세부담 이동
슬로베니아(1997)	에너지세가 탄소세로 전환. 그러나 명시적인 ETR의 의미는 약함

유럽 주요국의 ETR 시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분석구간 1994~2012에 있어 실행 국가들 모두의 최종 에너지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고 동시에 고용과 경제성장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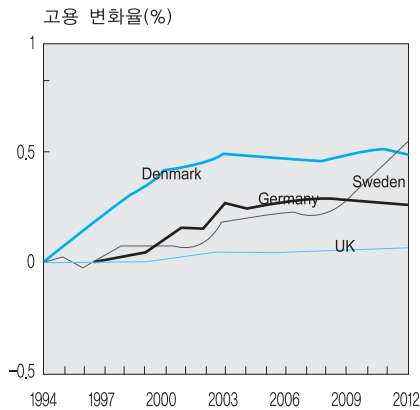
[그림 2]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TR) 실행국가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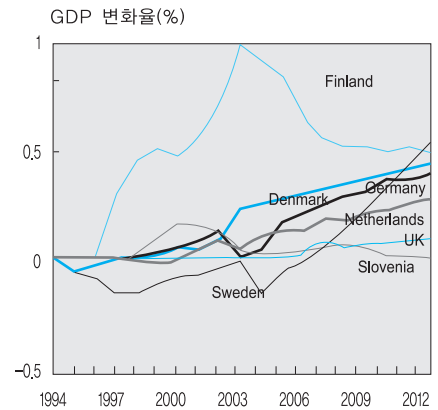
(a) 유가변동



(b) 유럽 ETR의 GHG 변화효과



(c) ETR의 고용효과



(d) ETR의 GDP효과

주: GDP % 차이는 기준시나리오(ETR)와 반사실적 시나리오(no ETR)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Cambridge Econometrics Group(2007), COMETR project

IV. 결론

전 세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목표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시장기능적 정책수단(market-based instrument)으로서 환경 및 에너지관련 세제의 환경친화적 유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화·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전반적인 중장기 세계개편 차원에서 유럽의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의 사례와 같이 명시적으로 소득세제 등 기타 세제의 조정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식이나, 관련 세수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인력·자본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환경관련 세제로서 유류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직 이산화탄소 및 NOx 등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이 정확하게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환경개선의 상위목표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이나 SOC 구축 및 교육지출 특별회계 등의 부차적 목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그 “환경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향후 교토의정서의 2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에너지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세 도입 등의 관련 세계개편의 필요성 또한 점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고조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세계개편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먼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에는 이를 일시적/한시적으로 계속 연장하기보다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령, ‘에너지소비세’)로 전환하여 보통세적 성격으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과세가 가지는 교통관련 유류소비 본연의 외부성에 대한 교정 역할을 제고하고, 현재로서는 매우 미약한 환경세로서의 인식을 가격신호 기능에 충분히 담보함이 요구된다(즉 현행 교통세는 에너지소비에 따른 세금이므로 일차적인 주요 정책목표가 ‘환경’ 이지 ‘교통·건설’의 확대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 세제의 과세기반 확대를 위하여 현재 석탄, LNG가 특정 정책적 필요에 따라 비과세·저율과세되고 있는 것을 소비왜곡으로 인한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정상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환경관련 세제로서 유류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환경개선의 상위목표보다는 부차적 목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그 “환경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의 시장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충실하게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경제 내 생산기술
구조 및 소비패턴의 친환경화를
일관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단기적 경기부양 목표나 기타 특정의 요인들에 의하여 에너지나 교통관련 세제를 일정기간 완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에너지의 시장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충실하게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경제 내 생산기술 구조 및 소비패턴의 친환경화를 일관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로 인하여 일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의 마련도 전략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보호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실시 예정인 EITC(근로장려세제)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관련 세부담의 증가는 정확한 소득과악에 근거한 직접적 재정정보조를 통하여 적극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정산업의 국제경쟁력 손실 보전이나 생필품 성격의 에너지제품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은, '조세지출(사전적 세금의 비과세·감면)' 보다는 취약계층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재정지출(사후적 재정지원 및 직접 보조)'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복잡한 세제를 점진적으로 단순화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협약의 감축의무 이행에 대비하여 이러한 방향의 환경관련 세제 강화는 기존의 소득관련 세제 완화와 적극적으로 연계(가령, 유럽의 ETR과 같이 전반적 조세시스템의 개혁 차원)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⁴⁾.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단들이 중장기적으로 통합·조율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관련 조세 및 예산당국을 상설화하고 그 실질적 기능을 제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IPF

<참고문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제3차 정부종합대책(05~07년) 확정」, 2005. 2.
 김승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 방향」, 『재정포럼』, 2006년 10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6.10.
 김승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한국재정학회-국회 2007 에너지세제 정책세미나, 2007. 9.
 나성린, 「환경세 도입가능성과 그 경제적 효과: 선진국의 환경세」, 국제무역경

4)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노동관련 조세왜곡의 감소를 통한 이중배당가설의 효과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이나 소득세제 중 법인과세나 자본관련 과세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이중배당의 모색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영연구원, 1998.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 200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교토 의정서 발효 대비 선진국 대응 동향」, 2005. 2.
- 산업자원부, 「교토의정서 발효, 민관합동 대응 본격 착수」, 2005.
-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자원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004. 6.
- 재정경제부, 「외국의 환경세 도입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003. 8.
- 한화진, 「교토의정서 체제의 의미와 정책 방향」, 『환경포럼』, 제8권 제5호, 2004. 7.
- 環境省, 「環境税の具体案」, 2004. 11.
- Anderson, M. et al., *Competitiveness Effects of Environmental Tax Reform* (COMETR) project, NERI, Denmark, 2007.
- Bovenberg, A. and de Mooij, “Environmental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94, pp. 1085~1089.
- Fullerton, D., “Environmental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87, 1997, pp. 245~251.
- Keller, K. M. Hall, S.-R. Kim, D.F. Bradford, and M. Oppenheimer, “Avoiding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Climatic Change*, Vol. 73, No. 3,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5. 12, pp. 227~238.
- Kim, S.-R.,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1: No.1, Article 4,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2002.
- Nordhaus, W.D. and J. Boyer, *Warming the World: Economic Models of Global Warming*, MIT Press, Cambridge, MA, 2000.
- OECD, *The Political Economy of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Paris, OECD, 2006.
- Pigou, A.C., *A Study in Public Finance*, Macmillan, London, 1947.
- Parry, I. W. H., “Pollution Taxes and Revenue Recycling,”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9, 1995, pp. 64~77
- Pearce, D., “The Role of Carbon Taxes in Adjusting to Global Warming,” *The Economic Journal* 101, 1991, pp. 938~48.



West S. and R. Williams, “Empirical Estimates for Environmental Policy Making in a Second-Best Setting,” *NBER Working Paper* 1033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Cambridge, MA, 2004. (also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pp. 593~617, 2007)

〈부표 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으로 인한 주요 세부담 이동 추세(EU-15)

국 가	세부담 이동 추세		비고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이동 규모	
	이전	이후			
덴 마 크	1993	개인소득세의 세율인하	연료, 전기, 폐기물에 대해서 부과되던 기존 세율 인상, 수돗물, 폐수와 소평백에 대한 신규 과세, 급여세 (payroll tax)	소득세의 감소는 환경세 120억DKR의 증대로 보전; 급여세 220억DKR, 과세기준(110억DKR) 확대와 같은 방법	1998년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세제개편 첫 해 제외) 1998년 GDP의 3.9%의 세부담 이동과 GDP의 1% 수준의 환경세 증대
	1995	사회보장기여금 축소, 부수적인 연금 지급,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가보조금 투입 축소	에너지세 확대와 천연가스와 SO ₂ 에 대한 신규 과세	에너지세로 인한 세수 대부분은 고용주사회보장기여금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와 소규모 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제공됨	세수중립적 세제개편; 2000년 환경세로부터의 예상세수 GDP의 0.2%
	1998	중·저소득층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 인하	재산세와 에너지세의 확대 (15~25%)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편은 없었음
핀 란 드	1997	개인소득(주정부와 지방정부)과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에너지, 탄소세와 매립세	세수 55억FIM 감소는 에너지세(11억FIM)와 높은 매립세율(3억FIM)에 의한 세수로 일부 조달	세수중립적 세제개편 없었음 감소: GDP의 0.9% 증대: GDP의 0.2%
	1998	노동과세	에너지환경세에 법인이윤세 추가(과세기준 확대)	노동과세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액: 1998년 15억FIM 1999년 35억FIM	세수중립적 세제개편 없었음 1998년 15억FIM과 1999년 25억FIM 적자 예상 1999년 GDP의 0.5% 감소 1999년 GDP의 0.14% 증대
독 일	1999 ('03년 까지 5년계획)	고용주와 종업원 사회보장기여금	에너지(석유, 천연가스와 전기)	2003년 고용주와 종업원 연금부담금의 약 1.7% 감소와 2003년 에너지세 관련 세수는 186억EUR 임	세수중립적 세제개편 일정; 10억EUR은 통합예산에 배정 2003년 세수:187억 EUR(GDP의 0.9%)

〈부표 1〉의 계속

국 가	세부담 이동 추세		비고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이동 규모
	이전	이후		
네 덜 드 ¹⁾	1996 개인소득세, 법인이윤, 고용주사회보장기여금	에너지와 CO ₂ (에너지규제세), 물, 폐기물 처리	세수의 환류(recycled back)(1996) • 고용주사회보장기금 0.19% 부담감소 •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300Dfl 확대 • 100,000Dfl 에 대한 법인세 3% 인하 • 소득세율 0.6% 인하 • 일반소득자 면세점 80Dfl과 고령자 면세점 100Dfl로 상향 • 약 9.3억Dfl은 산업, 가정으로 12.3억Dfl 환류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편
스 웨 덴	1991 개인소득세와 개인 사회보장기여금	에너지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와 마찬가지로 CO ₂ 세와 CO ₂ 세를 포함한 환경에너지세	환경친화적 조세개편(ETR)은 주요 재정개혁 일부임. 개인소득세는 710억SEK 감소하고 환경세는 180억SEK 증대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편이 없었음
	2001 개인소득세와 개인 사회보장기여금	환경세	10개년 계획 말인 2010년에 총 310억SKR(33억EUR) (GDP의 1.4%에 상응하는 수준) 세부담이 이동-환경세로의 세부담 이동(green tax shift)은 중대한 세제개편의 일부	2003년까지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은 없었음(최초 3년간); 환경세로부터의 80억SEK(GDP의 약 0.3% 수준) 추가
영 국	1996 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NIC)	매립세 부과	세수는 고용주국민보험기여금(NIC)을 10.2%에서 10%로 0.2% 축소하는 데에 이용	'04년 예산(예상치) 60억UKL(GDP의 0.05%)
	2001 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NIC)	기후변화세(CCL) 하에서 에너지/이산화탄소 배출	세수는 고용주국민보험기여금(NIC)을 0.3% 줄이는 데에 이용; 세수는 약 10억UKL로 추정	'04년 예산(예상치) 80억UKL(GDP의 0.06%)
	2002 고용주 국민보험기여금(NIC)	골재(모래, 자갈, 돌가루) 부과	세수는 고용주국민보험기여금(NIC)을 0.1% 축소하는 데에 이용; 세수는 2002/3에 약 3.05억UKL로 추정	'04년 예산(예상치) 30억UKL(GDP의 0.02%)

주: 1) 1999년, 2000년 및 2001년 에너지규제세를 확대하였음.

자료: Stefan Speck, "Green Tax and Budget Reform as a Public Policy Promoting Green Growth: European Experiences," UNESCAP, 2007.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byungj@kipi.re.kr)

I. 서론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로 대표되는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보충급여방식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근로유인 저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 위한 것이다. 즉 빈곤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주므로 수혜자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되는 비활동성 함정(Inactivity trap)에 빠지게 된다. 반면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비근로시 혜택이 없고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혜택도 증가하게(혹은 일정하게 유지하게)되어 비활동성 함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공을 목적으로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인 EITC 형태의 근로장려세제(KEITC; Korean Earned Income Tax Credit)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소득과약 현실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 있으며 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외국과 비교하여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미래시점에 발생 가능한 복지의존 문제

근로연계복지제도는 기존의 보충급여방식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근로유인 저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상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층이라 할 수 있다.

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구축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범위 및 급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은 제도운영 경험의 부족, 소득과약 정도, 재정여건 등이 고려된 결과로 이러한 소규모제도 설계는 향후 본격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다른 복지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에 있어서 관할부처의 차이, 효율성과 빈곤 완화 목적의 균형에 대한 관점 차이 등으로 인해 충분한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초기 제도 시행과 함께 동시에 향후 제도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OECD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향후 발전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국, 영국 등 이미 EITC를 시행한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근로연계복지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입법하였다. 근로시장에 존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상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층이라 할 수 있다. 차상위층은 제도 구성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의 소득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기피할 정도로 낮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차상위층의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시기는 2008년으로 최초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일어나는 2009년에 발생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둘째, 당해연도 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셋째는 무주택가구로서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이다. 여기서 부양자녀 2인 이상의 가구로 한정한 것은 아동빈곤 해결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며 부양자녀 1인 인 경우가 배제된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소득은 부부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1,700만원 기준은 가구의 지원 필요성을 나타내는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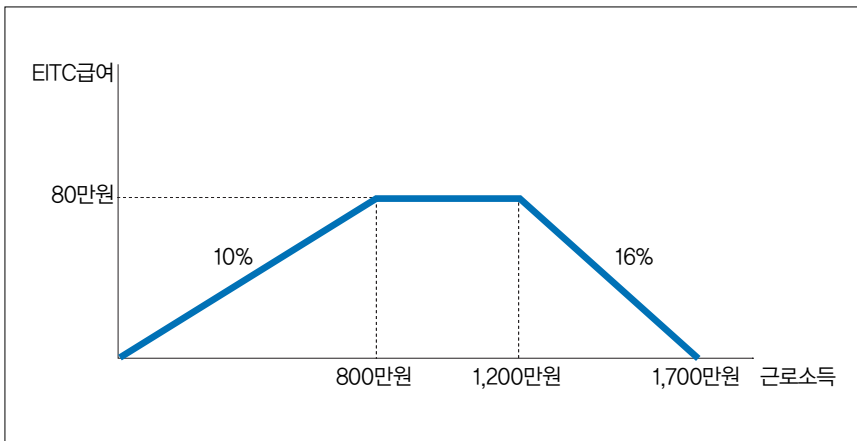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재정경제부, 2007). 재산기준의 도입은 낮은 소득파악률에 대한 보완적 기능수행을 위한 것으로 합산대상 재산의 범위는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500만원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500만원 이상인 경우), 골프장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장려금의 수준은 최대 80만원으로 구체적인 장려금 수준은 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으로 구성된 급여지급모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800만원의 소득까지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800만~1200만원 구간에는 최대지급액인 80만원, 1,200만~1,700만원 구간에는 소득당 16%의 비율로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두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근로능력자가 근로장려세제로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초기연도 근로장려금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현격히 낮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소득보장 방법에 관해서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두 제도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서도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탈수급 저해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시점에 존재하는 급여인하폭을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수준은 최대 80만원으로 구체적인 장려금 수준은 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으로 구성된 급여지급모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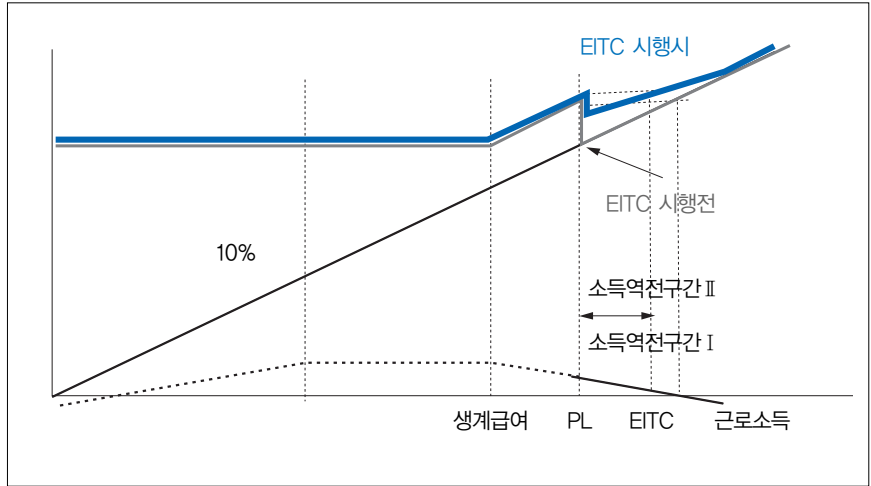
[그림 1] 근로장려금 모형





근로연계복지제도는 이전의 복지제도와 달리 수급대상자들의 근로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높여 성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시에 빈곤 완화라는 복지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2] EITC제도 시행과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요인 변화



Ⅲ. 근로연계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

근로연계복지제도는 이전의 복지제도와 달리 수급대상자들의 근로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높여 성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시에 빈곤 완화라는 복지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유형이 제시되었으며 각 제도유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발전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제기되는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설계에 중요한 요인들은 OECD(2005)의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1. 빈곤 완화와 근로유인 제고의 조화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는 근로유인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효과를 통해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유인을 높여줄 수 있는 대체효과는 복지제도가 수급자의 임금률(혹은 한계세율)에 영향을 미칠 때만 나타나게 되는데 기존의 많은 복지제도는 수급자의 임금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임금을 인상을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EITC와 같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경우에도 급여를 축소하는 점감구간(Phase out region)에서 수급자의 한계세율을 높여 근로유인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빈곤 완화와 함께 근로유인을 높여줄 수 있는(혹은 근로유인 하락을 줄여줄 수 있는) 복지제도 구축이 중요하며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근로연계복지제도이다.

비경제활동자 혹은 복지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높여야 한다. 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첫째, 근로에 따른 추가급여를 더욱 높이는 방안과, 둘째, 비근로시 제공되는 기본적 복지급여를 감축하여 근로에 따른 급여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안은 EITC 등과 같이 근로에 대한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첫 번째 방식이며, 두 번째 방안은 기존 복지급여가 높은 수준일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방안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가 빈곤 완화라는 기존 정책과 상충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유인 제공이라는 목표와 상대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최적조세이론에 따르면 개인효용의 합으로 정의되는 사회효용함수에서 개인별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법칙을 가정하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점감률이 0에 가까운 EITC와 같은 근로연계복지제도도 최적조세이론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Mirrlees; 1971).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낮아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기존 복지혜택 축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기준 공공부문의 사회지출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5.7%로 미국, 일본의 16.2%, 17.7%보다 낮으며 OECD 30개국 평균인 20.7%보다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 수준과 비교한 상대지출 수준(=사회지출 비중/국민부담률)도 우리나라는 0.2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58, 미국 0.63, 일본 0.6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근로유인 증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 수준의 잠재적 증가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자 혹은 복지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높여야 한다.



지출의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 왜곡 축소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의 조정을 통한
한계세율의 인하도 근로유인
제고에 중요하다.

〈표 1〉 공공사회지출의 비중(2003년)

(단위: GDP 대비 비중(%))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공공사회지출(A)	5.7	16.2	20.6	17.7	27.3	28.7	20.7
국민부담률(B)	25.3	25.7	35.4	25.7	35.5	43.1	35.8
상대지출(A/B)	0.22	0.63	0.58	0.69	0.77	0.67	0.58

자료: OECD, OECD.Stat ver4.4., 2007.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낮은 점과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운영도 단순하여 제도 수혜계층의 탈수급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즉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가능한 제도가 거의 없게 되어 탈수급 시점에서 한계세율이 매우 높아져 탈출유인이 낮아지게 된다. 지출의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 왜곡 축소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의 조정을 통한 한계세율의 인하도 근로유인 제고에 중요하다.

〈표 2〉 주요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국가	지원제도 유형			
	재정지원	세제지원 ¹⁾		비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I TANF Food Stamp Medicaid 일반부조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비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세액공제(CDCTC) 입양비용세액공제(AC) 노인 및 장애인 세액공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income support) Jobseeker's Allowance 장애근로수당 Housing benefits 소득부가 사회기금, 기타 수당 등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세액공제(WTC) 자녀세액공제(CTC) 	
		비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금공제급여(CTB)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보육료지원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장려세제(EITC) 	
		비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세액공제 	

주: 1) 세제지원은 소득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비인적공제(사회보험료, 장애, 의료 등) 모두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음.

2. 급여수준과 점감률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급여수준과 점감률의 결정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급여수준은 노동시장참여로 인한 세후소득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점감률도 중상위 계층에 대한 근로유인 저해효과가 낮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공급의 탄성치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공급의 탄성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참여의 증대(extensive margin)와 노동시간의 증대(intensive margin)가 그것이다.

최적이전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Saez(2002)의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태 변화가 주로 노동시장참가율 증대로 나타난다면 미국형 EITC를 중심으로 낮은 급여수준 보장체제가 바람직하다. 즉 기존 복지제도를 통해 보장된 급여수준이 낮으면서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증가하는 근로연계복지모형이다. 비경제활동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을 때 보장된 급여수준이 낮아야 하며 동시에 노동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감소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공급 효과가 주로 노동시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장된 급여수준이 높고 점감률이 높은 프로그램(Negative income tax 등)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Saez(2002)의 모형은 장기실업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이를 반영할 경우 근로연계형 모형의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OECD; 2005). 따라서 우리나라 이전지출 프로그램 설계시에도 보장급여 수준이 높은 기존 복지제도와 근로연계형 제도를 노동시장의 반응 정도에 따라 조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공급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시간의 증대(intensive margin)에 대한 접근이 많았으며 본 연구의 직접적 관심대상인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참가율 변화(extensive margin)에 대한 접근은 많지 않다. 노동시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한 Lee(2004)에 따르면 탄력성은 0.5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한 전병목(2006)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노동공급이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상위 10% 계층의 경우 탄력성이 0.79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탄력성은 고소득 계층일수록 높아지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45~64세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추정한 전병목·장용성(2005)의 경우에는 기대노동소득 1만원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 이전지출 프로그램 설계시에도 보장급여 수준이 높은 기존 복지제도와 근로연계형 제도를 노동시장의 반응 정도에 따라 조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급여에 대한
노동시간 탄력성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0.12~0.1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탄력성으로 환산하면 약 0.13~0.20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상위계층의 노동시간 탄력성은 대체적으로 0.5 수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참가 탄력성은 저소득층의 경우 성별, 가족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EITC 확대의 효과를 분석한 Eissa & Liebman(1996)에 따르면 편모의 경제활동참가 탄력성은 0.6¹⁾으로 추정되어 노동시간 탄력성보다 높은 수준이나 근로남편을 둔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탄력성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탄력성은 45~65세의 중고령층을 전체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미국의 추정치와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만약 미국, 영국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부 중 남자에 대한 효과보다 배우자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를 지닌다면, EITC와 같은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표 3〉 노동공급탄력성의 비교

연구자	한국	연구자	미국
Chul-in Lee(2004)	0.56(im)	Gruber & Saez(2000)	0.4(im)
전병목(2006)	0.79(상위10%, im)	Kopczuk(2003)	0.53(im)
-	-	Saez(2004)	0~0.17(im) 0.62(상위1%, im)
전병목 · 장용성(2005)	0.13~0.20 (45~65세, em)	Eissa & Liebman(1996)	0.6(편모, em)

주: im은 intensive margin, em은 extensive margin을 나타냄.

〈표 4〉 미국 EITC 아동 2인가구 점감률 변화

(단위: %)

	1975~1978	1979~1984	1985~1986	1991	1993	1995	1996~
점감률	10	12.5	12.22	12.36	13.93	20.22	21.06

자료: Hotz and Scholz (2001).

1) Saez(2002)에서 재인용

3. 복지혜택의 기간 제한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수급기간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수급기간의 제한은 우선 잠재 수급자들의 직장 유지 혹은 직업능력개발 유인, 수급시 수급 탈피의지를 강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급기간을 모두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 복지제도 운영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급기간의 제한 가능성은 급여수급자의 임금증가 가능성과 기간 제한 자체가 가지는 임금상승을 위한 노력에 달려 있다. 수급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들의 임금증가 노력 및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활 확률을 낮추게 된다.

Grogger(2000)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는 복지급여의 기간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수급률이 14~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 Self-Sufficiency Project(SSP)의 경우에도 복지제도를 떠나는 경우 3년간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복지제도 수급률 하락과 고용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Lin et al., 1998, OECD, 2005에서 재인용). 그러나 SSP의 경우 6~12개월의 기간한도가 잠재수급자의 자활 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너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Card et al., 2001).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수급기간 제한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 제한으로 개인의 노력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 배제로 인한 소득감소가 상당히 높아야 하나 현행 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로장려세제의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직업으로의 이동을 유도할 만큼 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로와 연계되어 지원함으로써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연계복지제도보다는 오히려 지원규모가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간 제한 도입이 바람직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간 제한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참가 및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검토해 볼 만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정액교부금으로 주정부에서 운용하는 소득보조 프로그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²⁾에 대해 수급기

근로연계복지제도보다는 오히려 지원규모가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간 제한 도입이 바람직하다.

2) 동 제도의 수급대상은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임신한 여성이 있는 가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급여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7시간 이하의
부분근로자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2006년
기준 3.6%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형태 변경의 유연성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간을 평생 6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TANF 수급개시 후 적어도 24개월
이내에 근로개시 의무를 가지며, 일주일에 최소 30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노동시장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4. 근로시간 조건

근로연계복지제도에서 근로시간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이 근로시간 변경을 통해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수혜
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서는 근로시간을 40시간, 즉 Full-time 근로자로 한정하는 조건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여건 및 아동양육 비용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 조건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Full-time 일자
리가 부족할 경우,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
성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노동시장참가에 한계가 있다. 근로
시간 조건 부여의 또 다른 목적은 개인의 근로행위가 생계유지의 목적임을 확
인하는 기능도 있다.

영국의 경우 과거 Family Credit(1988~1999)를 Working Family Tax
Credit(1999~2003, 이후 Working Tax Credit)로 변경하면서 시간요건을 24
시간/주에서 16시간/주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비경제활동 편부/
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크게 증대하였으며 동시에 참여자의 근로시간을 축소시
켰다(Blundel and Hoynes, 2001). 참여자의 근로시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30시간/주 이상 근로자에 대한 보너스제도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미국 EITC의
경우, 최소근로시간에 대한 조건은 부과하지 않아 근로시간 증대를 담보하기
위한 시간급 중심³⁾의 지원제도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MaCurdy et al., 2004).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급여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
다. 우선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7시간 이하의 부분근로자 비중은 증가추
세에 있지만 여전히 2006년 기준 3.6%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형태 변경의 유연
성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3) Wage-based EITC와 Wage-subsidy EITC가 제안되었다. 전자는 근로자 시간급의 일정비율을 실
제 근로시간에 곱하여 지급하는 방
안이며 후자는 사전적으로 설정된
시간급 수준과 실제 근로자 시간급
과의 차이를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안이다.

〈표 5〉 취업자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천명, %)

주당근로시간	2000	2006
1~17시간	582(2.8)	821(3.5)
18~29시간	889(4.2)	1,189(5.1)
30시간 이상	19,685(93.0)	21,141(91.3)
합계	21,156(100.0)	23,151(100.0)
평균 근로시간(시간)	50.6	47.9

주: 괄호 안은 구성비
자료: 통계청, KOSIS.

장기적으로는 파트타임 등
부분근로 확대 경향을
감안하여 단위임금에 기준한
근로연계급여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은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높은 근로자에게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시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은 일용직 혹은 파트타임근로는 대부분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취업형태를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일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일용직의 임금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파트타임 등 부분근로 확대 경향을 감안하여 단위임금에 기준한 근로연계급여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6〉 소득계층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일반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가구
상용직	73.5	12.8	5.2
임시직	13.9	28.1	27
일용직	12.5	58.9	6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004.

한편, 근로시간 조건의 적용은 제도구성의 차이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제도별 역할 분담을 통해 특정영역의 개인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빈곤 완화를 위해 16시간/주 미만 근로자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Income Support 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근로자는 Working Tax Credit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제도별 영역구분보다는 다양한 제도의 효과를 종합하여 빈곤 완화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즉 EITC뿐만 아니라 TANF, Food Stamp 등의 제도를 중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빈곤 완화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시간에



현행 지원제도는
총량적으로 보육료 부담을
낮추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금액이 소득증가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감소하여
근로시간 증대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대한 역유인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제도의 구성이 단순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조건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영국과 같은 근로시간 중심의 제도 구성보다는 미국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빈곤 완화와 근로유인 제공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보육지원정책과의 조화

자녀보육비용은 편부/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편부/편모 혹은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참여 결정에 임금 혹은 EITC 등의 제도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문 제임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복지제도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보육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OECD, 2005).

이론적으로도 Connelly(1992), Averett et al.(1995)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가 총임금보다 전체 임금에서 자녀보육비용 및 보육지원금을 함께 고려한 실효 임금에 의존함을 보였다. 실효임금에 대한 반응 정도도 상당히 높으며 여성의 노동 공급 탄성치가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Averett et al., 1995). 그러나 보육 비용에 대한 지원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일제 유치원과 같은 조기교육시스템의 제공이 여성의 노동시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질 좋은 보육시설 및 보육비용 지원은 여성의 근로유인을 높여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연계복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 연계복지제도의 운영과 함께 보육지원은 예산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지원대상 선정을 요구한다. 상당한 지원규모의 EITC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의 경우에도 Child Tax Credit 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여 근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0~5세 자녀를 둔 중하위소득층에 대해 보육료를 차등지원(30~100%)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7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도시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며 그 대상은 평균소득의 130%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는 총량적으로 보육료 부담을 낮추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금액이 소득증가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감소하여 근로시간 증대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인을 제공 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의 감소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산에 대한 고려는 재산수준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현재의 소득인정액시스템에서 수급요건만을 정하는 정액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형성된 재산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의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 내 이차소득자의 근로참가 유인을 급격히 낮추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차등보육료 확대 계획

(단위: %)

소득계층	지원 비율(0~4세)			
	2007	2008	2009	2010
법정저소득층	100	100	100	100
차상위계층	100	100	100	100
평균소득의 50%	80	80	80	
평균소득의 60%				
평균소득의 70%	50	60	60	60
평균소득의 100%	20	30		
평균소득의 130%	-	-	30	30

자료: 여성가족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인센티브 효과로 인해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고용주가 임금 인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근로복지연계제도로 인한 노동공급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최저임금제와의 조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공과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연계복지제도와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빈곤 완화라는 측면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는 최저임금제도보다 장점이 있다. 우선 빈곤의 기준은 가구단위로 결정되는 데 반해 최저임금은 개인기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 다양한 가구형태에 대한 고려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빈곤가구와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이다(OECD, 1998). 최저임금의 목적으로 소득불평등의 해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저임금의 해소 등이 명목적으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빈곤 해소 측면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인센티브 효과로 인해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고용주가 임금 인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근로복지연계제도로 인한 노동공급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근로연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고용주의 근로연계복지제도 수급자에 대한 임금 인하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복지제도의 급여규모가 상당한 미국,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은 소득분포 및 근로자들의 기술숙련도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분포 격차가 크게 되면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것이 빈곤 완화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도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숙련도 분포 또한 소득분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최저임금 수준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은 각 국가별 소득분포, 조세 및 복지제도, 국가의 재분배 성향 등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향후 최저임금제도와와의 조화를 사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ITC제도를 통해 상당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소득의 1인당 GDP 대비 비중은 각각 24.2%, 52.3%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중간 수준인 36.7%로 앞서 두 국가와의 비교에서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렵다. 소득분포와 관련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가구의 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0.47로 세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제철학과 최저 수준을 규정하는 연방정부의 역할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은 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가 우리와 유사한 수준(0.33 v.s. 0.37)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여준다. 이는 유럽의 복지국가적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고용주의 근로연계복지제도 수급자에 대한 임금 인하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미국보다는 높고 복지국가적 경향을 띠는 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과 소득불평등도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고, 영국은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보다 큰 최저임금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만 2007~2008년 동안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21.6% 이상 증가된 3,770원으로 인상될 것이므로 그 증가속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4) 미국의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별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표 8〉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2006)

(단위: 각국 통화단위)

	최저임금(A)	일인당GDP(B)	비율(A/B)	지니계수
한국(2006)	3,100원	17,555,394	36.7	0.33
영국(2006~2007)	£3.30~5.35	21,281	52.3	0.37(2005~2006)
미국(2006)	\$5.15	44,190	24.2	0.47

주: 1. 미국은 민주당 집권에 따라 연방 최저임금을 2007년 \$5.85, 2008년 \$6.55, 2009년 \$7.25로 상향 예정. 영국은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며 £5.35는 22세 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이는 2007년 10월부터 £3.40~5.52로 상향 예정. 우리나라도 2007년 3,48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3,770원으로 인상될 예정
 2. 최저임금 연간소득은 주 40시간, 52주 근무 기준
 3. 지니계수는 총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국조세연구원(2007), 영국 Jones(2007), 미국 www/census/gov 홈페이지 참조
 자료: 최저임금은 각국의 노동부 Homepage, 일인당 GDP는 IMF Database.

훈련프로그램,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잘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자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⁵⁾과의 조화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유효성은 비경제활동자 혹은 실업자에 대한 훈련 및 구직서비스 활동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 즉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저소득근로자 혹은 비경제활동자의 근로유인 제공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활 가능한 수준의 높은 임금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단기적인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자활로의 연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즉 비숙련노동자가 대부분인 근로연계복지제도 수혜자가 근로를 통해 높은 임금 일자리로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서도 비숙련노동자가 급격한 소득증가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Gladden et al(2000)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 참여자의 임금증가율은 기껏해야 연간 3~4%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훈련프로그램,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잘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자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프로그램의 경우, 미숙련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여줄 것이며 고용서비스는 보다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이미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상당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추가적인 재원도 상당히 조달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고용안정사업은 2004년 말 기준 2.5조원, 훈련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0조원의 기금을 유지하고 있다.

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다시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Labor market training, Youth measures, Subsidized employment, Employment measures for disabled로 세분화할 수 있음 (OECD database).



현재의 낮은 공공지출
규모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스템을 추구하지
않는 한 향후 동 분야의 정책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고용보험 기금 조성(200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수입	소 계	3,394,929	446,415	834,023	2,114,491
	고용보험료	2,880,305	316,363	729,248	1,834,694
지출	소 계	2,374,096	147,283	642,387	1,584,426
	수지차	1,020,833	299,132	191,636	530,065
누적적립금		8,448,533	2,459,932	1,045,836	4,942,765

자료: 『고용보험통계연보 2005』, 『고용보험사업 및 재정운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2005.

장기적인 제도변경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공지출 규모도 동 부분의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의 지출수준은 2003년 기준 GDP의 0.157%로 미국의 0.144%를 제외하면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동시에 국민부담률로 정규화할 경우에도 상대지출 비율은 국민부담 대비 0.62%로 미국의 0.56%를 제외하면 다른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외국에 비해 낮지만, 현재의 낮은 공공지출 규모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스템을 추구하지 않는 한 향후 동 분야의 정책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2003년)

(단위: GDP 대비 비중(%))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ALMP지출(A)	0.157	0.144	0.512	0.298	1.124	1.067	0.590
국민부담률(B)	25.3	25.7	35.4	25.7	35.5	43.1	35.8
상대지출 (A/B×100)	0.62	0.56	1.45	1.16	3.17	2.48	1.65

자료: OECD, OECD.Stat ver4.4, 2007.

IV. 시사점

근로장려금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향후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향후 제도발전 방향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빈곤 완화와 근로유인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는 향후 제도 확대의 여지가 높으며 그 효과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지원정책, 최저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과의 조화를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에서 나타나는 높은 한계세율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장려세제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을 때 수혜기간 등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경우에도 향후 EITC 급여 증가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자활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보육지원정책도 노동시장참가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KIP**

근로자의 자활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보육지원정책도 노동시장참가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 『고용보험사업 및 재정운용방안 연구』, 2005.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EITC) 해설』, 2007.
 전병목,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6-07, 2006.
 전병목 · 장용성, 『조세 ·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5-05, 2005.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우리나라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2):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한국조세연구원, 2007.

Bryan, J. "Targeted Programs V the Basic Income Guarantee: an Examination of the Efficiency Costs of Different Forms of Redistribution,"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34, 2005, pp. 3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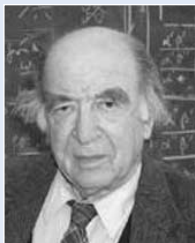
Card, D., C. Micalopoulos, P. Robins, "The Limits to Wage Growth: Measuring the Growth Rate of Wages for Recent Welfare Leavers," NBER Working Paper No. 8444, 2001.

Gladden, T., C. Taber, "Wage Progression among Less Skilled Workers," in *Finding Jobs: work and welfare reform*, D. Card and R. Blank



- editors,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2000.
- Gregg, P., J. Wadsworth, "Two Sides to Every Story: Measuring the Polarization of Work," CEP discussion paper No. 632, 2004.
- Grogger, J., "Time Limits and Welfare Use," NBER Working Paper No. 7709, 2000.
- Hotz, V. Joseph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Working Paper*, Vol 8078, Jan. 2001.
- Jones, Franci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5-0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7.
- Lee, Chul-In, "The Effects of the Korean Income Taxation on Labor Supply and Welfare: a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Approach Combined with IV Estimat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20, No. 2, 2004.
- Leigh, Andrew, "Earned Income Tax Credits and Labor Supply: New Evidence from a British Natural Experiment," *National Tax Journal*, Vol. LX, No. 2, pp. 2007, 205~224.
- Mirrlees, J., "An Exploration in the Theory of Optimum Income Tax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38, 1971, pp. 175~208.
- OECD, *Increasing Financial Incentives to Work: The Role of In-Work Benefits*, Working Part on Employment, DELSA/ELSA/WP5, 2005.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1998.
- OECD, *OECD.Stat ver4.4.*, 2007.
- Saez, E., "Optimal Income Transfers Programs: Intensive Versus Extensive Labour Supply Respons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2002, pp. 1039~1073.

2007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후르비치



▲ 매스킨



▲ 마이어슨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미네소타대 레오니트 후르비치 교수, 프린스턴고등연구소 에릭 매스킨 교수, 시카고대 로저 마이어슨 교수 세 명을 공동 선정했다. 경제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기본적인 도구로서 제도설계이론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밝힌 선정 이유이다. 『재정포럼』에서는 이들의 생애와 학문세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도설계이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 레오 후르비치를 중심으로 -

“

개인이 참된 보고
또는 행동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 유인합치성
(incentive compatibility)을 갖도록
경제제도가 만들어져야 함을
이론적인 틀로 제시한 것이
후르비치 교수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jkim@kipf.re.kr)

스웨덴 왕립 과학원(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은 2007년도 노벨(Nobel)경제학상의 수상자로 미네소타대학의 레오니트 후르비치(Leonid Hurwicz) 교수, 프린스턴고등연구원의 에릭 매스킨(Eric S. Maskin) 교수, 그리고 시카고대학의 로저 마이어슨(Roger B. Myerson) 교수 세 명을 ‘제도설계이론의 기초를 제시한 이유로(for having laid the foundations of mechanism design theory)’ 공동 선정하였다.

필자는 미네소타대학 박사과정에서 레오(Leo) 후르비치 교수의 미시경제학, 제도설계이론 등의 과목을 수강하였고 그로부터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서의 지도를 받았다. 또한 매스킨 교수와 마이어슨 교수와도 일면식이 있고 그들의 연구영역에도 천착한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심오한 연구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

통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제도설계이론에 대한 소개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후르비치 교수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 제도설계이론의 개척자: 후르비치, 매스킨, 그리고 마이어슨

노벨상 선정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세 명의 석학은 ‘경제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기본적인 수리경제학적 도구’로서 제도설계이론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제도설계이론과 게임이론(Game Theory)의 차이를 이해하면 양자 모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게임이론은 게임의 규칙이 주어졌을 때 개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제도설계이론은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제도설계이론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더 고차원의 문제를 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4년과 2006년 게임이론의 거장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제도설계이론이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경제이론의 근간에 대한 평가가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개인의 합리성을 '개인 상호간의 관계적 합리성으로 확대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인 게임이론과 '집단의 합리성으로 확대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제도설계이론에 대한 시의적절한 선정이다.

1940~1950년대를 풍미한 게임이론이 제도설계이론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리라 짐작할 수 있겠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제도설계이론의 아버지가 레오(Leo) 후르비치 교수임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그는 1960년의 논문에서 제도(mechanisms)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창안하고 1972년의 논문에서 제도설계이론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인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을 정식화하였다. 그 후 후르비치 교수 본인 스스로 여러 방향으로 제도설계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궁극적으로 경제의 근본적인 변수들의 값에 따라 각각 최적화된 제도로 구성되는 기관(institutions)에 대한 분석도 본인 스스로 하였다.

제도설계이론을 낳은 이가 후르비치 교수라면, 제도설계이론을 키운 이는 매스킨과 마이어슨 교수이다.

매스킨 교수는 1977년에 소위 '내쉬시행'에 대한 분석을 완성함으로써 제도설계이론의 빅뱅을 일으켰다. 내쉬시행이란 어떤 사회적 목적이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의 (내쉬)균형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기 위한 절대조건이 무엇이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으로 그 조건을 매스킨 단조성(Maskin

monotonicity)이라 한다. 그 후에도 매스킨 교수는 본령이라 할 산업조직론을 비롯하여 정치경제학, 경매(auction)이론, 제도경제학 등 다방면에 걸쳐 제도설계이론의 세련성을 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마이어슨 교수는 베이저안 시현원칙 등을 통해 제도설계이론의 세련화에 공헌하였는데, 특히 1983년의 불가능성에 대한 논문으로 유명하다. 즉, 가장 간단한 형태의 거래인 일대일 거래에서조차, 만약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거래를 보장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최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도 마이어슨 교수는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규제 등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제도설계이론은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제도를 만들 때 궁극적으로 효과 있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센티브를 존중'하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전제로 한다. 각 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이 알려져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실제 시행(implement)되어 현실화되기까지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여건, 특성, 정보 등을 사회기관에 보고하고 그 보고에 준하여 정책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제도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이 거짓을 보고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참된 보고 또는 행동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을 갖도록 경제제도가 만들어져야 함을 이론적인 틀로 제시한 것이 후르비치 교수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개인의 유인을 고려하는 데에 실패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개인의 유인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타당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경제제도뿐만 아니라 옥션, 투표, 계약 등의 제도에도 개인의 유인합치성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설계되는데 제도설계이론의 결과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1979년에 요절한 천재 경제학자 엘리사 파츠너(Elisha Pazner)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되어 1985년에 출판된 기념논집 ‘사회적 목표와 조직’(Social Goals and Social Organization)에서 우리는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세 거두의 협력을 볼 수 있다. 후르비치 교수는 서론에서 전체적인 조망을, 매스킨 교수는 내쉬시행이론의 서베이를, 그리고 마이어슨 교수는 베이지안 균형과 유인합치성의 소개를 각각 전개하였다.

이들이 다른 10명의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파츠너 교수의 기념논집을 낸 것은 그가 소위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의 신선하고 새로운 개념인 공정성(fairness)을 여러모로 시도하고 정립하던 중 타계하였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와 분배적 정의에 대한 서구적 탐구의 시작은 멀리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원한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수리적 엄밀성에 근거하여 확고한 성과물을 낳는 지적 노력의 마라톤이 가능했던 것은 게임이론과 제도설계이론의 등장 덕분이라 말할 수 있다.

II. 레오 후르비치의 삶

레오니트 후르비치(Leonid Hurwicz)는 1917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1919년부터 폴란드에서 자라 1938년 바르샤바대학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이때 배운 경제학의 매력에 이끌려 런던대학 경제학부로 옮겨 거기서 경제학자 니콜라스 칼도(Nicholas Kaldor)에게서 잠시 사사받은 후 1939년 제네바로 건너갔다. 그러나 곧, 나치의 폴란드 침공 이후 스위스와 포르투갈 등을 전전공공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시카고대와 하버드대를 수학한 후 1942년에서 1944년까지 시카고대학에서 기상학(meteorology)을 강의하였는데, 이때 만난 부인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다.

1951년부터 줄곧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까지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후르비치 교수는 경제이론, 후생경제학, 재정학, 제도 및 기관이론, 수리경제학의 대가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애로우(Arrow) 교수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저를 통해 현대 수리경제학과 후생경제학의 기초를 닦은 후, 1960년 이후에는 제도설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자신의 연구물을 통해 또는 제자나 후배에 대한 연구 지도를 통해 ‘제도 및 기관이론’의 확장, ‘재정학 및 후생경제학’의 세련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이론’의 엄밀화에 기여하였다.

1994년 게임이론(Game Theory) 분야에서 하사니(Harsanyi), 내쉬(Nash), 그리고 쥘텐(Selten) 등 3명의 노(老)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할 때부터, 미네소타대학 경제학과에서는 노령의 후르비치 교수가 나이 때문에 향후 노벨상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이제 나이 90세에 이르러 후르비치 교수는 그의 창조물이라 할 수 있는 ‘제도설계이론’으로 노벨상을 공동수상함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후르비치 교수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잘못된 제도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의식을 공유' 하는 세대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수학적 논리의 세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제도의 현실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고찰' 하였다.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재능을 성실성으로 일궈내어 진실로 후세대에 남길 실천철학의 지평을 연 위인(Leo)이었다고 생각된다.

레오(Leo)의 교수법은 개인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당신이 개발하여 완성시킨 이론체계를 전수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가게' 하는 식이다. 이런 교수법을 통해 '제도설계이론'의 여러 대가들을 양성하여 여러 분야에 진출시켰다. 레오는 특히 학생들과의 면담시간을 아주 풍성한 일대일 학습의 시간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이때에 그가 주는 참고문헌, 관련 사례 등은 그의 백과사전식 사고의 일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정확하였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노벨상 수상자인 맥패든(McFadden) 교수의 박사학위 과정 지도 교수가 후르비치 교수였다는 사실이다. 제자나 동료들이 노벨상을 탈 때, 마치 연극 햄릿에서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햄릿의 부왕이었던 것처럼, 배후에서 공헌하고 길을 닦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던 레오 본인이 이제는 무대 중앙에 선 것이다. 2003년의 논문에서도 쉬운 용어로 완벽성을 갖추어 제도설계이론의 결과물을 내놓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KIPF**

<관련문헌>

Hurwicz, L., "Optimality and informational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processes," in Arrow, Karlin and Suppes (eds.), *Mathematical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Hurwicz, L., "On informationally decentralized systems," in Radner and McGuire (eds.), *Decision and Organization*, North-Holland, Amsterdam, 1972.

Hurwicz, L., Schmeidler, D. and H. Sonnenschein, *Social Goals and Social Organization: Essays in Memory of Elisha Pazn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5.

Hurwicz, L. and T. Marschak, "Comparing finite mechanisms," *Economic Theory* 21, 2003, pp. 783~841.

Maskin, E., "Nash equilibrium and welfare optimality," mimeo(1977). Published in 1999 i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6, pp. 23~38.

Myerson, R. and M. Satterthwaite, "Efficient mechanisms for bilateral trading," *Journal of Economic Theory* 28, 1983, pp. 265~281.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정책 ·

美-EU, 에탄올 면세 브라질협 거부

- WTO 비공개 협상.. “에탄올, 공산품 아닌 농산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에탄올을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자는 브라질 제의에 반대했다고 무역 소식통들이 5일 전했다.

소식통들은 지난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 공산품 관세 비공개 회동에서 브라질이 이 같이 제의했으나 미국과 EU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에탄올이 공산품이 아닌 농산품”이라는 이유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친환경 제품 장려를 위해 관세를 크게 낮추거나 면제하려는 것과 관련해 석유 대체품인 에탄올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EU는 에탄올이 농산물로 생산되는 ‘농산품’이라는 주장으로 반박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EU는 다른 친환경 석유 대체품은 ‘공산품’으로 분류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관측통들은 브라질의 경우 사탕수수를 원료로 에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주원료로

쓰는 미국이나 사탕무를 주로 사용하는 EU에 비해 원가가 싸게 먹힌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 1위 에탄올 생산국인 미국의 위상이 브라질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이들은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는 5일 이메일 성명에서 친환경 제품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문제에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연료 문제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WTO 회동에서는 페루가 유기농 제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자는 제안을 냈으나 역시 미국과 EU에 의해 거부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7-11-06]

미의회, 인터넷세금 부과 7년 더 유예

미 의회는 30일(현지시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를 향후 7년간 더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인터넷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한을 4년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16일 상원이 7년 연장안을 채택함에 따라 이를 논의, 상원안을 채택했다.

하원의 관련법안은 의원 238명의 동의를 얻어 상정됐으며, 이미 과반수를 넘어서 채택이 확실시됐었다.

이로써 인터넷 접속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오는 2011년까지 다시 유예됐다.

인터넷세금은 현재 전 세계에서 무료로 사용되는 인터넷 접속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찬반 양론을 불러왔었다.

의회는 지난 1998년 이와 관련해 처음 세금방지를 규정한 후 지난 2001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세금 부과 금지를 연장해 왔지만 한시적인 법안으로 계속 이어져 결국 인터넷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법안도 31일로 만료되는 2번째 연장안의 시한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세금부과 금지 쪽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인터넷에 대한 세금은 영구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세금부과 쪽도 드러내지 않은 채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실정이다. 영구 금지 법안을 제안한 의원은 존스누누(공화. 뉴햄프셔주), 존 와이든(민주. 오리건주), 존 메케인(공화. 애리조나주) 등 의원이다.

이 세금부과 금지안은 주세와 지방세, 연방세 등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기한을 가진 법안이어서 정당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2007-11-01]

중국 부가가치세 개편안, 곧 전국으로 확대

4년간의 시범 시행을 마치고 정부 관련부서는 부가가치세 개편 방안을 국무원에 보고했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에 재정부 부장 시에쉬런은 “앞으로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금체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개편안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 개편안은 당장이라도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정부는 아직 몇 가지 부분에서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은 수입과 지출 모두를 반영하며 비교적 계산이 편리하고 세율이 통일되어 있어 기업의 세금 중복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뒤 투자에 대한 세금의 차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방식이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바뀔 때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재정수입의 감소이다.

실제로 새로운 방안은 재정을 감소시킬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시켰다. 동북지역 시범 시행시 시범 기업들의 증가한 기계설비투자에 한해서만 시행키로 했다. 소식통은 “부가가치세 개편안의 전국적 실행 방식을 연도별로 비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기계설비 전액에 세금을 거둔 후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기업에게 돌려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업자본으로 사용될 것이다. 국가는 이를 미루지 않을 것이며 20%, 30%, 100%까지 점차 실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범 시행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을 정부에 돌려주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감소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안의 추진은 재정감소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업종이나 증가량 구분 없이 모두 이뤄져 기업의 지역 혹은 업계에



대한 투기를 막았으며 기업 고정자본의 갱신을 가속화시켰다.

[내일신문 2007-10-31]

日 · 태국 EPA 내달 1일 발효, 2,000품목 관세 인하 제외

내달 1일 발효되는 일본과 태국의 경제연합제휴협정(EPA)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태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에어컨과 타이어 등 약 2,000품목의 관세가 실질적으로 인하되지 않는다고 29일(현지시각) 닷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EPA 협정 조약에 따르면 태국에서 관세인하 대상이 된 품목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발효시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효되는 EPA에서는 에어컨과 타이어 등 약 2,000개 품목의 관세가 실제 인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2004년 일본과 태국은 EPA를 체결할 당시 최혜국세율(MFN세율)을 기준으로 관세 이하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태국 정부의 MFN세율 인하로 일부 품목의 세율이 역전되면서 EPA세율이 MFN세율보다 높아진 것이다.

내년 3월 말까지 EPA관세가 MFN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품목은 에어컨, 타이어, 엔진부품, 사진 필름 등 전체 중 4분의 1 정도이다.

일본은 EPA 체결로 동남아에 진출한 자동차 · 가전 기업들이 본국으로 부품을 들여올 때 관세 부담이 낮아져 완성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시아경제신문 2007-10-31]

프랑스, 탄소세 도입... 환경혁명 시작

프랑스가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제품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교토의정서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의 공산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해 우리나라 등 교토의정서 미비준국가들의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탄소세 등 급진적인 환경정책을 발표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부가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대신 에너지효율이 높아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은 세금을 대폭 삭감한다. 그리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모든 제품에 표기하는 ‘탄소 라벨제’를 도입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같은 제도 도입은 ‘환경혁명’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YTN 2007-10-29]

재정정책 ·

美 경제지표 악화... 경기침체 경고음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의외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3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장률은 지난 2분기보다도 0.1%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상무부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 기업투자 증가가 주택건설 부진을 보완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30일 미국 소비자신뢰지수와 도시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돼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미국 경제가 주택경기 침체와 신용 경색,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 민간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의 99.5에서 95.6으로 하락했다.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일대를 초토화했던 2005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향후 6개월 간의 경제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는 85에서 80.1로 떨어졌다.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연구센터의 린 프랑코 소장은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경기 둔화가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고용시장 악화의 전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도시주택가격 하락도 경기전망에 암운을 드리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 떨어져 1991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했다. 이 지수를 개발한 로버트 실러 매크로마켓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의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에 이은 ‘제2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천은 “9,150억달러 규모로 늘어난 신용카드 부채가 폭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지난달 내놓은 분기 실적이 2001년 이래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용카드로 인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천은 씨티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털 원, 워싱턴 뮤추얼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린 사실을 지적했다. 상환 불이행도 문제지만 최악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연계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대거 보유한 헤지펀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도 타격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계일보 2007-11-01]

英, 2008/09 Pre-Budget 발표

1. 주요 내용

- Darling 재무장관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며” 제하의 2007년 Pre-Budget 보고서와 중기재정 계획에서,



- 영국 경제는 2007년 3% → 2008년 2~2.5%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2008년중 정부의 차입목표를 40억파운드 증액된 380억파운드로 상향 조정
- 세출예산 규모(Total Public Spending)는 금년 5,890억파운드에서 2008년 6,170억파운드, 2009년 6,470억파운드, 2010년 6,780억파운드로 증액
- 세제개편 방향은 세수 확보와 함께 세제 단순화와 탈세 방지에 두고, 상속세(IHT) 면세한도 상향조정, 자본소득세제(CGT)를 18% 단일세율로 개편,
- 영국에 영구주소를 두지 않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법인세 인하(30% → 2008년부터 28%)를 추진하는 한편,
- 친환경적 세제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항공기 여객세 부과대상 변경, 에너지효율 제품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등 세제개편을 추진
- 이번 Pre-Budget 내용 중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야당 및 경제계로부터 거센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Darling 재무장관은 10월 22일 경제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본소득세제(CGT) 단일화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전망임에 따라, 정부의 차입목표를 40억파운드 증액된 380억파운드로 상향 조정
-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
- 2008/09 회계연도 Pre-Budget에서도 노동당 정부의 재정원칙인 Golden rule과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순차입은 2007년중 380억파운드, 2009년중 360파운드, 2010년중 310억파운드로 당초 전망보다 각각 40억파운드, 60억파운드, 30억파운드 증가하나, 2011년 280억파운드, 2012년 250억 파운드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는 2008년 80억파운드, 2009년 40억 파운드 적자를 기록하나, 2010년중 30억파운드, 2011년 90억파운드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 공공부채 비율을 미국, 일본, 유럽 경제권보다 낮은 39%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
- Golden rule은 일정한 경제기간 중 경상적 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자본적 지출을 위한 경우에만 차입)이며,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은 GDP에서 공공부채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임.

2. 2008회계연도 Pre-Budget의 주요 내용

나. 주요 세제개편 내용

가.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

- 영국 경제는 2007년중 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도는 당초 전망보다 0.5%p 하향된 2%~2.5%에 그치고, 2009년부터는 2.5~3%로 다소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영국 경제가 향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될

- 상속세(Inheritance Tax) 면세한도 상향조정
- 부부 합산을 허용하여 현재 30만파운드인 상속세 면세한도를 60만파운드로 배증하고, 2010년부터는 70만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 증여세 제도가 없는 영국은 부부 간 상속시 상속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배우자 간 면세한도를 합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상속세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된 것이며, 부부합산 대상 중

- Civil Partnership은 동성간 합법적으로 결혼한 경우임
-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 18% 단일세율 제도 도입
 - 현재 자본소득세제는 10% 기초세율, 20% 기본세율 및 40% 높은 세율의 3단계로 되어 있고 장기보유공제(Taper relief), 물가연동제(indexation)를 도입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18%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장기보유공제제도 등을 폐지
 - 자본소득세는 1965년 공평과세를 위하여 소득세에서 별도 분리하여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주로 부동산에 과세하는 우리의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 주식양도차익 등 일정액 이상의 자본소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는데, 연간 9,200파운드를 초과하는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하여 2,230파운드까지는 10% 기초세율(starting rate), 2,231~34,600파운드까지는 20% 기본세율(basic rate), 34,600파운드 초과 자본소득에 대하여는 40%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시 감면제도(보유기간에 따라 사업용 자산 7.5~75%, 비사업용 자산 3~40% 감면)를 운용하고, 사모펀드, 우리사주 등의 경우 장기보유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음
 - Non-Domicile Residents(영구주소가 영국에 없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 도입 추진
 - 7년 이상 장기 거주한 Non-Domicile Residents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향후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경우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영국에서 Domicile(영구 주소, 주소나 본적과는 다른 개념)을 영국 내에 두고 있는 거주자는 해외 발생소득도 신고해야 하나, 11만 5천명으로 추정되는 부유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경우 Domicile을 해외에 두고 영국 내 발생소득과 전입 송금에 한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2008년 4월부터 최근 10년중 7년 이상 영국에 거주하고도 Non-Domicile Residents 지위를 유지하려면 연간 3만파운드의 charge를 납부해야 함.
 - 야당인 보수당의 George Osborne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영국 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만 5천파운드를 부과하여 연간 35억파운드를 징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Darling 재무장관은 보수당 안대로는 6.5억파운드만 징수가능하며, 현재도 연간 40억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하는 의사, 간호사, 사업가와 같이 영국경제에 긴요한 Non -Doms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지적
 - Darling 재무장관은 소득을 비과세 대상인 자본으로 위장하거나 영국 내 거주기간을 속이려는 비거주자를 단속하여 8억파운드의 세수 확보를 기대
 - 법인세율을 내년 4월부터 현행 30%에서 28%로 2%p 인하
 - 07. 3월 예산안 발표 당시 Brown 재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임
 - 환경세제(Green Tax) 개편
 - 항공기여객세(Air Passenger Duty)의 부과대상을 현행 여객 수(number of individual passenger)에서 2009년부터 비행횟수(number of flights)로 변경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비제품에 대하여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 가전제품, 전등, 모터 등에 적용 예정인데,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세율은 미정



다. 주요 정책내용

(1) 교육

- 교육훈련 부문 예산을 2010년에 740억파운드
증액
- 과학기술 부문 예산을 3년간 60억파운드로 증액

(2) 보건

- 보건지출을 2007년 900억파운드 → 2010년까
지 1,100억파운드로 증액
- 보건분야 조사를 위한 단일 자금을 2010년까지
17억파운드 투입하여, 2006년에 발표된 David
Cooksey 경의 보건분야 검토보고서의 건의내용
을 시행

(3) 환경

- 환경관련 세제개편과 아울러, 환경부(Defra) 예
산을 2010년까지 40억파운드로 증액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고 이 중 8억파운드를 홍
수방지 대책에 투입
- 신설된 환경변형방지기금(Environment
Transformation Fund)의 초년도 예산으로 12
억파운드를 배정하여 에너지 신기술 투자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방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작전을 위하여 4
천억파운드를 추가 배정

(5) 치안

- 경찰, 국가안보 및 테러방지 관련 모든 정부부문
예산을 단일 회계로 통합하고, 연간 10억파운드
씩 향후 3년간 35억파운드를 투입

(6) 지방정부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인 카운슬세(Council

- Tax)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할 수 있도록 자치
단체 교부금을 증액 지원. 2010년까지 England
260억 파운드, Scotland 300억파운드, Wales
160억파운드, Northern Ireland 100억파운드
- 현재 국세인 비거주재산세(Non-Domestic
Rates) 과세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 비거주재산세(Non-Domestic Rates)는 사업
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흔히
Business Rates라고 불리는데, 국가에서 징수
하여 전액 지방에 인구 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일종의 조정재원임. 우리의 재산세와 달리 소
유자가 아닌 점유자(임차인 포함)에게 부과하
는데, 2007년 3월 예산안 발표 당시 법인세를
30% → 28%로 인하하는 대신, Business
Rates를 사실상 인상하여 언론 및 경제계 비
판 초래

(7) 국제원조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액을 2010년까지 90억
파운드로 증액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 간 및
다자 간 지원액을 배증
- Darling 재무장관은 2010년까지 모든 개도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

(8) 교통

- 도로 및 철도 확충 M1(런던-York 간 자동차전용
도로) 및 M25(런던순환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전
국 철도망 확충 사업을 위하여 2010년까지 매년
145억파운드 증액

(9) 주택

- 신규주택 공급을 현행 연간 20만채 → 2016년까
지 연간 24만채로 확대

(10) 사회보장

- 아동보육 가정에 대한 예산을 2008년부터 주당

- 20파운드로 배증하고 아동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2008년부터 매년 175파운드로 상향 조정
- 노인연금 세액공제(pension credit for Older people with a small pension)를 내년 4월부터 1인당 주당 5파운드씩 상향조정하고 부부의 경우 7.65파운드씩 상향
 - 사회보장(Social Care) 예산을 2010년까지 14억 파운드로 증액하고 연금생활자 및 장애자용 버스요금으로 2억파운드를 추가 배정
 - 불량주택 개량자금으로 향후 3년간 40억파운드를 배정

(11) 스포츠

-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예산을 2010년까지 22억파운드로 증액하여 2012년 런던올림픽 준비

[연합인포맥스 2007-10-30]

독일, 전기값 급등 원전폐기정책 재검토

- 환경문제 핵심은 폐기물 아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풍력보다 28% ↓

◆ 세계는 지금 원자력 헤게모니 싸움

최근 독일 전기요금은 급상승했다. 몇 년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더니 5년 전과 비교하면 50% 정도 전기요금이 올랐다.

이 같은 전기요금 상승은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민영 발전회사들이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다. 발전단가가 저렴해 전기요금 상승을 그나마 방어해 왔던 원자력발전소들이 정부의 원전폐기정책에 따라 2023년까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독일 전력 생산에서 26.3%를 차지하는 원전이 사라지면 전기요금은 더욱 크게 오를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 원전폐기정책은 정치적 결정

독일이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민당이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녹색당 힘을 빌려 집권하는 동안 수립됐다.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경제기술부의 한스 슈나이트 원자력담당관은 “시민당과 녹색당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연정을 구성해 집권하는 동안 폐기정책이 수립됐다”며 “원전폐기정책은 양당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압력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원전을 관리하는 민영회사들을 압박해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기폐쇄그룹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독일은 2004년과 2005년 원전 2기를 폐쇄해 현재는 17기가 남아 있다. 정책에 따르면 2023년까지 모든 원전이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 대체수단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폐기정책에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총선에서 기민당과 시민당이 대연정을 이루면서부터다. 총리로 선출된 앙겔라 메르켈 등 기민당 출신 인사들이 원전폐기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독일에서 한 번 결정된 정책을 재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원전폐기정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



문이다.

현재 독일에서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 단가는 1KW당 2.65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는 풍력은 1KW 당 8센트다.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조금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어떤 기업도 쉽사리 뛰어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슈나이더 담당관은 “원전을 풍력으로만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풍력발전기 1만 5,000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독일 내 풍력발전소는 900개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풍력발전소를 얼마나 늘리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고 실토했다.

◆ 원전 친환경성 부상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원전의 친환경성까지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원전만 한 게 없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평균 10g에 불과하다. 석탄에 비해 100분의 1, 석유에 비해 78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풍력보다도 28% 낮은 수준이다. 풍력은 설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반면 원전은 생산이나 운영 과정 모두에서 온실가스가 별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 운영으로 한 해 1억 5,00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예방되는 것으로 독일 정부는 추산한다.

독일 민영 원전회사인 EWN의 프리드리히 크라우제 이사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많이 지적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며 “환경 문제에서 핵심은 원전 폐기물이 아니라 바로 온실가스”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07-10-29]

中 사회보장기금, 미국계 PEF 지분 인수 협상중

중국의 국가사회보장기금(SSF)이 미국계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세 곳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FT는 이번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SSF가 지난 여름부터 칼라일,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TPG 등과 지분인수에 관한 협상을 벌여 왔으며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이 세 곳 중 한 곳의 지분 9.9%를 인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칼라일이 현재 해외투자 유치에 가장 공격적으로 임해 왔으며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와 아부다비의 국부펀드가 현재 칼라일의 지분을 소액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SF와 미국계 PEF 간 협상은 지난 여름 중국 국가외환투자공사(CIC)가 보유한 블랙스톤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하면서 지연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이는 미국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와 중국의 중신증권이 지난주 상호 10억달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T는 이번 협상이 중국의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을 암시한다고 풀이했다.

SSF는 지난 6월말 현재 4,600억위안(미화 약 615억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해외투자를 허용받았다.

[연합인포맥스 2007-10-30]

4/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12.1% 예상

- 내년 10.5~11.0% 경제성장률 예상
- 2008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 넘어서며 무역수지 흑자증가세 완화

- 4/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12.1%, 올 한해 11.6% 성장 예상

-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CCER)가 개최한 제11차 경제관찰보고회에서 중국경제연구센터는 올 4/4분기 중국의 GDP 증가율이 12.1%로 3/4분기의 11.5%보다 높고 CPI도 6.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이 발표한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송귀칭(宋國靑) 교수는 올해 CPI의 경우 7%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연구소 왕통산(汪同三) 소장은 올해 중국의 GDP증가율이 11.6%에 달해 지난해 11.1%보다 높은 수준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의 GDP 증가율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0.1%에서 2005년 10.4%, 2006년에는 11.1%로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에는 이러한 고성장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경제성장률 10.5~11.0% 전망

- 중국경제연구센터는 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0.5%로 전망하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고성장 추세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사회과학원도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약 11%로 예상함.

- 내년에도 중국의 소비, 투자, 수출의 급성장세는 여전할 것이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넘어서며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올해 3/4분기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8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8억달러가 증가해 전년동기 증가율이 68%에 달했으나 내년도 무역수지 흑자증가율은 2007년 흑자액보다 약 11%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추세분석팀은 2008년 중국의 투자총액을 17조 1,370억위안으로 전망했으며 위안화 절상과 수출증치세 환급조정책의 영향을 고려할 때 내년도 중국의 수입과 수출증가율이 각각 22.9%와 20.5%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초과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9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KOTRA, 경제무역정보 2007-10-30]

EU통계청, 2006년중 유로지역 재정수지 발표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정부지출이 감소한 반면 세수가 증대됨에 따라 2005년 2.5% → 2006년 1.5%로 크게 하락

- 나라별로는 이탈리아(-4.2% → -4.4%)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독일(-3.4% → -1.6%), 그리스(-5.1% → -2.5%)와 포르투갈(-6.1% → -3.9%) 등은 적자비율이 크게 축소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경기호조를 배경으로 GDP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정부부채는 소폭 증가에 그쳐 2005년 70.3% → 2006년 68.6%로 하락

- 나라별로는 벨기에(92.2% → 88.2%), 스페인(43.0% → 39.7%), 네덜란드(52.3% → 47.9%) 등의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개선



유로지역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추이

(단위 : 억유로, %)

	2003	2004	2005	2006
GDP	75,010	78,043	80,747	84,545
재정수지	-2,294	-2,193	-2,022	-1,292
재정수지/GDP	-3.1	-2.8	-2.5	-1.5
정부부채	51,865	54,280	56,772	58,019
정부부채/GDP	69.1	69.6	70.3	68.6

자료: EU 통계청

[한국은행, 주간해외정보 2007-10-30]

정책 흐름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확대로 지난 5년간 세부담 변화 미미
-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발굴
-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 이 자료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20%만 경감 혜택」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2007년 11월5일자 재정경제부의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편집자 주>

- 11월 1일자 연합뉴스, 문화일보 및 11월 2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보도한 정부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경감 혜택이 5명 중 1명에게만 돌아간다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에서 2007년 11월 5일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①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합한 1,624만명 중 실제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표 1천만원 초과 해당자는 21.3%인 346만명에 불과
- ②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경감률에서도 일관성이 없으며 누진성 원리와는 무관한 양태

재정경제부의 입장

- ① 소득세 납세자의 최소 43%가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경감되며, 소득증가에 따라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 전체 소득세 납세의무자 1,734만명 중 50.9%에 해당하는 882만명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과세미달자입니다.

• 과세미달자의 경우, 내고 있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세부담 경감의 혜택이 없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 '05년 귀속소득 기준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자 806만명 중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346만명(과세자의 43%)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바로 경감 혜택을 보게 됩니다.
- '05년 소득기준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자(460만명)* 중 상당수가 과표구간 조정이 시행되는 '08년에는 지난 3년간의 소득증가로 과표가 1천만원 이상으로 증가되어 과표구간 조정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3인가족 기준 연간 급여 2,700만원 수준

(단위: 천명, 억원, 천원, %)

과세표준	근로자	자영자	합계
0~1천만원	3,387(55.4)	1,210(62.1)	4,597(57.1)
1천만~4천만원	2,406(39.4)	519(26.7)	2,925(36.3)
4천만~8천만원	261 (4.3)	130 (6.6)	391 (4.8)
8천만원 초과	53 (0.9)	90 (4.6)	143 (1.8)
과세자 합계	6,107(100)	1,949(100)	8,056(100)
과세 미달자	6,866 (52.9%)	1,955 (44.7%)	8,821 (50.9%)
전체 인원	12,973	4,370	17,343

* '05년 귀속소득 기준(국세통계연보 2006년)

* 근로자 전체 인원은 통계청 취업자 중 상시근로자 수

* 자영자 전체 인원과 과세미달자는 국세청 추정자료(국세통계연보 2006)

· '08년 기준 과표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금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비용, 교육비, 주거비, 자영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반영하여 과표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주로 출산이 많은 30대 초반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서 과표 1천만원 이하 계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학교 비용과 학교급식비 등에 대한 교육비 공제지원도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젊은 계층(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음)의 세부담을 더욱 많이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임차차입금(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한 부분도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과표 1천만원 이하 계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허용도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자영자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과표구간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중산·서민층에게 귀속됩니다.

•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원칙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표가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 최저구간 조정 20% 조정(과표 1,000만원→1,200만원), 중간구간 15% 조정(4,000만원→4,600만원), 최고구간 10% 조정(8,000만원→8,800만원)

• 과표 1천만~4천만원 구간의 납세자(근로자+자

영자)는 소득세의 34%를 부담하고 있으나, 과표 조정 혜택의 52%가 이들에게 귀착되었으며

• 반면, 과표 8천만원 구간의 납세자는 전체 소득세의 42%를 부담하고 있으나, 과표조정 혜택의 22%만 이들에게 귀착되었습니다.

(단위: 억원,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합 계		과표조정 경감액	
0~1천만원	5,322	3,132	8,454	5%	△0	0%
1천만~4천만원	46,843	11,297	58,140	34%	△5,920	52%
4천만~8천만원	22,179	11,522	33,701	20%	△2,938	26%
8천만원 초과	23,438	48,421	71,859	42%	△2,442	22%
총 계	97,782	74,372	172,154	100%	△11,3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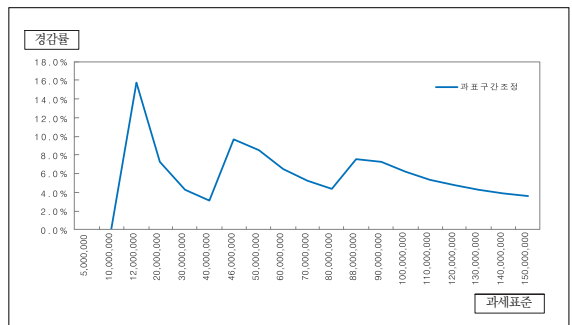
* 소득세는 '05년 귀속소득 기준, 경감액은 '08년 기준

②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경감률이 과표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단단계 누진구조를 가진 소득세 과표구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 과표구간 조정시 조정된 과표구간 상한 소득에서 경감률이 높게 나타나고 기존 과표구간 상한 소득에서 경감률이 낮게 나타나는 산(山)형 경감률을 보이게 됩니다.

• 정부는 과표구간 조정시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여 낮은 소득층의 경감률이 보다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과표구간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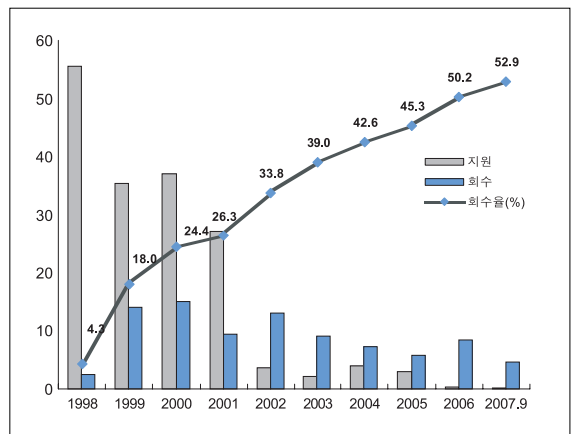


- 참고로, 소득세 부담경감 방안은 크게 세 가지 (①세율 인하, ②소득공제 확대 ③과표구간 조정)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나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컨대, 세율 인하는 통상 세부담 경감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대부분 귀착되는 문제가 있고,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면세자 비율을 높이고 과세자 비율을 낮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만드는 데 저해요인이 있으며, 과표구간 조정은 구간 조정 첫 해에는 최하위 구간 소득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한계가 각각 있습니다.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이 자료는 2007년 10월 31일 재정경제부 공자위사무국 의사총괄과에서 발표한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97. 11~'07. 9월중 공적자금은 총 168.4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89.1조원 회수
 - ⇒ '07. 9월말 현재 회수율(누계)은 52.9%
 - ※ 04년말 42.6%, 05년말 45.3%, 06년말 50.2%
- '07년 9월중에는 554억원 지원, 1,425억원 회수
 - 지원내역 : (구)현투증권 관련 CBO 매입*(예보 : 530억원)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정산 등**(예보 : 24억)
 - * 현투증권 매각 당시 계약에 따라 CBO와 관련된 사후손실을 예보가 부담
 - **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순자산 부족분 사후정산 등
 - 회수내역 : 한아름금고 등 파산배당(909억원 : 예보), 제일은행 자산매각 등(201억원 : 예보), 대투증권 자산매각(120억원 : 예보), 부실채권 회수 등(195억원 : 캤코)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1~9	계
지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09	168.4
회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4.6	89.1
회수율(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2.9	52.9

I.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재원별

('97. 11월~'07. 9월말, 단위: 조원)

구분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7.8	3.2	7.4	6.7	17.1	42.2
공공자금	13.4	-	-	6.4	-	19.8
기타자금 ^{주)}	0.03	0.2	2.9	0.1	1.1	4.3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주: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나. 금융권별

('97. 11월~'07. 9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	계	
은행	34.0	13.9	-	14.4	24.6	86.9	
제2금융권	종금	2.7	0.7	18.3	-	1.2	22.9
	증권·투신	10.9	0.3	0.01	2.0	8.5	21.7
	보험	15.9	3.1	-	0.3	1.8	21.2
	신협	-	-	4.8	0.05	-	4.8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계	29.5	4.6	30.3	3.0	11.7	79.1
해외금융기관 등	-	-	-	-	2.4	2.4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다. 기관별

('97. 11월~'07. 9월말, 단위 : 조원)

기관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5	30.3	11.0	-	110.7
자산관리공사	-	-	-	-	38.6	38.6
정부	11.8	-	-	6.4	-	18.1
한국은행	0.9	-	-	-	-	0.9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라. 연도별

('97. 11월~'07. 9월말, 단위 : 조원)

연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1/4	-	0.08	△0.06	-	0.02
	2/4	-	0.04	-	-	0.04
	3/4	-	0.04	△0.01	-	0.03
	계	-	0.16	△0.07	-	0.09
누계	102.1	42.2	19.8	4.3	168.4	

2. 공적자금 회수현황

가. 총괄표

('97. 11월~'07. 9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수 방법						소계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등	-			
예금 보험 공사	16.0	17.2	6.1	-			39.3
	1.6	5.1	2.5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41.3
자산 관리 공사	1.6	5.1	2.5	12.5	9.4	10.3	41.3
	2.0	6.6	-				8.6
정부	후순위채권 회수		-				8.6
	2.0		6.6		-		8.6
계							89.1

나. 연도별

('97. 11월~'07. 9월말, 단위 : 조원)

연도	예금보험공사				자산 관리 공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배당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 년	1/4	1.12	-	0.28	1.4	0.11	1.64
	2/4	1.34	0.13	0.09	1.56	0.32	2.00
	3/4	0.53	0.22	0.15	0.89	0.10	0.99
	계	2.98	0.35	0.51	3.84	0.53	4.62
누계	16.0	17.2	6.1	39.3	41.3	8.6	89.1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이 자료는 2007년 10월 31일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WEF(World Economic Forum)의 2007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 12단계 상승(2006년 23위** → 2007년 11위)

* 작년 125개국에서 6개국(리비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추가

** 작년 WEF 발표순위는 24위였으나, 세부부문을 확대조정(9개→12개)하여 재집계한 결과 순위가 23위로 조정

- WEF 국가경쟁력 발표 시작(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 기록
- 평가 대상국 중 올해 경쟁력 순위가 가장 향상(+12위)된 국가

* 스리랑카(81→70:+11), 온두라스(90→83:+7), 스웨덴(9→4:+5), 터키(58→53:+5)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00	01	02	03	04	05	06	07
28	23	21	18	29	19	23	11

- WEF가 분류하는 국가경제구조 발전단계*에서도 선진국 모델인 3단계 혁신주도경제로 완전 진입한 것으로 평가(2006년은 2-3단계 중간)

* 각국의 경제구조를 요소주도 경제인 1단계, 1-2단계의 중간

단계, 효율성주도 경제인 2단계, 2-3단계의 중간단계, 혁신주도 경제인 3단계로 분류

-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본요인(24 → 14위), 효율성 증진(21위 → 1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 → 7위) 3대 부문 모두 상승
- 고등교육 및 훈련(6위), 과학기술 수준(7위), 거시경제 안정성(8위), 기업혁신(8위), 기업활동 성숙도(9위) 등 5개 부문에 강점
- 제도적 요인(26위) 중 '안전', 보건 및 초등교육 부문(27위) 중 '보건', 금융시장 성숙도(27위) 부문은 작년에 비해 순위는 상승하였으나,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평가

부문별(3대부문, 12개 세부부문) 순위변화

전체 순위	기본요인 (24 → 14위)				효율성 증진 (21위 → 1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 (17위 → 7위)				
	제도적 요인	효율성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과학기술수준	시장규모	기업활동성숙도	기업혁신	
06	23	42	23	5	34	21	28	47	49	12	14	23	14
07	11	26	16	8	27	6	16	24	27	7	11	9	8

- 국가별로는 미국이 WEF 국가경쟁력에서 1위를

유지

- 미국*은 높은 시장효율성, 기업활동 성숙도, 기술혁신 등으로 1위를 유지하였고, 스위스,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음

* 단, 거시경제 불균형이 미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risk로도 지적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이 각각 7, 8위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

* 홍콩 : 12위, 대만 : 14위, 말레이시아 : 21위, 태국 : 28위, 중국 : 35위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핀란드	싱가폴	일본	영국	네덜란드
1(1)	2(4)	3(3)	4(9)	5(7)	6(6)	7(8)	8(5)	9(2)	10(11)

* () 안은 전년도 순위로 07년 기준(대상국, 평가요소 변화에 따라 작년발표 순위와 상이

〈참고 : WEF 국가경쟁력 평가〉

- WEF(World Economic Forum)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1995년까지 IMD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나, 1996년부터 독자 발표

-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

- 2007년 평가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하에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부문, 12개 세부부문, 113개 항목(통계 24개, 설문 79개)에 대해 평가

* 06년은 3개부문, 9개 세부부문 120개 항목 평가

I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상승·하락요인 분석

기본요인(24위 → 14위 : 10위 ↑)

- 기본요인 부문은 거시경제 안정성(8위) 외 제도적 요인(26위), 인프라(16위), 보건 및 초등교육(27위)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

① '제도적 요인' 부문(42위 → 26위)

-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부문이나 정부규제완화가 8위를 기록하는 등 전년에 비해 16단계 상승
- 테러위협 비용(78위), 조직범죄(50위), 범죄·폭력관련 기업활동 비용(40위) 등이 약점

② '인프라' 부문(23위 → 16위) : 항공운송 인프라(26위)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상대적 약점 요인이나 전년에 비해 상승

③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5위 → 8위)

- 재정수지 흑자, 부채감소, 낮은 물가수준 및 이자율 등으로 8위를 기록
- 다른 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부문이나 전년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

④ '보건·초등교육' 부문(34위 → 27위)

- HIV환자 비율(1위), 취학률(4위)이 강점이며 전년에 비해 7단계 상승
- 말라리아(99위) 및 결핵(87위)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상대적인 약점으로 지적

효율성 증진(21위 → 12위 : 9위 ↑)

- 효율성 증진분야는 6개 세부부문 모두에서 전년도 순위 상승

① '고등교육 및 훈련' 부문(21위 → 6위) : 고등교육 취학률(1위),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4위), 직장 훈련(5위)이 강점 요인

- ②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28위 → 16위)
 - 구매자 성숙도(2위), 고객지향도(4위) 등이 강점으로 지적
 - 창업절차(95위), 관세율(78위) 등의 경쟁력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 ③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47위 → 24위)
 - 보수 및 생산성(9위)이 강점
 - 그러나, 해고비용(107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79위), 노사관계 협력(55위) 등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
- ④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49위 → 27위)
 - 전년에 비해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은행건전성(69위), 자본이동제한(35위), 투자자보호(45위) 등이 상대적 약점요인으로 지적
- ⑥ '과학기술 수준' 부문(12위 → 7위)
 - 광대역 인터넷가입자(2위), 인터넷 이용자(6위) 등은 강점
 - 이동통신 가입자(42위), FDI 및 기술이전(39위)은 약점
- ⑦ '시장규모' 부문(14위 → 1위) : 국내(13위), 해외(11위)시장 모두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 → 7위 : 10위 ↑)

-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는 기업혁신(8위)과 기업활동 성숙도(9위) 모두 전년보다 순위 상승
- ① '기업활동 성숙도' 부문(23위 → 9위)
 - 국제물류 및 마케팅의 내국기업 점유도(4위), 기업클러스터(3위) 등이 강점요인
 - 반면,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21위), 생산공정의 기술적 성숙도(14위) 등은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
- ② '기업혁신' 부문(14위 → 8위) :
 - 정부의 고급기술 구매 적극성(2위), 산학연구 협력(5위), 발명특허건수(8위) 등이 강점

-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용이성(13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다만, 강·약점 요인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순위인 11위를 기준으로 높은 경우 강점, 낮은 경우는 약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실제 경쟁력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예) 국내 및 해외시장 규모(13, 11위, 약점), 과학연구기관 수준(11위, 약점),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13위, 약점), 철도인프라의 질(12위, 약점) 등

Ⅲ. 평가 및 시사점

- 2007년도 우리나라의 WEF 경쟁력 12단계 상승(23위 → 11위)은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등 3대 분야 모두에서 골고루 경쟁력이 향상된 것에 기인
 - 기본요인 부문에서는 제도적 여건의 경쟁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재정수지, 저물가·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큰 폭(+10위) 상승
 - 제도적 요인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안전' 부문과 정책결정 투명성(34위), 법체계 효율성(28위) 등 '공공부문' 경쟁력이 다소 미흡한 것에 기인
 - 효율성 증진 부문은 고등교육 취학률(1위)이 높고, 인터넷 등 과학기술 수준(7위)이 높다는 평가 부문이 반영
 - 기업부문의 경우, 기업의 혁신능력(7위), R&D투자(6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국가경쟁력 향상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경쟁력 취약 부문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대외개방과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노력 등 각 부문별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지적된 보건, 안전 등 국민 생활의 질과 밀접한 부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 추진
-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추진 및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해 노동 및 금융부문의 효율성 개선노력을 가속화 필요

〈참고 1〉 세부항목별 강점·약점 요인

※ 강점요인은 국가평균 순위(11위)보다 순위가 높은 항목이고, 약점요인은 그보다 낮은 순위 항목

■ 기본요인(24 → 14위)

① 제도적 요인(42위 → 26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 점	정부규제 완화	8	-	-
약 점	재산권 보호	24	테러위협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78
	지적재산권 보호	23	범죄 및 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40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의 유용 정도	26	조직범죄가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50
	정치인에 대한 신뢰	22	경찰 서비스 신뢰성	27
	사법부 독립성	35	기업경영윤리	25
	정부정책, 계약의 정실성 정도	15	회계기준 및 검사 강도	35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	22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31
	법체계의 효율성	28	경영진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유효성	30
	정책결정의 투명성	34		

② 인프라(23위 → 16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약 점	전체 인프라의 질	19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	20
	도로 인프라의 질	20	전력공급의 질	19
	철도 인프라의 질	12	전화선 공급	19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	26	available seat kilometers	19

③ 거시경제 안정성(5위 → 8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 점	이자율 스프레드 (예대금리차)	4	-	-
약 점	재정수지	34	정부부채	33
	국가 저축률	29	인플레이션	21

④ 보건 및 초등교육(34위 → 27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 점	HIV 환자비율	1	초등학교 취학률	4
약 점	말라리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99	초등교육의 질	23
	말라리아 발병률	74	교육비 지출	76
	결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87	영아 사망률	22
	결핵 발병률	85	기대여명	31
	HIV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70	-	-

■ 효율성 증진(21위 → 12위)

①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21위 → 6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 점	고등교육 취학률	1	수학·과학교육 수준	10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	4	기업의 직원훈련 투자	5
약 점	중등교육 취학률	48	경영대학(원)의 질	26
	교육시스템의 질	19	전문연구, 훈련 서비스 이용가능성	14

② 상품시장 효율성(28위 → 16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점	고객 지향도	4	구매자 성숙도	2
	통관절차의 효율성	4	-	-
약점	시장 경쟁의 강도	23	창업 소요시간	37
	시장 지배(독점)의 정도	27	농업정책의 비용	16
	반독점 정책의 효율성	19	무역가중치 관세율	78
	조세의 효율성	30	외국인 기업소유에 대한 제한	61
	총조세율	18	FDI 규제의 기업활동에의 영향	53
	창업시 행정절차	95	무역장벽 정도	32

③ 노동시장 효율성(47위 → 24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점	보수 및 생산성	9	-	-
약점	노사 간 협력	55	전문경영인에 대한 신뢰	33
	임금결정의 유연성	25	고급인력 해외유출 정도	20
	임금 외 노동비용	71	해고비용	107
	고용의 경직성	5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9
	고용 및 해고관행	23	-	-

④ 금융시장 성숙도(49위 → 27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약점	금융시장 성숙도	32	투자자 보호 정도	45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	28	은행 건전성	69
	은행대출의 용이성	28	증권거래관련 규제	11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17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35

⑤ 과학기술 수준(12위 → 7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점	ITC 관련 법규	7	인터넷 이용자 수	6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	-	-
약점	첨단기술 이용가능성	20	PC 보급	19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	13	FDI 및 기술이전	39
	이동통신 가입자 수	42	-	-

⑥ 시장 규모(14위 → 11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약점	국내시장 규모	13	해외시장 규모	11위

■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 → 7위)

① 기업활동 성숙도(23위 → 9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점	물품, 서비스 국내 공급량 충분 정도	7	기업 클러스터	3
	국제물류 및 마케팅의 내국기업 점유율	4	-	-
약점	물품, 서비스 국내공급자의 효율성	17	생산공정의 기술적 성숙도	14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특성	13	기업마케팅 활동의 성숙도	13
	수출기업의 가치창조	11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이양정도	21

② 기업혁신(14위 → 8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강점	기업의 혁신능력	7	R&D 투자	6
	산학연구 협력	5	정부의 고급기술 제품 구매 적극성	2
	발명특허건수	8	-	-
약점	과학연구기관 수준	11	과학자 및 기술안력 확보 용이성	13

〈참고 2〉 WEF 세계경쟁력 국가별 순위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1위	미국(1)	42위	오만(-)
2위	스위스(4)	43위	바레인(48)
3위	덴마크(3)	44위	남아프리카(36)
4위	스웨덴(9)	45위	라트비아(44)
5위	독일(7)	46위	이탈리아(47)
6위	핀란드(6)	47위	헝가리(38)
7위	싱가포르(8)	48위	인도(42)
8위	일본(5)	49위	요르단(46)
9위	영국(2)	50위	발바도스(41)
10위	네덜란드(11)	51위	폴란드(45)
11위	한국(23)	52위	멕시코(52)
12위	홍콩(10)	53위	터어키(58)
13위	캐나다(12)	54위	인도네시아(54)
14위	대만(13)	55위	사이프러스(49)
15위	오스트리아(18)	56위	몰타(51)
16위	노르웨이(17)	57위	크로아티아(56)
17위	이스라엘(14)	58위	러시아(59)
18위	프랑스(15)	59위	파나마(60)
19위	오스트레일리아(16)	60위	모리셔스(55)
20위	벨기에(24)	61위	카자흐스탄(50)
21위	말레이시아(19)	62위	우즈베키스탄(-)
22위	아일랜드(22)	63위	코스타리카(68)
23위	아이슬란드(20)	64위	모로코(65)
24위	뉴질랜드(21)	65위	그리스(61)
25위	룩셈부르크(25)	66위	아제르바이잔(62)
26위	칠레(27)	67위	엘살바도르(53)
27위	에스토니아(26)	68위	베트남(64)
28위	태국(28)	69위	콜롬비아(63)
29위	스페인(29)	70위	스리랑카(81)
30위	쿠웨이트(30)	71위	필리핀(75)
31위	카타르(32)	72위	브라질(66)
32위	튀니지(33)	73위	우크라이나(69)
33위	체코(31)	74위	루마니아(73)
34위	중국(35)	75위	우루과이(79)
35위	사우디아라비아(-)	76위	보츠와나(57)
36위	푸에르토리코(-)	77위	이집트(71)
37위	아랍에미리트(34)	78위	자마이카(67)
38위	리투아니아(39)	79위	불가리아(74)
39위	슬로베니아(40)	80위	시리아(-)
40위	포르투갈(43)	81위	알제리(77)
41위	슬로바키아(37)	82위	몬테네그로(-)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83위	온두라스(90)	108위	베닌(107)
84위	트리니다드 토바고(76)	109위	알바니아(98)
85위	아르헨티나(70)	110위	캄보디아(106)
86위	페루(78)	111위	니카라과(101)
87위	과테말라(91)	112위	부르키나파소(114)
88위	리비아(-)	113위	수리남(104)
89위	나미비아(72)	114위	네팔(105)
90위	그루지야(87)	115위	말리(115)
91위	세르비아(-)	116위	카메룬(99)
92위	파키스탄(83)	117위	타지키스탄(96)
93위	아르메니아(80)	118위	마다카스카르(111)
94위	마케도니아(84)	119위	키르기즈공화국(109)
95위	나이지리아(95)	120위	우간다(110)
96위	도미니카공화국(93)	121위	파라과이(108)
97위	몰도바(86)	122위	잠비아(118)
98위	베네수엘라(85)	123위	에티오피아(116)
99위	케냐(88)	124위	레소토(102)
100위	세네갈(-)	125위	모리타니아(117)
101위	몽골(89)	126위	가이아나(113)
102위	잠비아(103)	127위	동티모르(120)
103위	에콰도르(94)	128위	모잠비크(119)
104위	탄자니아(97)	129위	짐바브웨(112)
105위	볼리비아(100)	130위	부룬디(122)
106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82)	131위	차드(121)
107위	방글라데시(92)		

* () 안은 '06년도 순위임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확대로 지난 5년간 세부담 변화 미미

* 이 자료는 「1인당 근소세 160만원... 5년간 56.3% 늘어」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2007년 10월 25일자 재정경제부의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 10월 23일 연합뉴스와 문화일보에서, 10월 24일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등에서 1인당 근소세가 160만원으로 지난 5년간 56.3%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5일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에서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주요보도내용

- 지난 5년간('00~'05년)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이 56.3% 증가
* 1인당 근소세부담액 추이 (만원) : (00) 102.4 → (05) 160.1

재정경제부의 입장

①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i) 지속적인 임금상승(소득증가)과 ii)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과세자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 기인합니다.

- ① '00~'05년 기간중 1인당 근로소득세부담 증가율이 56.3%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기간

중 1인당 근로소득,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1인당 세후소득 역시 각각 54.1%, 54.0%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 1인당 세금이 늘어난 수치만 보면 세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중 소득금액·세후소득도 크게 늘어나 소득에 비해 실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00~'05년중 1인당 근로소득세는 57.7만원 증가하였지만 1인당 근로소득은 1,335만원 늘어나 세후소득이 1,27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부담 수준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실효세율(근로소득세/근로소득)로 판단해야 합니다.

'00~'05년중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4.1%에서 4.2%로 0.1%p 올랐으나 근로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감안하면 실제 세부담은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00~'05년중 근로소득 납세자의 근로소득세 부담비교〉

	'00년 귀속	'05년 귀속	증가액	증가율
근로소득(억원)	1,464,648	2,322,254	-	58.6%
• 1인당 근로소득(만원)	2,468	3,803	1,335	54.1%
근로소득세수(억원)	60,770	97,782	-	60.9%
• 1인당 근로소득세수(만원)	102.4	160.1	57.7	56.3%
세후근로소득(억원)	1,403,878	2,224,472	-	58.5%
• 1인당 세후근로소득(만원)	2,366	3,642	1,276	54.0%
실효세율(%)	4.1	4.2	-	-
• 1인당 실효세율(%)	4.1	4.2	-	-
과세근로자 수(천명)	5,934	6,107	-	2.9%
과세미달자 수(천명)	5,069	6,866	-	35.5%
전체근로자 수(천명)	11,003	12,973	-	17.9%

주: 1. 근로소득 및 1인당 근로소득, 근로소득세수, 세후근로소득 등에는 전체 근로자 중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만 감안(과세미달자의 근로소득은 제외됨)

- 2. 실효세율 = 근로소득세수 / 근로소득
- 3. 근로소득은 비과세근로소득을 포함한 급여총계를 기준으로 함
- 4. 국제통계연보상 귀속소득 기준

- ② 정부는 지난 5년간 40~50대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확대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 이 방법은 특정 소득계층을 목표로 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는 합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면세점이 근로소득 체계 내에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면세점 수준 및 대상자 비중 등을 정책적 목표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세금을 내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과세자·면세자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평가하는 것이 보다 종합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도에서는 1인당 세부담이 56.3% 늘어났다고 하지만 과세자와 면세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근소세부담 증가는 이의 2/3 수준인 36.5%(연평균 7.3%, '00년 55.2만원 → '05년 75.4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00~'05년 기간중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총국세 증가율이 37.1%(연평균 7.4%)인 점과 비교할 때 그리 높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② 고소득 계층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산·서민층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 1인당 평균 소득세부담이 늘어난 내용을 들여다보면,
- 고소득 계층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산·서민층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를 전체 근로소득세수를 과세자 비율로 나누는 일률적 지표인 1인당 평균 근소세부담액만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소득세수 중 과세표준 4천만원(급여 기준 연봉 6천만원 수준 추정, 4인가족 기준) 이하 계층에서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00~'05년 기간중 69.9%에서 53.3%로 줄어든 반면 과세표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층에서 내는 근소세 비중은 같은 기간중 30.1%에서 46.7%로 늘어났습니다.

(단위: 천명, 억원, %)

과세표준	'00년 귀속			'05년 귀속		
	인원	세수	비중	인원	세수	비중
과표 4천만원 이하	5,823	42,507	69.9	5,793	52,165	53.3
과표 4천만원 초과	111	18,263	30.1	314	45,617	46.7
합계	5,934	60,770	100	6,107	97,782	100

③ '00~'05년 기간중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기타 주요 세목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00년~'05년 기간중 근로소득세수는 59.3%가 늘어났지만 '경제 성장' 과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노력에 힘입어 같은 기간중 다른 세목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중 양도소득세는 222.3%, 상속·증여세는 89.4%, 법인세는 66.7%, 종합소득세는 61.7%,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59.3%, 55.6%가 늘어났습니다.

(단위: 억원)

	2000년	2005년	증가율
양도소득세	13,814	44,521	222.3%
상속·증여세	9,889	18,728	89.4%
법인세	178,784	298,055	66.7%
종합소득세	28,493	46,070	61.7%
근로소득세	65,188	103,822	59.3%
부가가치세	232,120	361,186	55.6%

* 각 연도별 세입실적 기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발굴

- 부족한 SOC 시설투자 조기 확충에 기여 -

* 이 자료는 2007년 11월 7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에서 발표한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발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여 민자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예타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평가」를 도입, 타당성이 확보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 최근 1년 6개월('05~'06 상반기) 동안 예타를 통과한 34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예타를 통과한 재정사업의 약 16% 정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타 통과한 사업 총사업비 11,8조원 중 민간투자 규모 1.9조원

■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 현재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시 민자추진 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

⇒ 예타시 타당성이 확보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 사업을 발굴

2 개선(안) 내용

(1단계) 타당성 확보 가능한($BC \geq 0.9$) 사업은 Check-list 평가(6개 항목)를 통해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판단

* AHP 분석시 경제성 분석(B/C)의 가중치가 40~50% 수준인 점을 감안, $B/C > 0.9$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Check-list 평가 결과(예시)〉

- ▶ 평가대상 : '05~'06 상반기 예타 사업 중 BC 0.9 이상 34개 사업
- ▶ 선정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평가결과 : 민자추진 검토대상 사업은 6개 사업 (17.6%)

(2단계) Check-list 평가 결과 민자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VFM+재무성 분석) 실시

* VFM :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을 비교 분석

* 재무성 분석 : 미래의 현금유출·입 등 비교

(3단계) 민자 적격성이 있고 타당성을 확보(AHP ≥ 0.5)한 사업은 민간투자자로 추진

* AHP(계층화분석)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

③ 기대 효과

- 최근 1년 6개월('05~'06 상반기) 동안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측한 결과
- 타당성 확보한 34개 사업(총사업비 : 11.8조원)의 약 16% 수준인 1.9조원을 민간투자자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Check-list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사업(6개) 중 사업비 기준으로 적격성조사 통과율(75%) 만큼을 민간투자자로 추진하고 가정

〈민간투자 예측〉

(단위: 천억, 억원, %)

	총사업비	재정지원	민간투자액	
			(억원, %)	비율
타당성 확보한 34개 사업	117,951	98,737	19,214 ¹⁾	16.3

1) 적격성조사 대상 6개 사업 민간투자액(25,618억원)의 75%

③ 적용시기

-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등에 반영하여 20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
- 민자추진이 적격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참고 1〉 Check-list 구성 개요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비고
법적·정책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이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된 44개 민간투자 대상시설 유형에 포함되는지 등 해당사업의 법적 적합성 여부 •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중장기계획, 국가 또는 주무관청의 투자정책·투자우선순위에 부합 여부 	(필수항목) 세부 문항에 대해 ○ or X → 모두 ○인 경우 통과
	↓	
1. 창의성 및 효율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진행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 등 	항목별 세부 문항에 대해 5단계 답변
2. 위험배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입장에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위험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3. 관리의 용이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운영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4. 파급효과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참여로 공공부문에 기술 및 경영능력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지 여부 • 금융시장 활성화 등 기타 정책 파급효과 	
5. 사업의 특수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의 규모와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 등 	

〈참고 2〉 제도개선 결과 예측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① Checklist 평가 대상사업 선정

- 2005년~2006년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73건) 중 BC ≥ 0.9 이상인 34개 사업의 Check-list 평가 결과
- 기준점수 60점 이상을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17.6%

구분	총사업수	BC ≥ 0.9	Checklist 통과		통과율	
			50점이상	60점이상	50점이상	60점이상
2005년 상반기	20	12	6	1	50.0%	8.3%
2005년 하반기	30	13	7	2	53.8%	15.4%
2006년 상반기	23	9	4	3	44.4%	33.3%
합계	73	34	17	6	50.0%	17.6%

② 재정절감(민간자본 대체) 효과

- Check-list 통과한 사업(60점 이상, 6개)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1,9조원(16.3%)을 민간자본으로 유치 가능

〈민간투자 예측〉

(억원, %)

	총사업비	재정지원	민간투자액	
				비율
타당성 확보 사업(34개) 합계	117,951	98,737	19,214	16.3
• 재정사업 추진	83,020	83,020	-	-
• 민간투자 추진 사업 ¹⁾	34,931	15,717 ²⁾	19,214 ²⁾	55.0

1, 6개 사업의 적격성 통과비율(75%)을 적용한 것임

2, 정부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액은 각 사업별 특성을 검토하여 산출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 이 자료는 2007년 10월 16일 기획예산처 정책총괄팀에서 발표한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공공기관 운영위는 10. 16일(화),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지난 5월 확정된 평가계획에 따라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내년부터 직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됨
 - 평가결과는 연임, 해임 등 인사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상임감사의 경우 인센티브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반영될 예정
 - 이번에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수시평가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평가계획을 일부 보완하였음
 -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정·시행('07. 9)에 따라 감사의 의무와 책임, 감사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평가지표로 추가
 - 동 평가계획에 따른 첫 번째 평가는 '08. 8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대상으로 '08년 1월에 시행될 예정
 - 상임 감사는 '08년 3~6월에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실시
 - 한편 정부는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관 경영정보, 주요 정책 및 현안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필요한 시설·인력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 이와 함께,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지침」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
 - 동 지침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시행하던 국외여행 절차 등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수렴을 거친 후 11월중 확정될 계획
 - 동 지침 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① 국외여행을 그 목적에 따라 국제회의 등의 업무수행 여행과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의 해외연찬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및 관리
 - ※ 해외연찬은 심사위원회 심사 의무화, 연간계획 및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
 - ② 기관 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자료수집 목적 등의 여행은 가급적 제한하도록 심사기준을 제시
 - ※ 필수심사대상 : 해외연찬, 주재원 소재 지역으로의 여행, 타기관 부담의 여행 등
 - ③ 그동안 상당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고가의 1등석을 이용하던 것을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조정
 - ※ 공무원 : 장관급 이상만 1등석 이용, 차관은 비즈니스석 이용
 - ④ 기관별로 격차가 크던 일 체재비를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준비금 제도를 폐지
 - 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 동 지침 시안이 확정·시행되면,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자제하여 국외여행 경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 국외여행 결과에 대한 공유가 확대되어 국외여행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

구 분	비상임이사	상임 감사	비상임감사
① 평가 대상	■ 비상임이사 (576명) 중 16개월 이상 재임자	■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54명)	■ 비상임감사(54명) 중 16개월 이상 재임자
② 평가 주기	■ 임기 중 1회 * 필요시 수시평가	■ 1년 * 필요시 수시평가	■ 임기 중 1회 * 필요시 수시평가
③ 평가 시기 (정기 평가)	■ 3~8월 임기만료 :1월 ■ 9~2월 임기만료 :7월	■ 차년도 3.20~6.20	■ 3~8월 임기만료 :1월 ■ 9~2월 임기만료 :7월
④ 평가 기준	■ 이사회 기여도 - 이사회 활동참여도 - 안전심의 및 정책제안 실적 ■ 합리적 의사결정 ■ 조직운영 기여도 ■ 정부정책 부합성	■ 감사활동의 적정성과 직무성과 - 감사 및 감사부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 투명·윤리경영 노력 ■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감사위원회 기여도	■ 내외부 감사결과 - 내부, 감사원, 주무부처 외부 회계감사 등 감사결과 및 조치 실적 ■ 조직운영 기여도
⑤ 결과 활용	■ 인사판단 근거 자료	■ 인사판단 근거 자료 ■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인사판단 근거 자료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 이 자료는 2007년 10월 29일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발표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1.5/100,000(연 4.2%)에서 1일 13.7/100,000(연 5.0%)로 개정고시 하였음
- 가산율 조정 배경
 - 연부연납이란 상속·증여세의 납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 그간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하여, 2007. 8월의 정기예금이자율 가중평균이 5.23%가 되었는데
 - 이를 반영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함
- 가산율 조정 내용
 - 가산율 조정
 - 현행 1일 11.5/100,000에서 1일 13.7/100,000로

상향 조정

- 조정 가산율 적용시기
- 2007. 1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사례〉

○ 상속세 1억원을 연부연납하는 경우

(단위: 원)

구분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가산금 (개정 후)	연부연납가산금 (개정 전)
신청시	25백만원	-	-
1차연도	"	75,000,000×13.7/100,000 ×365 = 3,750,375	...×11.5/100,000 ×... = 3,148,125
2차연도	"	50,000,000×13.7/100,000 ×365 = 2,500,250	...×11.5/100,000 ×... = 2,098,750
3차연도	"	25,000,000×13.7/100,000 ×365 = 1,250,125	...×11.5/100,000 ×... = 1,049,375
합계	1억원	7,500,750	6,296,250

- 개정으로 인한 추가부담액 = 1,204,500원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연혁

'01.01.01	'02.04.10	'03.04.01	'04.10.15	'06.06.01	'07.11.01
16/10만 (연5.84%)	13/10만 (연4.75%)	12/10만 (연4.38%)	10/10만 (연3.65%)	11.5/10만 (연4.20%)	13.7/10만 (연5.00%)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맹점 관리 강화 -

* 이 자료는 2007년 10월 16일 국세청 전자세원팀에서 발표한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 3개월(7월~9월)간 피신고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고의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확정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5만원(21백만원)을 지급하였음

<포상금 제도 운영 실적>

(단위: 건)

구 분	신고접수	현지확인	지급 대상	지급요건미비
계	2,295	1,729	410	1,319
현금영수증	1,481	1,231	339	892
신용카드	814	498	71	427

■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약 23.7%

- 지급요건 미비 내용을 분석한 바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 신고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 사항

(1) 인터넷 신고 사이트 개선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거부 관련 인터넷 신고 사이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전 부처 공통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신고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신고 사이트의 서식을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77호 서식과 일치시켜 10월 15일 신고분부터 접수하게 되어 소비자의 신고편의도 모와 내부의 업무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2) 신용카드 관련 신고 거래금액 조정

- 신용카드 관련 신고가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소액거래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신용카드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같이 5천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금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

■ 당부 사항

-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받아 피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현금영수증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시민감시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담보수단이므로
- 투명하고 공평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발급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성실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요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임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 이 자료는 2007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자치부는 2006년 12월말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 국토의 면적은 99,678km²이며, 국공유지·법인 등을 제외한 민유지는 전체 면적의 56%(55,792km²)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개인토지 소유면적은 48,517km²로 파악되었다.
-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367만명으로 전년 대비 33만명이 증가하여 총인구(4,899만명) 중 27.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50만명의 소유비율은 56.7%로 '05년(57.0%)보다 0.3%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097만 세대로 총세대(1,833만세대) 중 59.8%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8.9%로 '05년(59.3%)보다 0.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 60대(25%), 40대(19%)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42km²(0.3%)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3%(약1/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는 매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와 보도자료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에 공개하고 있다.

1. 토지소유현황 통계 작성 목적

- 부동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국 토지에 대한 정보를 매년 수집하여, 토지기본 및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표함으로써 부동산관련 정책수립과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

2. 통계의 기본개념, 작성기준, 작성주기

- 기본개념
- 전 국토 및 개인 토지소유에 대한 기본현황 정리
- 개인 토지소유에 대한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통계표 작성
- 작성 기준
- 2006년 토지소유통계의 경우, 2006년말 현재 토

지(임야)대장 등록사항과 주민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작성

- 작성 주기
- 매년 말(12.31)을 기준으로 연1회 작성

3. 전년 대비 토지소유현황 통계의 주요 변동 내용

- '05 대비 전 국토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민유지의 면적은 감소

(단위: km², %)

구분	계	국공유지	민유지	법인	기타
'05	99,646	30,225	56,457	5,207	7,757
	(100.0)	(30.3)	(56.7)	(5.2)	(7.8)
'06	99,678	30,540	55,792	5,461	7,884
	(100.0)	(30.6)	(56.0)	(5.5)	(7.9)

- 개인토지소유자의 상위 50만명이 소유한 토지소유 비율이 0.3%포인트 감소('05년 57.0% → '06년 56.7%)

	합계(만명)	0.1-1	1-10	10-50	50-100	100-500	500이상
'05	면적(km ²)	48,749	4,768	9,431	13,622	7,224	12,901
	누계비(%)	-	(9.8)	(29.1)	(57.0)	(71.8)	(98.3)
'06	면적(km ²)	48,517	4,635	9,314	13,543	7,201	12,971
	누계비(%)	-	(9.6)	(28.8)	(56.7)	(71.5)	(98.2)

- 세대별로 상위 50만세대가 소유한 토지소유 비율이 0.4%포인트 감소('05년 59.3% → '06년 58.9%)

	합계(만세대)	0.1-1	1-10	10-50	50-100	100-500	500이상
'05	면적(km ²)	48,749	4,982	9,793	14,145	7,491	11,936
	누계비(%)	-	(10.2)	(30.3)	(59.3)	(74.7)	(99.2)
'06	면적(km ²)	48,517	4,846	9,666	14,063	7,467	12,044
	누계비(%)	-	(10.0)	(29.9)	(58.9)	(74.3)	(99.1)

4. 주민전산 자료와 연계 되지 않는 자료란

- “민유지” 중 변동 없이 오랜 기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장기소유권자와 미등기된 토지, 사망자의 상속절차 미이행 등의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 이들 자료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개인명의로의 토지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있더라도 개인적인 이유(사망자 소유 토지의 보존조치 미완료) 등으로 주민전산 자료와 연계 곤란
- 즉,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이 기재된 것은 1975년 이후로 1910년부터 실시된 토지등록 대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 또한 등기는 신청주의이므로 상속·매매 등 소유권의 변동 사유 없이는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1975년 이전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해 오고 있는 소유권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기 어려운 상황
- 그러므로 주민전산자료와 연계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연계 가능한 “개인토지”에 대해 토지소유현황(개인별·세대별·연령별·거주지별) 통계 작성

5. 토지 10분위별 소유세대 통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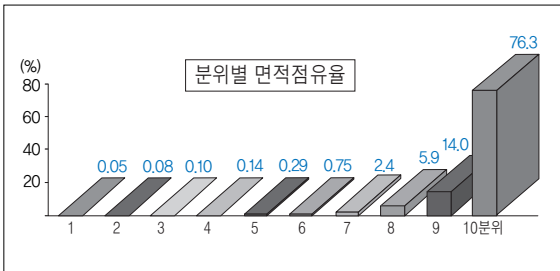
- 토지 10분위란 토지를 소유한 세대를 면적순으로 나열한 다음, 가장 적게 소유한 세대부터 많이 소

유한 세대를 10개 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세대 및 소유 면적을 계산한 것임

- 면적이 가장 작은 구간이 1분위, 가장 큰 구간이 10분위가 됨
- 토지 10분위 중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76.3% (37,029km²)을 점유

	합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면적 (km ²)	48,517	24	37	48	70	140	364	1,160	2,876	6,768	37,029
점유율 (%)	100.0	0.05	0.08	0.10	0.14	0.29	0.75	2.4	5.9	14.0	76.3
평균 (m ²)	4425	22	34	44	64	128	332	1,057	2,623	6,172	33,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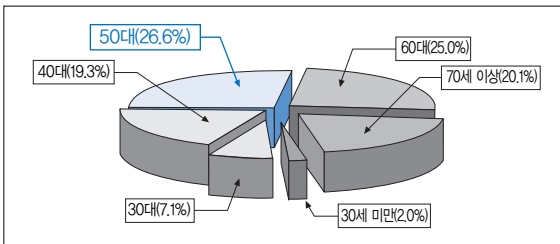
※ 분위별 면적점유율= (각 분위 소유면적 / 총소유면적)×100



6.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

- 면적기준으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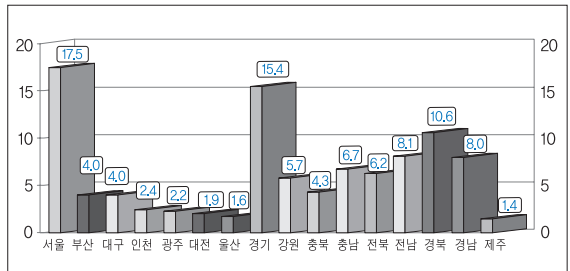
	합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면적 (km ²)	48,517 (km ²)	943	3,436	9,360	12,910	12,119	9,748
비율 (%)	100.0 (%)	2.0	7.1	19.3	26.6	25.0	20.1



7. 토지소유자의 거주지별 관외 소유비율

- 토지소유자가 다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관외 소유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97.8%), 부산 (85.9%), 광주(83.4%)순임

전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0)	17.5	4.0	4.0	2.4	2.2	1.9	1.6	15.4	5.7	4.3	6.7	6.2	8.1	10.6	8.0	1.4
관외	97.8	85.9	82.1	66.9	83.4	82.7	50.4	56.5	6.6	11.5	9.6	5.7	2.7	4.3	7.5	7.1
관내	2.2	14.1	17.9	33.1	16.6	17.3	49.6	43.5	93.4	88.5	90.4	94.3	97.3	95.7	92.5	92.9



8. 새롭게 개발된 토지소유현황 통계표

- '06년 통계표는 모두 16개로 8개의 신규 통계표 추가
 - 토지기본현황(법인, 비법인, 외국인·외국공공)의 지목별, 용도구분별 통계표가 6개 추가되었으며
 - 토지소유현황에서는 “토지 10분위별 세대소유”와 “토지소유자 기준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의 2개 통계표 추가
- 토지소유 관련 자료 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련 통계를 개선·개발할 것임

| 재정통계 |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기능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성질별)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재원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0	합계	22,914,045	15,491,028	3,665,176	3,757,841
	지방세수입	6,378,583	6,378,583	-	-
	세외수입	9,323,964	3,979,614	2,195,179	3,149,172
	지방교부세	2,764,654	2,764,654	-	-
	지방양여금	-	-	-	-
	조정교부금	53,806	53,806	-	-
	보조금	2,136,803	1,988,026	14,478	134,299
	지방채	2,256,235	326,345	1,455,519	474,371
	지정재원	-	-	-	-
1991	합계	29,742,208	19,903,784	5,584,111	4,254,313
	지방세수입	8,035,075	8,035,075	-	-
	세외수입	15,291,635	6,071,682	5,258,353	3,961,599
	지방교부세	3,452,403	3,452,403	-	-
	지방양여금	557,031	557,031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2,406,063	1,787,592	325,758	292,713
	지방채	-	-	-	-
	지정재원	-	-	-	-
1992	합계	34,691,954	22,078,671	5,719,240	6,894,043
	지방세수입	9,462,206	9,462,206	-	-
	세외수입	15,528,603	6,658,109	3,990,242	4,880,252
	지방교부세	3,925,064	3,925,064	-	-
	지방양여금	1,230,602	53,414	-	1,177,188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1,750,414	1,335,933	19,700	394,781
	지방채	2,795,065	643,945	1,709,298	441,822
	지정재원	-	-	-	-
1993	합계	37,794,508	23,700,272	6,917,077	7,177,159
	지방세수입	11,025,781	11,025,781	-	-
	세외수입	15,564,527	5,993,498	4,451,400	5,119,629
	지방교부세	4,412,413	4,412,413	-	-
	지방양여금	1,421,075	60,250	-	1,360,825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2,169,097	1,743,491	123,640	301,966
	지방채	3,201,615	464,839	2,342,037	394,739
	지정재원	-	-	-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계속>

(단위 : 백만원)

연도	재원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4	합계	44,417,354	30,279,950	6,815,681	7,321,723
	지방세수입	13,228,637	13,227,759	-	878
	세외수입	17,930,494	7,737,981	5,011,907	5,180,606
	지방교부세	4,821,432	4,821,432	-	-
	지방양여금	1,696,086	1,696,086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3,131,765	2,337,104	169,928	624,733
	지방채	3,608,940	459,588	1,633,846	1,515,506
	지정재원	-	1,557,550	-	-
1995	합계	52,378,910	36,667,355	8,487,429	7,224,126
	지방세수입	15,316,913	15,316,913	-	-
	세외수입	20,746,487	9,032,482	6,325,846	5,388,159
	지방교부세	5,674,580	5,671,326	3,254	-
	지방양여금	1,870,124	1,870,124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4,109,221	3,218,960	219,923	670,338
	지방채	-	-	-	-
	지정재원	4,661,585	1,557,550	1,938,406	1,165,629
1996	합계	63,085,526	44,995,294	9,018,407	9,071,825
	지방세수입	17,396,462	17,394,727	-	1,735
	세외수입	27,611,045	13,888,685	6,980,426	6,741,934
	법정교부세	6,372,664	6,372,664	-	-
	증액교부금	151,157	151,157	-	-
	지방양여금	2,574,420	2,574,420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4,930,017	3,868,386	154,398	907,233
	지방채	4,049,761	745,255	1,883,583	1,420,923
지정재원	-	-	-	-	
1997	합계	69,571,628	50,764,997	9,484,577	9,322,054
	지방세수입	18,497,728	18,497,728	-	-
	세외수입	31,163,235	16,691,729	7,585,694	6,885,812
	법정교부세	6,785,682	6,785,682	-	-
	증액교부금	228,909	228,909	-	-
	지방양여금	2,877,166	2,876,361	-	805
	조정교부금	15,300	15,300	-	-
	보조금	5,546,567	4,333,185	184,108	1,028,274
	지방채	4,458,041	1,336,103	1,714,775	1,407,163
지정재원	-	-	-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계속>

(단위 : 백만원)

연도	재원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8	합계	69,120,708	50,989,344	8,522,595	9,608,769
	지방세수입	1,714,890	17,148,290	-	-
	세외수입	29,367,420	15,443,117	7,033,421	6,890,882
	법정교부세	7,039,526	7,036,326	-	3,200
	증액교부금	294,976	294,976	-	-
	지방양여금	2,885,525	2,879,549	-	5,976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7,766,452	6,175,440	193,146	1,397,866
	지방채	4,618,519	2,011,646	1,296,028	1,310,845
	지정재원	-	-	-	-
1999	합계	73,125,735	53,772,612	8,745,024	10,608,099
	지방세수입	18,568,564	18,568,517	-	47
	세외수입	29,751,086	15,759,319	7,017,570	6,974,197
	지방교부세	6,535,394	6,535,394	-	-
	증액교부금	383,321	383,321	-	-
	지방양여금	2,906,139	2,906,139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9,687,543	7,891,281	175,619	1,620,634
	지방채	5,293,697	1,728,641	1,551,835	2,013,221
	지정재원	-	-	-	-
2000	합계	77,176,148	57,653,225	8,866,793	10,656,130
	지방세	20,361,600	20,361,411	-	189
	세외수입	31,531,452	16,653,692	7,703,630	7,174,130
	지방교부세	8,244,954	8,244,954	-	-
	증액교부금	204,442	204,442	-	-
	지방양여금	3,713,447	3,713,447	-	-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9,892,702	7,652,942	167,772	2,071,988
	지방채	3,227,551	822,337	995,391	1,409,823
	지정재원	-	-	-	-
	합계	93,995,619	71,460,746	10,092,778	12,442,095
2001	지방세	26,639,924	26,639,725	-	199
	세외수입	35,983,274	18,337,574	8,931,223	8,714,477
	지방교부세	12,209,985	12,209,985	-	-
	증액교부금	140,063	140,063	-	-
	지방양여금	4,628,105	4,628,105	-	-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1,177,968	8,690,642	49,004	2,438,322
	지방채	3,216,300	814,652	1,112,551	1,289,097
	지정재원	-	-	-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계속>

(단위 : 백만원)

연도	재원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	합계	110,507,834	84,508,229	11,405,364	14,594,241
	지방세	31,583,550	31,583,550	-	-
	세외수입	42,284,635	22,118,158	9,995,368	10,171,110
	지방교부세	12,060,352	12,050,563	2,593	7,197
	증액교부금	418,729	418,729	-	-
	지방양여금	4,190,050	4,021,827	32,411	135,812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6,218,848	13,742,185	28,903	2,447,760
지방채	3,751,669	573,216	1,346,091	1,832,362	
2003	합계	122,725,967	96,503,974	12,011,187	14,210,806
	지방세	33,061,987	33,061,987	-	-
	세외수입	53,123,913	31,926,358	10,501,346	10,696,210
	지방교부세	13,397,334	13,370,311	1,230	25,793
	증액교부금	1,640,422	1,593,122	37,300	10,000
	지방양여금	4,412,010	4,280,867	46,010	85,133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4,254,518	11,715,739	26,501	2,512,278
지방채	2,835,782	555,589	1,398,801	881,392	
2004	합계	125,843,536	97,230,960	13,306,615	15,305,961
	지방세	34,159,382	34,159,382	-	-
	세외수입	56,387,552	33,507,014	11,460,580	11,419,959
	지방교부세	14,234,544	14,228,845	749	4,951
	증액교부금	240,744	200,705	40,040	-
	지방양여금	3,848,942	3,775,315	24,395	49,232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3,496,361	10,774,053	56,418	2,665,890
지방채	3,476,010	585,647	1,724,434	1,165,930	
2005	합계	128,414,560	99,714,240	13,876,667	14,823,653
	지방세	35,976,900	35,976,900	-	-
	세외수입	51,863,067	29,104,657	12,086,770	10,671,640
	지방교부세	20,025,251	20,018,269	32	6,950
	지방양여금	-	-	-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6,945,663	13,797,816	83,884	3,063,96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603,678	816,598	1,705,981	1,081,099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기능별)

(단위 : 백만원)

연도	장관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0	합계	16,166,210	10,327,211	2,966,761	2,872,237
	의회비	16,815	16,815	-	-
	일반행정비	2,654,470	2,613,561	24,558	16,351
	사회복지비	1,916,364	1,704,831	4,654	206,879
	산업경제비	1,520,704	1,262,864	3,566	254,274
	지역개발비	8,683,534	3,708,576	2,586,267	2,388,691
	문화 및 체육비	459,911	453,923	-	5,989
	민방위비	301,214	301,195	-	19
	지원 및 기타경비	613,197	265,446	347,716	34
1991	합계	21,850,177	13,852,388	4,084,460	3,913,328
	의회비	162,043	162,043	-	-
	일반행정비	3,278,524	3,225,330	52,979	215
	사회복지비	2,317,508	2,051,603	5,328	260,577
	산업경제비	1,920,381	1,598,715	6,003	315,663
	지역개발비	12,272,678	5,470,106	3,469,826	3,332,746
	문화 및 체육비	631,299	628,916	-	2,383
	민방위비	387,493	387,472	-	22
	지원 및 기타경비	880,250	328,203	550,324	1,722
1992	합계	26,659,809	15,926,614	4,819,597	5,913,598
	의회비	144,119	144,119	-	-
	일반행정비	4,080,783	3,998,343	76,052	6,388
	사회복지비	2,919,398	2,598,181	6,546	314,671
	산업경제비	2,549,077	2,078,282	210	470,585
	지역개발비	15,423,691	5,582,815	4,731,504	5,109,372
	문화 및 체육비	715,096	705,862	4,242	4,992
	민방위비	479,042	479,042	-	-
	지원 및 기타경비	348,603	339,874	1,043	7,686
1993	합계	28,874,545	16,969,564	5,689,914	6,215,067
	의회비	161,294	161,294	-	-
	일반행정비	4,365,731	4,223,410	129,817	12,504
	사회복지비	3,431,856	2,972,196	6,564	453,096
	산업경제비	3,354,377	2,675,946	-	678,431
	지역개발비	15,614,693	5,002,256	5,552,190	5,060,247
	문화 및 체육비	1,131,361	1,124,289	-	7,072
	민방위비	494,147	494,147	-	-
	지원 및 기타경비	321,086	316,026	1,343	3,717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기능별) (계속)

(단위 : 백만원)

연도	장관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4	합계	32,536,378	21,902,088	4,537,846	6,096,444
	의회비	197,228	197,228	-	-
	일반행정비	6,294,426	6,171,974	115,768	6,684
	사회복지비	3,758,212	3,313,984	-	444,228
	산업경제비	3,742,387	3,042,637	-	699,750
	지역개발비	15,988,863	6,687,656	4,422,078	4,879,129
	문화 및 체육비	1,511,437	1,446,280	-	65,157
	민방위비	464,054	464,054	-	-
1995	지원 및 기타경비	579,771	578,275	-	1,496
	합계	36,664,283	24,815,945	5,676,909	6,171,429
	의회비	207,389	207,389	-	-
	일반행정비	7,011,282	7,000,264	2,227	8,791
	사회복지비	4,614,892	3,942,466	-	672,426
	산업경제비	4,838,073	4,180,413	-	657,660
	지역개발비	17,676,186	7,221,635	5,671,282	4,783,269
	문화 및 체육비	1,207,691	1,158,164	3,400	46,127
1996	민방위비	632,908	632,908	-	-
	지원 및 기타경비	475,862	472,706	-	3,156
	합계	44,444,694	31,249,980	6,009,194	7,185,520
	일반행정비	8,329,023	8,327,820	973	230
	사회개발비	16,235,794	9,848,526	3,840,480	2,546,788
	경제개발비	18,478,806	11,684,988	2,157,318	4,636,500
1997	민방위비	844,149	844,148	-	1
	지원 및 기타경비	556,922	544,498	10,423	2,001
	합계	50,958,970	37,407,047	6,301,399	7,250,524
	일반행정비	8,984,652	8,984,652	-	-
	사회개발비	20,029,348	12,649,815	4,106,810	3,272,723
	경제개발비	20,277,149	14,104,759	2,194,589	3,977,801
1998	민방위비	1,129,479	1,129,479	-	-
	지원 및 기타경비	538,342	538,342	-	-
	합계	51,605,421	38,076,886	5,869,623	7,658,912
	일반행정비	5,916,079	8,910,381	-	5,698
	사회개발비	21,092,023	13,098,675	1,567,566	3,425,782
	경제개발비	18,851,465	13,926,389	1,302,057	3,623,019
1998	민방위비	1,035,489	1,035,489	-	-
	지원 및 기타경비	1,710,365	1,105,952	-	604,413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기능별) <계속>

(단위 : 백만원)

연도	장관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9	합계	53,979,397	39,758,463	5,800,837	8,420,297
	일반행정비	8,889,803	8,889,803	-	-
	사회개발비	23,221,006	13,572,909	5,435,994	4,212,103
	경제개발비	19,845,504	15,272,667	364,843	4,207,994
	민방위비	1,025,362	1,025,362	-	-
	지원 및 기타경비	997,722	997,722	-	-
2000	합계	56,107,869	41,956,910	5,443,009	8,707,950
	일반행정비	9,479,482	9,479,482	-	-
	사회개발비	25,346,873	15,438,524	5,443,009	4,465,340
	경제개발비	19,342,970	15,100,008	-	4,242,962
	민방위비	1,072,463	1,072,463	-	-
	지원 및 기타경비	866,081	866,433	-	-352
2001	합계	67,504,855	51,542,081	6,118,400	9,844,374
	일반행정비	11,309,329	11,309,329	-	-
	사회개발비	32,302,907	20,571,210	6,118,400	5,613,297
	경제개발비	21,307,154	17,076,077	-	4,231,077
	민방위비	1,279,360	1,279,360	-	-
	지원 및 기타경비	1,306,105	1,306,105	-	-
2002	합계	72,883,799	54,791,904	6,868,178	11,223,717
	일반행정비	12,329,218	12,329,218	-	-
	사회개발비	35,387,806	22,539,046	6,868,178	5,980,583
	경제개발비	22,622,352	17,379,218	-	5,243,135
	민방위비	1,451,062	1,451,062	-	-
	지원 및 기타경비	1,093,360	1,093,360	-	-
2003	합계	82,186,004	65,026,972	6,102,905	11,056,127
	일반행정비	13,437,977	13,437,977	-	-
	사회개발비	37,609,019	25,305,841	6,102,905	6,200,273
	경제개발비	28,070,703	23,214,849	-	4,855,854
	민방위비	1,709,653	1,709,653	-	-
	지원 및 기타경비	1,358,652	1,358,652	-	-
2004	합계	91,159,327	71,794,574	6,811,347	12,553,406
	일반행정비	15,279,385	15,279,385	-	-
	사회개발비	42,247,138	28,111,319	6,811,347	7,324,472
	경제개발비	30,287,063	25,058,130	-	5,228,934
	민방위비	1,851,774	1,851,774	-	-
	지원 및 기타경비	1,493,967	1,493,967	-	-
2005	합계	95,583,507	74,635,603	8,105,242	12,842,662
	일반행정비	16,570,738	16,570,738	-	-
	사회개발비	46,864,052	31,361,377	8,105,242	7,397,433
	경제개발비	28,728,543	23,283,314	-	5,445,229
	민방위비	2,001,361	2,001,361	-	-
	지원 및 기타경비	1,418,812	1,418,812	-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성질별)

(단위 : 백만원)

연도	성질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0	합계	7,650,225	1,811,226	2,966,761	2,872,237
	인건비	579,396	408,698	129,140	41,557
	물건비	1,006,743	210,182	400,179	396,382
	이전경비	418,759	156,244	26,886	235,629
	자본지출	4,604,336	796,617	1,834,552	1,973,167
	융자 및 출자	437,175	186,618	166,959	83,597
	보전재원	271,748	16,584	165,424	89,740
	내부거래	284,385	12,435	226,313	45,637
기타	47,683	23,847	17,307	6,529	
1991	합계	21,850,177	13,852,388	4,084,460	3,913,328
	인건비	2,754,319	2,541,564	172,947	39,807
	물건비	2,413,158	1,478,301	451,707	483,150
	이전경비	1,371,605	1,285,692	16,679	69,235
	자본지출	13,190,510	7,568,565	2,917,505	2,704,440
	융자 및 출자	626,297	261,566	106,458	258,273
	보전재원	881,796	262,554	398,824	220,418
	내부거래	329,265	206,614	2,111	120,540
기타	283,226	247,531	18,229	17,466	
1992	합계	26,659,809	15,926,614	4,819,597	5,913,598
	인건비	3,280,681	3,009,694	223,953	47,034
	물건비	3,191,713	1,977,710	641,510	572,493
	이전경비	1,919,009	1,603,471	250,680	64,858
	자본지출	15,424,433	8,314,787	2,854,826	4,254,820
	융자 및 출자	721,514	277,334	151,653	292,527
	보전재원	1,138,081	275,641	669,170	193,270
	내부거래	429,653	195,583	11,008	223,062
기타	554,725	272,394	16,797	265,534	
1993	합계	28,874,545	16,969,564	5,689,914	6,215,067
	인건비	3,791,439	3,461,216	273,903	56,320
	물건비	3,406,202	2,046,150	725,862	634,190
	이전경비	2,310,125	2,148,240	30,132	131,753
	자본지출	16,118,051	8,066,789	3,564,100	4,487,162
	융자 및 출자	676,499	251,146	204,355	220,998
	보전재원	993,190	182,499	598,528	212,163
	내부거래	1,239,841	540,617	265,628	433,596
기타	339,198	272,907	27,406	38,885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성질별) <계속>

(단위 : 백만원)

연도	성질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4	합계	32,536,378	21,902,088	4,537,846	6,096,444
	인건비	4,291,627	3,927,546	291,501	72,580
	물건비	3,638,562	2,618,339	529,329	490,894
	이전경비	3,343,094	2,556,263	282,069	504,762
	자본지출	17,542,871	11,314,061	2,350,516	3,878,294
	융자 및 출자	712,046	246,028	221,132	244,886
	보전재원	1,495,376	438,042	827,075	230,259
	내부거래	1,435,562	767,639	9,188	658,735
	예비비 및 기타	77,240	34,170	27,036	16,034
1995	합계	36,664,283	24,815,945	5,676,909	6,171,429
	인건비	4,759,859	4,401,367	275,322	83,170
	물건비	4,507,873	3,342,675	612,032	553,166
	이전경비	4,158,593	3,057,599	349,465	751,529
	자본지출	20,418,226	13,154,513	3,291,817	3,971,896
	융자 및 출자	599,375	255,941	143,119	200,315
	보전재원	1,506,002	308,819	982,962	214,221
	내부거래	658,309	264,727	9,762	383,820
	예비비 및 기타	56,046	30,304	12,430	13,312
1996	합계	44,444,694	31,249,980	6,009,194	7,185,520
	인건비	5,314,514	4,916,462	298,262	99,790
	물건비	5,371,387	4,064,112	677,568	629,707
	이전경비	5,292,321	3,840,283	467,482	984,556
	자본지출	24,064,220	16,388,732	3,242,033	4,433,455
	융자 및 출자	970,179	443,437	276,466	250,276
	보전재원	1,856,303	324,232	1,014,321	517,750
	내부거래	1,329,091	1,189,865	2,540	136,686
	예비비 및 기타	246,679	82,857	30,522	133,300
1997	합계	50,958,970	37,407,047	6,301,399	7,250,524
	인건비	5,916,763	5,481,360	321,890	113,513
	물건비	6,037,429	4,470,004	760,692	806,733
	이전경비	6,319,215	4,903,416	453,170	962,629
	자본지출	28,101,971	20,260,657	3,390,528	4,450,786
	융자 및 출자	1,054,624	544,311	264,964	245,349
	보전재원	1,641,741	241,117	1,000,701	399,923
	내부거래	1,598,648	1,431,959	9,694	156,995
	예비비 및 기타	288,579	74,223	99,760	114,596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성질별) <계속>

(단위 : 백만원)

연도	성질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8	합계	51,604,709	38,076,886	5,868,911	7,658,912
	인건비	5,919,643	5,481,513	313,461	124,669
	물건비	6,777,138	5,026,807	823,286	927,045
	이전경비	6,982,516	5,369,523	707,152	905,841
	자본지출	26,711,897	19,400,468	1,840,964	4,470,465
	융자 및 출자	1,139,256	522,738	263,374	353,144
	보전재원	2,225,123	682,138	851,524	691,461
	내부거래	1,622,708	1,488,131	20,973	113,604
예비비 및 기타	226,428	105,568	48,177	72,683	
1999	합계	53,979,397	39,758,463	5,800,837	8,420,097
	인건비	5,920,533	5,497,578	297,803	125,152
	물건비	6,478,857	5,283,971	885,923	308,963
	이전경비	9,764,185	6,809,229	983,422	1,971,534
	자본지출	26,557,188	19,328,370	2,472,502	4,756,316
	융자 및 출자	939,516	621,267	55,739	262,510
	보전재원	2,507,859	664,472	1,055,404	787,983
	내부거래	1,585,534	1,420,553	3,847	161,134
예비비 및 기타	225,725	133,023	46,197	46,505	
2000	합계	56,107,869	41,956,910	5,443,009	8,707,950
	인건비	6,197,751	5,754,486	306,497	136,768
	물건비	6,637,621	5,314,078	998,049	325,494
	이전경비	10,894,551	7,668,326	714,799	2,511,426
	자본지출	27,366,105	20,321,753	2,120,910	4,923,442
	융자 및 출자	1,209,452	823,582	142,147	243,723
	보전재원	1,818,471	344,482	1,137,834	336,155
	내부거래	1,796,378	1,607,364	3,709	185,305
예비비 및 기타	187,540	122,839	19,064	45,637	
2001	합계	67,504,855	51,542,081	6,118,400	9,844,374
	인건비	6,734,953	6,250,430	340,642	143,881
	물건비	7,111,583	5,590,155	1,078,755	442,673
	이전경비	13,606,702	9,324,489	814,726	3,467,487
	자본지출	30,438,869	23,348,089	2,320,151	4,770,629
	융자 및 출자	1,259,483	860,318	108,310	290,855
	보전재원	2,579,724	720,414	1,406,816	452,494
	내부거래	5,477,500	5,259,667	8,001	209,832
예비비 및 기타	296,041	188,519	40,999	66,523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성질별) <계속>

(단위 : 백만원)

연도	성질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	합계	72,883,799	54,791,904	6,868,178	11,223,717
	인건비	7,422,542	6,902,480	361,382	158,679
	물건비	7,561,126	5,968,942	1,148,489	443,695
	이전경비	14,172,665	10,762,491	646,879	2,763,295
	자본지출	31,648,785	23,430,072	2,809,543	5,409,170
	융자 및 출자	880,581	226,181	183,004	471,396
	보전재원	3,078,193	491,960	1,625,192	961,041
	내부거래	7,756,530	6,773,598	61,110	921,822
	예비비 및 기타	363,377	236,179	32,579	94,619
2003	합계	82,186,004	65,026,972	6,102,905	11,056,127
	인건비	8,052,398	7,479,973	400,837	171,588
	물건비	8,262,266	6,589,273	1,250,428	422,565
	이전경비	15,556,976	11,776,044	799,895	2,981,037
	자본지출	38,478,411	30,576,461	2,371,132	5,530,819
	융자 및 출자	1,163,001	419,610	31,024	712,367
	보전재원	1,884,833	308,284	1,092,921	483,627
	내부거래	8,443,773	7,685,084	110,882	647,807
	예비비 및 기타	344,346	192,242	45,786	106,318
2004	합계	91,159,327	71,794,574	6,811,347	12,553,406
	인건비	9,374,444	8,716,899	446,321	211,224
	물건비	8,472,897	6,710,356	1,352,787	409,753
	이전경비	18,007,489	14,198,389	620,074	3,189,026
	자본지출	43,139,613	33,390,381	2,895,425	6,853,808
	융자 및 출자	1,185,416	446,737	254,898	483,781
	보전재원	2,251,306	439,464	1,193,149	618,693
	내부거래	8,256,797	7,613,074	21,415	622,308
	예비비 및 기타	471,365	279,274	27,278	164,813
2005	합계	95,583,507	74,635,603	8,105,242	12,842,662
	인건비	12,627,404	11,760,153	595,213	272,037
	물건비	6,670,476	4,932,932	1,372,864	364,680
	이전경비	22,149,629	17,711,928	734,840	3,702,861
	자본지출	41,791,596	31,433,132	3,713,282	6,645,182
	융자 및 출자	1,208,441	439,398	302,807	466,237
	보전재원	2,274,114	446,960	1,343,081	484,072
	내부거래	8,293,092	7,620,644	1,307	671,141
	예비비 및 기타	568,755	290,456	41,848	236,451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을 무주택자 대책을 비롯한 복지사업에 더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변재진 복지부 장관에게 한 말이다. 이 발언을 들은 취재기자들은 한결같이 아직도 저런 의원이 있느냐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기자들이 어처구니없어 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성격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이런저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정(세금)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이 노후를 위해 낸 보험료로 조성된다. 따라서 이 돈을 최대한 잘 굴려 높은 수익을 내고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게 국민연금 의무다. 정부는 이 때문에 한푼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해 기금 운용을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는 등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기금=활용

가능한 재정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장 의원뿐이 아니란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연금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길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부가 깨려고 한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수익성이 없는 공익사업에 투자했다가 기금을 날려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라면 국민연금기금이 아니라 재정(세금)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째깍 돈처럼 썼다가 위기를 초래했던 뼈저린 경험이 있다. 국민 노후자금이나 다른 없는 국민연금기금을 제멋대로 쓰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김규식(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매일경제 2007년 10월 19일 '기자24시')

32조 투입 '저출산 대책' 중복투자 많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3년 만에 합계 출산율이 상승하는 반짝 효과를 보였으나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 2050년이 되면 한 해 출생자가 22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출산연령층인 20~34세의 여성 인구가 259만명으로 뚝 떨어져 인구증가율이 거의 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50년에는 노인 1명을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부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세대전쟁, 문화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응해 정부는 2006~2010년에 3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새로마지플랜

2010 로드맵을 운용하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하면서 매년 5조~6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0에 토대를 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은 실효성이 낮고 부처 간 중복 투자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부처별로 고령화사회에 대응해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 서로 다른 명목으로 각자 추진되고 있다. 또 교육부총리가 맡은 인적자원개발 영역이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의 고령화 대비 사회문화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범부처적 총괄과 조정 기능에 어려움이 많다.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취업센터 고용안정센터 운영 책임은 노동부가,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에 관한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은 여성가족부가, 노인대학은 행정자치부가 운영했지만 상호연계가 잘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시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참여 부처의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예산이 정부 부처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기능과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보건과 복지 관점에서 풀 수 없는 대단히 복잡한 퍼즐이다.

독일어권 및 남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가족주의 및 가부장적 문화가 견고해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못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신에인절플랜이 실패한 이유도 장기대책보다는 보육 중심의 단기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임을 역지사지로 배워야 한다.

차기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개별 시책에 대한 효과평가를 전담하는 부처를 지정하거나 행정위원회 형태의 전담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담 부처는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하여 발생하는 국가재정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단기적, 경제지원 중심의 비효율적인 정책대응 관행을 타파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사회문화 차원에서 대응력 강화도 중요하다. 남녀평등과 다문화 가정을 용인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가족 친화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조경호(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동아일보 2007년 10월 23일 '기고'〉

대수술 시급한 적자 수렁의 4대 연금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금의 오는 2050년 한해 적자가 178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분석이다. 그런데도 적자투성이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이전 직원에게 6,86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4대 연금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다시 말해준과 동시에 앞으로 17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천문학적인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입장에서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4대 연금의 적자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데 개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민연금은 개혁안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미흡하기만 하다. 그나마 3대 연금 개혁은 실종됐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줄이는 일을 회피하는 데 원인이 있다. 공무원연금이 적자를 누적시키는 수급구조 개혁은 커녕 유족수급자 범위를 넓혀 선심을 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좋은 예다.

2050년에 예상되는 4대 연금의 연간 적자규모 178조원은 올해 국가예산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문제

만 커질 뿐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부실관리와 방만경영은 비판의 대상이다. 연금 체납액만도 4조원에 이를 정도다. 국민연금 신뢰도가 10%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물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3대 연금도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전 직원에게 6,865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직원이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할 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원만 가고 가족은 수도권에 남으면 의미가 없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많은 예산을 퍼붓고도 주말부부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4대 연금 개혁은 미룰수록 국가의 부담이 커져 나라살림에 주름살을 지게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본사 건물을 옮기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다면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4대 연금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가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경제 2007년 10월 27일 '사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뿌리 뽑아야

국세청이 의사와 변호사, 유흥업소 주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을 지목해 세무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번 돈의 절반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2005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세무당국의 첩보망에 걸려든 1,730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 한 결과다. 일부 계층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하나, 정부의 잇단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강화방침을 비웃는 듯한 편법·탈법적 행태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조사대상 기간중 모두 4조 8,000여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2조 4,000여억원만 신고했다. 1인당 소득탈루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5억원을 넘는 총 8,800여억원을 추징했으며, 1차 조사에서 57%선이던 소득탈루율이 5차 때 47%대로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급 유흥업소와 음식점,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탈루율은 아직도 60%선을 넘나든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독버섯 같은 탈세 행각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근로소득자 등 대다수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욕을 꺾고 조세저항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배가된다. 흔히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의 소득포착률은 90%에 이른다. 반면 자영업자는 고소득일수록 그 비율

이 현저히 떨어져 50%선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공평과세의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징세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마찰과 갈등만 낳기 십상이다.

날로 교묘해지는 소득은닉 수법을 따라잡아야 하는 세무당국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내부의 인적·제도적 혁신을 강화하며 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겠지만, 한 국가재정의 기본을 위협하는 일부 계층의 악의적 탈세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의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믿음과 실천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디딤돌이다.

(한국일보 2007년 10월 30일 '사설')

유류 탄력세율 운용 적극 검토해야

드디어 정부가 고유가대책 마련에 나서서 것 같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도 유가안정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유가급등대책을 세우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가안정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의 한숨소리가 높아만 가는데도 무정할 정도로 요지부동이었다. 이번엔 유류세율 손질 등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격이 내리면 유류 소비량이 늘어날까 정부는 걱정한다. 고유가로 소비억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 등은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해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를 축소할 수 없다. 이제는 에너지복지 확대 차원에서라도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도 유류 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소극적 대책으로 가격의 주름살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직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이다. 세금이 유가의 57.2%나 되고 지난해 23조 5,000억원의 유류세가 걷혔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지만 올해 세입 초과액이 11조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국회가 유류세 인하에 합의하면 일시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유류세 인하가 어려우면 '조건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유류세 인하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조건부 탄력세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마음먹기에 달렸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해 100달러를 넘어서면 이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금리인

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불안한 널뛰기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의 영구적인 인하도 정책사항에 포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책 마련을 주저하고 미룰수록 서민가계의 주름살만 깊어진다. 이번만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유류세 문제,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및 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유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경제 2007년 11월 1일자 '사설')

나라 곳간 헐어 펄펄 쓰는 공직사회

정부 각 기관과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운영, 예산낭비 실태가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예년에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 사례들이 터져 나오곤 했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는 인상을 준다. 참여정부가 택한 정부 운영 및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이 쌓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일회성 대증요법으로는 잘못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힘들다. 구조적인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부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영 사례를 보면 어안이 빙빙해진다. 단 한번도 운행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을 꼬박꼬박 지급해온 기관이 있는가 하면,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

과수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지자체가 있었다. 이용자가 없는 육교를 세워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지금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600만원을 넘어섰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공직자들이 혈세를 남의 돈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는 100조원 이상 늘었다. 허리띠를 꽂고 줄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연봉잔치를 벌이면서 직원 혜택을 늘리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4년간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 증가율이 44.5%에 달했다고 한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에서도 성과급을 받아 연봉이 3배나 오른 기관장이 있다.

참여정부는 뒤늦게 인터넷에 공기업 방만경영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외면하고, 혁신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높은 성과급을 주는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공공부문 방만경영은 개선되지 않는다. 특히 민영화를 배제한 공기업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성공을 거둔 국내외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가 못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획기적인 공공부문 개혁안이 실천되어야 한다.

(서울신문 2007년 11월 2일 '사설')

유류세 정치논리로 풀어선 안 돼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유류세를 내리라고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원유가 급등으로 유류 제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소비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 정부는 지금은 다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서자 재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앞서는 분위기다.

기름값이 크게 올라도 당장 유류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서민과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고유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성급하게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세율 인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유류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지금도 많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연간 2조원 규모의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정부는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처럼 유류비 부담이 크거나 불황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농어촌 서

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등유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다.

유가가 오르면 유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소비 절약이 더욱 절실하다. 더욱이 유류제품은 많이 쓸수록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도 커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국세 수입에서 17%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깎아주면 그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무시할 수 없다.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세수는 2조 4,000억 원 이상 줄어든다. 이 돈을 유류 소비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외 자원과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07년 11월 5일 '사설'〉

재정포럼

2007년 11월호 통권 제137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07년 11월 15일 발행 / 제12권 제11호(통권 제13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